



본 보고서는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인쇄되었습니다.

2024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2024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2024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2024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    영



< 연구진 >

▣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 김혜련 초빙연구위원(연구총괄)  
김종원 선임연구원

외부 연구진 : 한 균 대표 (주)비콘힐엔지니어링  
이다예 연구원 (주)비콘힐엔지니어링

검토위원 : 임 선 대표 (주)반석피엠씨  
양병일 상무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 위치도 〉



〈 부지현황 〉



〈 조감도 〉





## 목 차

요 약 .....	1
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	73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73
가. 사업의 추진 배경 .....	73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74
2. 사업의 추진 근거 및 경위 .....	74
가. 사업의 추진 근거 .....	74
나. 사업의 추진 경위 .....	76
3. 사업의 주요 내용 .....	79
가. 사업개요 .....	79
나. 사업규모 .....	81
다. 총사업비 .....	84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	86
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수행절차 .....	86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분석방법 .....	88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90
1. 기초자료 분석 .....	90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	90
나.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	92
다. 사업대상지 치안 환경 분석 .....	95
2. 충남 논산경찰서 현황 .....	98
가. 조직 및 인력 현황 .....	98

---

나. 현청사 현황 .....	101
다. 지반 현황 .....	105
3. 유사사례 검토 .....	107
가. 충주경찰서 청사이전 신축사업 .....	108
나. 양평경찰서 신축사업 .....	109
다. 곡성경찰서 신축사업 .....	110
라. 부산수영경찰서 신축사업 .....	111
마. 인천해양경찰서 신축사업 .....	112
바. 진안경찰서 신축사업 .....	113
4.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114
가. 관련 법률 .....	114
나. 관련 규정 .....	114
다. 관련 계획 .....	117
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	121
가. 사업계획 적절성의 쟁점 .....	121
나. 비용 추정의 쟁점 .....	122
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	124
6.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	125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126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126
가. 건립목적과 기능의 부합성 .....	126
2. 사업부지의 적정성 검토 .....	132
가. 부지 위치의 적정성 검토 .....	132
나. 부지계획 적정성 검토 .....	133
3.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	135
가. 요구안의 시설규모 .....	135
나. 시설규모 검토 기준 .....	137

---

다. 시설규모 산정 기준 인원 .....	148
라. 세부 시설규모 적절성 검토 .....	154
마. 시설규모 검토 종합 .....	164
IV. 비용 추정 .....	168
1. 비용 추정의 개요 .....	168
가. 기본 전제 .....	168
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및 기준 .....	170
2. 총사업비 추정 .....	172
가. 공사비 .....	172
나. 보상비 .....	195
다. 시설부대경비 .....	196
라. 예비비 .....	200
마. 총사업비 종합 .....	201
3.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계획 .....	203
V. 정책성 분석 .....	206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	206
2. 사업추진 여건 .....	207
가. 내부여건 .....	207
나. 외부여건 .....	210
VI. 지역균형발전 분석 .....	213
1.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개요 .....	213
2. 지역낙후도 평가 .....	214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221

---

VII. 결론 및 정책제언 .....	240
1. 종합결론 .....	240
2. 정책제언 .....	242
참고문헌 .....	245
부록 .....	247

---

---

## 표 목차

〈표 Ⅰ-1〉 사업의 추진경위 .....	77
〈표 Ⅰ-2〉 총사업비 타당성재조사 요건 내용(최초단계 대비 변경요구안 증감) .....	78
〈표 Ⅰ-3〉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의 주요 내용 .....	79
〈표 Ⅰ-4〉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 .....	81
〈표 Ⅰ-5〉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	85
〈표 Ⅰ-6〉 기집행 상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요구안 기준) .....	86
〈표 Ⅱ-1〉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면적(2022년 1월 기준) .....	91
〈표 Ⅱ-2〉 충청남도 인구수 .....	92
〈표 Ⅱ-3〉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대수 .....	93
〈표 Ⅱ-4〉 충청남도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94
〈표 Ⅱ-5〉 논산시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95
〈표 Ⅱ-6〉 전국 범죄 발생 현황 .....	96
〈표 Ⅱ-7〉 충청청 범죄 발생 현황 .....	96
〈표 Ⅱ-8〉 충청청 및 논산시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	97
〈표 Ⅱ-9〉 충남 논산경찰서 조직 현황 .....	99
〈표 Ⅱ-10〉 충남 논산경찰서 지역 관서 운영 현황 .....	99
〈표 Ⅱ-11〉 충남 논산경찰서 조직별 정원 현황 .....	100
〈표 Ⅱ-12〉 논산경찰서 직위별 정원 현황 .....	100
〈표 Ⅱ-13〉 현 청사 시설 현황 .....	102
〈표 Ⅱ-14〉 층별·실별 사무실 이용 현황 및 면적 .....	103
〈표 Ⅱ-15〉 부지 내 시추위치 및 지반고 .....	105
〈표 Ⅱ-16〉 지층분포 현황 .....	106
〈표 Ⅱ-17〉 지반등급산정 결과 .....	106
〈표 Ⅱ-18〉 조달청(일반청사 경찰관서) 건축공사 사례 검토(2022~2023년) 종합 .....	107
〈표 Ⅱ-19〉 유사사례(1) 충주경찰서 .....	108

---

〈표 II-20〉 유사사례(2) 양평경찰서 .....	109
〈표 II-21〉 유사사례(3) 곡성경찰서 .....	110
〈표 II-22〉 유사사례(4) 부산수영경찰서 .....	111
〈표 II-23〉 유사사례(5) 인천해양경찰서 .....	112
〈표 II-24〉 유사사례(6) 진안경찰서 .....	113
〈표 II-25〉 시설 및 면적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115
〈표 II-26〉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주요 변경 사항 .....	117
〈표 II-27〉 신축과 리모델링(증축 포함) 기준 .....	118
〈표 II-28〉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 개발 개요(2018~2022년 중기사업계획) .....	119
〈표 II-29〉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의 목적 .....	119
〈표 II-30〉 기타 기반시설계획 기본방향 .....	120
〈표 II-31〉 기타 기반시설계획 실천전략 .....	120
〈표 II-32〉 대안의 설정 .....	125
〈표 III-1〉 현 논산경찰서 청사 현황 .....	126
〈표 III-2〉 1인당 사무실 면적 산정 .....	128
〈표 III-3〉 협소도 산정 .....	128
〈표 III-4〉 일 평균 인원인 수 .....	128
〈표 III-5〉 누수 및 벽체 균열 등 개보수 비용 현황 .....	130
〈표 III-6〉 요구안의 사업개요 .....	133
〈표 III-7〉 유사사례의 부지면적 검토 .....	134
〈표 III-8〉 부지면적의 적절성 검토 .....	135
〈표 III-9〉 요구안의 세부 시설구성 .....	135
〈표 III-10〉 경찰관서 청사 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	138
〈표 III-11〉 경찰서 각 실면적 세부산출내역 .....	139
〈표 III-12〉 청사시설기준표 .....	147
〈표 III-13〉 충남 논산경찰서 전체 정원(2023년 2월 기준) .....	149
〈표 III-14〉 충남 논산경찰서 전체 정원(2024년 4월 기준) .....	149

---

〈표 Ⅲ-15〉 계룡서 신설에 따른 논산·계룡서 정원 요구안 .....	150
〈표 Ⅲ-16〉 충청남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운영 현황 .....	151
〈표 Ⅲ-17〉 광역과학수사 7팀 인원 .....	152
〈표 Ⅲ-18〉 시설 규모 검토 기준정원 종합 .....	154
〈표 Ⅲ-19〉 업무시설 규모 검토 .....	155
〈표 Ⅲ-20〉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	156
〈표 Ⅲ-21〉 최근 3개년 논산경찰서 유치장 운영 현황 .....	157
〈표 Ⅲ-22〉 부대시설 규모 검토 .....	158
〈표 Ⅲ-23〉 저장보관시설 규모 검토 .....	158
〈표 Ⅲ-24〉 관리시설 규모 검토 .....	160
〈표 Ⅲ-25〉 편의시설 규모 검토 .....	161
〈표 Ⅲ-26〉 정보통신시설 규모 검토 .....	161
〈표 Ⅲ-27〉 공용면적 규모 검토 .....	162
〈표 Ⅲ-28〉 지상 가용면적 산출 .....	163
〈표 Ⅲ-29〉 지상주차장 조성 사례의 주차 1대당 소요면적 .....	163
〈표 Ⅲ-30〉 지상 가능 주차대수 산정 .....	164
〈표 Ⅲ-31〉 규모 검토 결과 종합 .....	164
〈표 Ⅲ-32〉 규모 검토 세부 내역 .....	165
〈표 Ⅳ-1〉 비용 추정 절차 및 방법 .....	168
〈표 Ⅳ-2〉 비용 보정 지수 .....	169
〈표 Ⅳ-3〉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면적 .....	169
〈표 Ⅳ-4〉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	171
〈표 Ⅳ-5〉 요구 공사비 세부 내역 .....	172
〈표 Ⅳ-6〉 조달청(일반청사 경찰관서) 건축공사 사례 검토(2022~2023년) .....	173
〈표 Ⅳ-7〉 현장여건 공사비를 제외한 기본공사비 산정 .....	174
〈표 Ⅳ-8〉 단위공사비 산정 .....	174
〈표 Ⅳ-9〉 기본공사비 단가 종합 .....	175

---

〈표 IV-10〉 기본공사비 추정 결과 .....	175
〈표 IV-11〉 중간설계내역서 원가요율 산정 .....	176
〈표 IV-12〉 연약지반 개량 토공사 내용 .....	176
〈표 IV-13〉 연약지반 개량 토공사 계획평면도 .....	177
〈표 IV-14〉 연약지반 보강공사 내용 .....	178
〈표 IV-15〉 연약지반 보강공사 계획평면도 .....	178
〈표 IV-16〉 중간설계내역서의 연약지반개량 시설공사 내역 .....	179
〈표 IV-17〉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추정 .....	179
〈표 IV-18〉 흙막이 공사비 추정 .....	180
〈표 IV-19〉 철거공사비 추정 .....	181
〈표 IV-20〉 석면 철거공사비 추정 .....	181
〈표 IV-21〉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2024) .....	182
〈표 IV-22〉 폐기물처리비 추정 .....	182
〈표 IV-23〉 폐기물 운반비 추정 .....	183
〈표 IV-24〉 건설폐기물처리비 종합 .....	183
〈표 IV-25〉 기존 건물 철거비 종합 .....	183
〈표 IV-26〉 파일기초공사비 추정 .....	185
〈표 IV-27〉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비율 개정 .....	186
〈표 IV-28〉 전기차 및 급속 충전시설 설치 수량 산정 .....	186
〈표 IV-29〉 유사사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충전기 설치 수량 .....	187
〈표 IV-30〉 유사사례 경찰서 단가 기준 .....	188
〈표 IV-31〉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식 .....	188
〈표 IV-32〉 단위에너지 사용량 .....	188
〈표 IV-33〉 지역계수 .....	188
〈표 IV-34〉 에너지사용량 산정 .....	189
〈표 IV-35〉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의 산식 .....	189
〈표 IV-36〉 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량 산정 .....	189
〈표 IV-37〉 대안별 태양광 설치 규모 산정 .....	190

---

〈표 IV-38〉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비 종합 .....	190
〈표 IV-39〉 BF 본인증 비용 및 시설분담금 .....	191
〈표 IV-40〉 개별시설 BF 본인증 수수료 .....	191
〈표 IV-41〉 BF 본인증 심사수수료 산정 .....	192
〈표 IV-42〉 BF본인증 비용 및 시설분담금 검토 종합 .....	193
〈표 IV-43〉 기타비용 종합 .....	194
〈표 IV-44〉 공사비 추정 결과 종합 .....	195
〈표 IV-45〉 토지보상비 집행 내역 .....	196
〈표 IV-46〉 설계비 종합 .....	197
〈표 IV-47〉 건축설계 대가요율(감리비) .....	198
〈표 IV-48〉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198
〈표 IV-49〉 감리비 추정 .....	199
〈표 IV-50〉 시설부대비 요율 .....	199
〈표 IV-51〉 시설부대비 추정 .....	200
〈표 IV-52〉 시설부대경비 종합 .....	200
〈표 IV-53〉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	201
〈표 IV-54〉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	202
〈표 IV-55〉 사업계획 요구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 계획 .....	203
〈표 IV-56〉 착공 시점을 고려한 사업비 항목별 연차별 배분 비율 .....	204
〈표 IV-57〉 검토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계획 .....	204
〈표 V-1〉 정책성 분석의 세부평가항목 .....	207
〈표 VI-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	215
〈표 VI-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 결과) .....	218
〈표 VI-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 비율) .....	219
〈표 VI-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	220
〈표 VI-5〉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	220

---

〈표 VI-6〉 상품 분류 구분 .....	226
〈표 VI-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	236
〈표 VI-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검토안) .....	236
〈표 VI-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	237
〈표 VI-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239
〈표 VI-1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	239
〈표 VII-1〉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괄 요약표 .....	242

---

---

## 그림 목차

[그림 Ⅰ-1] 위치도 및 부지 현황, 조감도 .....	80
[그림 Ⅰ-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	87
[그림 Ⅱ-1] 충청남도 행정구역도 .....	91
[그림 Ⅱ-2] 현 청사 건물 배치도 .....	101
[그림 Ⅱ-3] 사업대상지 도시계획도 .....	104
[그림 Ⅱ-4] 시추 조사위치도 .....	105
[그림 Ⅲ-1] 주차공간 현황 .....	129
[그림 Ⅲ-2] 건물 내부 협소 현황 .....	130
[그림 Ⅲ-3] 청사 노후 현황 .....	131
[그림 Ⅲ-4] 논산경찰서 입지 여건 .....	132
[그림 Ⅲ-5]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도 .....	134
[그림 Ⅲ-6] 초광역유치장 평면도 .....	145
[그림 Ⅲ-7] 광역유치장 평면도 .....	145
[그림 Ⅲ-8] 일반유치장 평면도 .....	146
[그림 Ⅲ-9] 광역과학수사 7팀 이전 설계 반영 요청 공문 .....	152
[그림 Ⅳ-1] 흙막이 공사 설계 단면도 .....	180
[그림 Ⅳ-2] 기초검토 산정 근거 .....	184
[그림 Ⅳ-3] 한전불입금 및 사용 전 검사비 산정 근거 .....	192
[그림 Ⅳ-4] 상수도 및 도시가스 인입 분담금 산정 근거 .....	193
[그림 Ⅵ-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224
[그림 Ⅵ-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	225

---



---

## 요 약

---

### 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 사업의 추진 배경

###### □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 우려

- 논산경찰서 현 청사는 1981년에 준공되어 4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여러 하자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축을 통해 쾌적한 환경 제공과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

- 2012년 안전진단에서 슬래브 및 보의 균열과 일부 누수 흔적, 녹물 유출 등이 발견되었고, 외부 마감재의 들뜸·백화·탈락, 콘크리트의 탄산화 등 하자를 확인
- 옥상과 벽면의 균열로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여 일부 사무실에 누전 및 단전이 발생한 바 있어 화재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
- 현 건물의 안전 위협으로 중앙난방 보일러 교체가 불가능하여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난방보일러 유류 저장소가 민원인 휴게실과 인접해 위험에 노출된 상태

###### □ 협소한 청사의 시설 확충 필요성

- 현 청사 부지 및 시설 규모의 한계로 직원의 근무 공간뿐 아니라 민원서비스 공간도 협소하여 불편한 시설환경을 개선할 필요

- 준공 당시 대비 정원이 증가하여 업무 공간이 부족하고 민원 수용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나 부지 및 건물 규모가 협소하여 시설 확장에 한계
- 현재 지상 주차면수 33대에 불과하여 본서 근무인력 130여 명, 하루 평균 민원 이용자 약 59명을 고려할 때 주차공간이 부족

##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 사업의 목적

- 현 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하자과 우려되는 안전 문제를 청사 신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함
- 부족한 사무공간과 민원인 공간, 주차 공간 등을 현 이용자 규모에 맞게 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 □ 사업의 기대효과

- 현 청사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근무자의 업무수행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을 기대

## 2.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 가. 사업의 추진근거

#### □ 사업 추진 법적 근거

- 「경찰법」 제12조(경찰조직) 및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제3항 및 제42조(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70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2조(소속기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및별표 1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제42조(경찰서)** ① 시·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259개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②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과 같다.

□ 국비 지원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중략> .....
-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나. 사업의 추진경위

- 본 사업은 2017년 12월에 신규로 예산이 확정되어 2018년 1월에 총사업비 관리대장에 최초 등록되었으며, 이후 부지 변경 등으로 세 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져 왔음
- 2023년 7월 중간설계 적정성 재검토 결과 최초 총사업비 대비 57.1%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에 의거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sup>1)</sup>
- 2024년 5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sup>2)</sup>

〈표 1〉 사업의 추진경위

연월	내용
2017. 12.	• 논산경찰서 이전 신축 예산 확정(논산시 부적면)
2018. 1. ~ 2019. 4.	• 계룡시의회, 경찰서 이전 촉구 탄원서 접수 • 논산서 이전 반대 비대위 탄원서 접수

1)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여(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 제외)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

2) 기획재정부 공문, 타당성심사과-399(2024. 5. 24.)

〈표 1〉의 계속

연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경찰서 신축 부지 재선정 절차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청, 논산시, 논산시 관계기관 실무 협의</li> <li>- 논산시 신축관련 직원 설문조사 및 주민공청회 개최</li> <li>- 논산시, 부지선정 관련 협의체 구성</li> </ul> </li> </ul>
201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부지 신축으로 확정(인접부지 추가 매입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룡경찰서 신설 추진 협의</li> </ul> </li> </ul>
201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서와 논산시청 간 부지매입 관련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시에서 선매입 후 충남청에 매각</li> </ul> </li> </ul>
201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룡경찰서 신축 국회 예산안 확정</li> </ul>
202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조정신청(부지변경, 보상비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관리대장) 1차 조정: 2020. 11. 19.</li> </ul> </li> </ul>
202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 기획심의(조달청)</li> </ul>
202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조정신청(설계비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관리대장) 2차 조정: 2021. 9. 16.</li> </ul> </li> </ul>
202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시가 선매입한 부지를 충남청이 매입(잔금 집행 완료)</li> </ul>
202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경찰서 신축 설계공모 및 계약</li> </ul>
202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조정(사업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관리대장) 3차 조정: 2023. 6. 16.</li> </ul> </li> </ul>
202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완료</li> </ul>
202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399(2024. 5. 24.)</li> </ul> </li> </ul>

자료: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24. 5. 및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 재구성함

### 3. 사업의 주요 내용

#### 가. 사업개요

##### □ 사업 주요 내용

- (사업 위치) 현 부지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8-2'와 추가 매입 부지 '남교리 79-1'
- (사업 규모) 부지면적은 8,935㎡이며, 연면적은 현행안보다 16㎡ 감소한 8,346㎡
- (총 사업비) 현행안보다 12,831백만원 증가한 33,670백만원이며, 전액 국고 지원 사업임
- (사업 기간) 2018~2027년(10년)

〈표 2〉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안	변경요구안
사업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8-2외 1필지	
사업규모	부지면적 <sup>1)</sup>	8,935㎡	
	연면적	8,362㎡	8,346㎡
사업기간		2018~2027년(10년)	
사업주체		충청남도 경찰청	
총사업비		20,839백만원	33,670백만원
재원분담		국고 100%(국유재산관리기금)	

주: 1)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에서 부지면적이 8,912㎡로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함  
 -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를 통해 과거 부지 확보 예정 면적이 8,912㎡ 였으나, 2021.12월 부지면적이 8,935㎡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함

자료: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24. 5. 및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 나. 사업 규모

### □ 건축규모

- 신축 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은 8,346㎡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됨

### □ 세부시설 구성

- 전용면적 5,816㎡
  - 업무시설 3,967㎡, 부대시설 225㎡, 저장·보관시설 927㎡, 관리시설 140㎡, 편의시설 418㎡, 정보·통신시설 139㎡
- 공용면적 2,530㎡
  -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복도, 로비, 화장실 등 공용공간 2,110㎡과 설비관계 제실 420㎡

〈표 3〉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업무시설	서장실	서장실	88.44
		소계	88.44
	경무과	과장실	29.07
		경무	39.28

〈표 3〉의 계속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업무시설	경무과	경리	74.58	
		과 소회의실		
		정보화장비(통신, 정보, 장비)	32.90	
		소계	175.78 (175.83)	
	생활 안전과	과장실	22.09	
		생활안전계(생활, 범죄, CCTV)	54.34	
		풍속	조사실	11.34
			대기실	13.65
		과 소회의실	40.72	
		소계	142.14	
	수사과	과장실	32.13	
		수사지원팀(수사지원, 수사심사, 유치관리)	80.80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46.71	
		지능범죄수사팀(지능범죄, 사이버범죄)	79.94	
		경제범죄수사팀	81.47	
		형사팀(지역형사)	180.43	
		소계	501.48	
	여성 청소년과	과장실	31.30	
		여성청소년계(여성업무, 학교전담, 학대전담)	66.90	
		여성청소년수사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성폭력, 실종, 피의자피해자)	114.22	
		피해자통합대기공간	27.39	
		상담실	12.06	
		소계	251.87	
	경비 교통과	과장실	30.24	
		경비작전계(경비)	20.16	
		교통관리계(내근, 교통지도, 수신호, 순찰차, 싸이카)	96.80	
교통조사팀 (교통조사, 교통범죄수사,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105.59		
과 소회의실		63.45		
소계		316.24		

〈표 3〉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업무시설	정보 안보 외사과	과장실	20.71
		공공안녕정보외사계(정보내근, 정보외근, 외사)	87.51
		안보계(안보외근)	
		외사조사실	19.35
		소계	127.57
	청문 감사 인권관	청문감사인권	28.69
		피해자보호	32.89
		감찰조사실	
		민원	51.26
		과 소회의실	
	소계	112.84	
	광역과학 수사 7팀	사무실	76.07
		소계	76.07
	공용 업무시설	상황실	127.00
		대강당	310.85
		대회의실	104.13
		유치장	538.10
		진술녹화실	46.27
		모니터실	35.67
		민원실	205.37
		상무관	288.12
		실내사격장	467.87
		정보화교육장	51.03
소계		2,174.41	
소계		3,966.84 (3,966.89)	
부대시설	식당	110.50	
	주방	48.28	
	창고	43.06	
	조리원휴게실	15.91	
	영양사실	7.12	
	소계	224.87	

〈표 3〉의 계속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저장, 보관 시설	창고(문서, 비품, 소모품)	136.55
	피복창고	46.50
	수사기록보관실	106.35
	경무(지출서류, 문서, 물품)	128.94
	생활안전(자료장비, 압수물보관, 유실물보관)	85.31
	정보기록보관실	79.05
	경비, 장비창고	148.13
	무기고	94.50
	탄약고	49.77
	증거물 감정실	25.62
	전처리실	25.89
	소계	926.61
관리시설	경비실	6.00
	민원안내	9.72
	당직실	21.60
	호송차고	55.55
	공익근무원실	21.42
	청사관리 용역사무실	25.63
	소계	139.92
편의시설	휴게실(남, 여)	79.94
	샤워실(남, 여)	76.14
	체육실	83.00
	종교시설	127.00
	직장인협의회실	40.54
	수유실	11.86
	소계	418.48
정보통신시설	보안실	34.49
	통신, 전산장비실	54.34
	전산자료실	50.08
	소계	138.91
① 전용면적 계		5,815.63 (5,815.68)

〈표 3〉의 계속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공용시설	설비 관련실	기계실	249.53
		전기실	104.05
		발전기실	37.83
		중앙감시실	28.90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 등		2,110.09
② 공용면적 계			<b>2,530.40</b>
합계(①+②)			<b>8,346.03</b> <b>(8,346.08)</b>

주: 괄호 안 수치는 연구진 재계산 결과임

자료: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23. 7., pp. 29~37을 바탕으로 「경찰관서 설계 기준」의 용도 분류 기준에 맞추어 연구진 재정리

#### 다. 총사업비

##### □ 총사업비 변경요구안

- 충청남도경찰청에서 제시한 총사업비는 33,670백만원으로 현행안 총사업비인 20,839백만원 대비 약 61.6% 증가함
  - 주요 변경요인은 부지확정 지연, 건설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현장여건 변화 등
  -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증가하였으며, 보상비와 설계비는 현행안을 유지함

〈표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안 (A)	변경요구안 (B)	증감		증감내역
			(B-A)	%	
총사업비(A+B+C)	20,839	33,670	12,831	61.6	
A. 공사비	15,505	26,351	10,846	70.0	• 물가, 현장여건, 분담금, 법령개정 반영
A-1. 기본공사비	15,505	17,083	1,578	10.2	• 기본공사비 단가 조정 ※ 물가상승분, 연면적감소분 제외
A-2. 물가상승분	-	3,850	3,850		• 2018년 1분기~2023년 1분기 물가변동분
A-3. 연면적감소	-	-30	-30		•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시 연면적 감소(-16㎡)

〈표 4〉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안 (A)	변경요구안 (B)	증감		증감내역
			(B-A)	%	
A-4. 현장여건 (연약지반, 철거)	-	5,044	5,044		• 연약지반 개량, 사업부지 변경으로 추가된 기존건물 철거
A-5. 법령개정	-	343	343		•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A-6. 그 외	-	61	61		• BF본인증, 한전/상수도/도시가스 인입/사용전 검사
B. 보상비	4,159	4,159	-	-	
C. 시설부대경비	1,175	3,160	1,985	168.9	
C-1. 설계비	980	980	-	-	
C-2. 감리비	158	2,119	1,961	1241.1	• 전면책임요율적용
C-3. 시설부대비	37	61	24	64.9	• 부대비 요율반영

주: 1. 부가가치세 포함

2. 증감 % 수치는 현행안과 변경안의 표 수치로 연구진 재계산 결과임(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자료: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24. 5. 및 충청남도경찰청, 「4차 제출자료」, 2024. 9.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 기집행 상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

- 2023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요구안 총사업비의 14%에 해당하는 총 4,729백만원
  - 용지보상비에 4,157백만원, 설계비에 568백만원, 시설부대에 4백만원이 집행됨
- 연차별 투자계획은 2025년 3,180백만원, 2026년에는 11,411백만원, 2027년 14,263백만원이며 불용에 따른 잔액은 기집행된 용지보상비 및 설계비를 제외한 잔액 87백만원임

〈표 5〉 기집행 상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요구안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既 집행 ('23년까지)	2024	2025	2026	2027	불용 및 잔여금	합계	비고
총사업비(A+B+C)	4,729	-	3,180	11,411	14,263	(87)	33,670	
A. 공사비	-	-	2,635	10,540	13,176	-	26,351	
B. 용지보상비	4,157	-	-	-	-	(2) <sup>1)</sup>	4,159	토지 매입 완료 (’21~’22)
C. 시설부대경비	572	-	545	871	1,087	(85)	3,160	

〈표 5〉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既 집행 ('23년까지)	2024	2025	2026	2027	불용 및 잔여금	합계	비고
C-1. 설계비	568	-	327	-	-	(85) <sup>2)</sup>	980	'25에 잔금 집행
C-2. 감리비	-	-	212	848	1,059	-	2,119	
C-3. 시설부대비	4	-	6	23	28	-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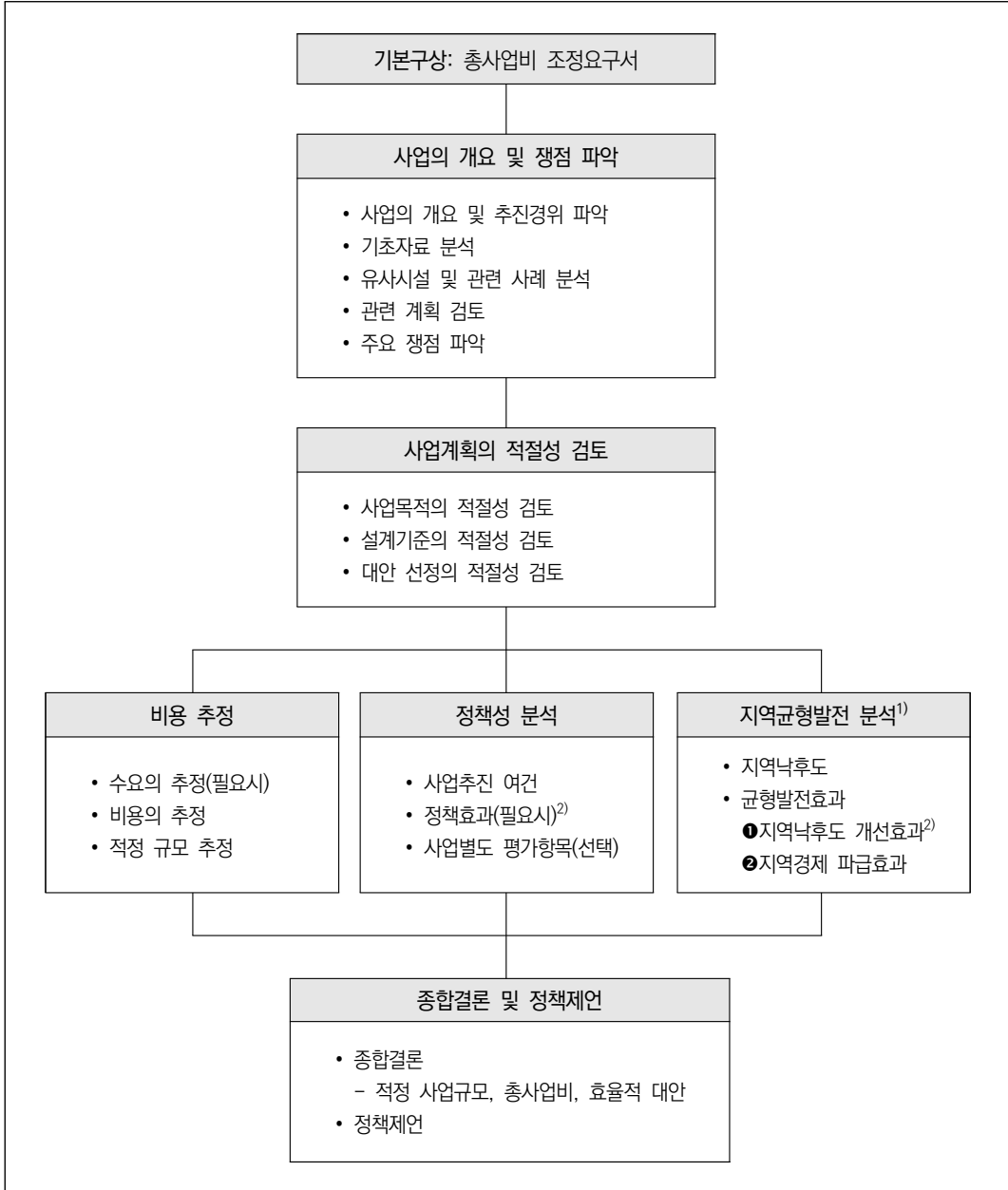
주: 1) 건설보상비 차액은 토지매입 관련 절차와 집행이 모두 완료되어 불용 금액임

2) 설계비 차액은 총사업비 내에서 설계공모비, 심의수당 금액 집행, 교통영향평가용역과 설계용역을 계약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교통영향평가용역과 설계용역은 선금과 기성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액은 용역이 끝난 후 집행 예정으로, 2025년도 투자계획에 작성)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수행 흐름도

[그림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주: 1) 수도권 유형의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함. 또한 해당 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는 정책효과 및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생략 가능함

자료: 기획재정부훈령, 「총사업비 관리지침」, 「에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내용을 재구성함

##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1. 기초자료 분석

####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 □ 위치 및 지리적 특징

- 사업부지인 논산시가 속해 있는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경 127°38'~ 125°32', 북위 35°58'~ 37°03' 사이에 위치함
-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한 동고서저의 지형·지세로 임야가 전체 면적의 약 49%를 차지하며, 금강 주변과 하천 중심으로 평야가 발달하였고 서해안과 접한 총 해안선의 길이는 1,212km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가로림만·천수만 등 만이 잘 발달함
- 연평균 기후는 12.3℃로서 대체로 온화하나 전체적으로는 대륙성 기후이며, 특히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을 만한 지형적 장애물이 적어 같은 위도상의 동해안보다 추우며, 서북부 해안지대는 적설량이 많은 것이 특징임

##### □ 면적 및 행정구역

-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은 8개 시 및 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청남도청은 홍성군에 위치함
- 충청남도의 총면적은 전국 총면적의 8.2%인 8,246.59km<sup>2</sup>이며, 공주시가 864.13km<sup>2</sup>로 가장 넓고, 계룡시가 60.7km<sup>2</sup>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
- 사업부지인 논산시는 2읍 11면 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556.2km<sup>2</sup>로 충청남도 시·군 중 여덟 번째 크기에 해당함

#### 나.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 □ 인구 현황 및 변화

- 충청남도의 총 인구수는 213만 119명으로, 충청남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천안시와 아산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최근 5개년의 충청남도 인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9~2021년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2023년은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2023년 기준 계룡시와 아산시가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함

- 사업대상지인 논산시 인구수는 2023년 기준 11만 423명으로 충청남도 인구의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 비해 2023년 인구는 7.08% 감소함

#### □ 자동차 등록대수

- 충청남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9년 111만 8,117대에서 2023년 124만 5,446대로 11.39% 증가함
- 사업대상지인 논산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3년 기준 6만 5,342대로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대수의 5.25%를 차지하고 있음

#### □ 산업 및 경제활동

- 충청남도의 총 사업체 수는 2022년 기준 26만 6,577개소이고, 사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109만 2,389명임
  - 산업별 총 사업체 수는 도매 및 소매업 22.73%, 숙박 및 음식점업 15.57%, 건설업 10.0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산업별 총 종사자 수는 제조업 28.89%, 도매 및 소매업 11.3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업대상지인 논산시의 총 사업체 수는 2022년 기준 1만 7,205개소이고, 사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2022년 기준 5만 3,628명임
  - 산업별 총 사업체 수는 도매 및 소매업 22.48%, 숙박 및 음식점업 13.0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산업별 총 종사자 수는 제조업 20.9%, 도매 및 소매업 13.8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1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다. 사업대상지 치안 환경 분석

#### □ 범죄 발생 현황

- 전국의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48만 2,433건으로 전년 대비 5만여 건 증가함

- 지능범죄가 27.33%, 폭력범죄 16.55%, 교통범죄 16.26%, 절도범죄 12.3% 순
- 충남의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5만 9,196건으로, 전국의 3.99%에 해당
  - 죄종별로는 지능범죄 28.35%, 교통범죄 21.35%, 폭력범죄 14.94% 순

□ 5대 범죄 발생 현황

-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2022년 기준 1만 7,433건으로, 총 범죄 발생 건수의 29.45%를 차지함
- 논산경찰서는 2021년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073건이며, 이는 충청남도  
발생 건수의 6.5%를 차지함

## 2. 충남 논산경찰서 현황

### 가. 조직 및 인력 현황(2023년 2월 기준)

□ 조직 현황

- 논산경찰서는 서장을 중심으로, 경무과, 112 치안종합상황실, 정보안보외사과, 수사  
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청문감사인권관으로 구성됨
- 논산경찰서의 현 관할지역은 논산시와 계룡시이며, 관할지역 내 총 4개의 지구대와  
4개의 파출소를 두고 있음

〈표 6〉 충남 논산경찰서 조직 현황

경찰서			지역 관서	
1	청문감사인권관	청문감사인권·피해자보호·감찰·민원	지구대	1. 논산지구대 2. 연무지구대 3. 강경지구대 4. 계룡지구대
2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		
3	경무과	경무계·경리계·정보화장비계		
4	정보안보외사과	공공안녕정보외사계·안보계		
5	수사과	수사지원팀·경제범죄수사팀·지능범죄수사팀·형사팀	파출소	1. 연산파출소 2. 상월파출소 3. 양촌파출소 4. 광석파출소
6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7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여성청소년수사팀		
8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교통조사팀·교통관리계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 인력 현황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설계면적에 반영된 논산경찰서의 기본 정원은 2023년 2월 기준 본서 137명, 지역관서 134명으로 총 271명

〈표 7〉 충남 논산경찰서 조직별 정원 현황

(단위: 명)

본서		지역관서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청문감사인권관	5	논산지구대	46
112치안종합상황실	9	연무지구대	19
경무과	14	강경지구대 (광석파출소 포함 <sup>1)</sup> )	19
정보안보외사과	10		
수사과	44	계룡지구대	21
생활안전과	9	연산파출소	12
여성청소년과	18	상월파출소	9
경비교통과	28	양촌파출소	8
합계	137	합 계	134

주: 1) 광석파출소는 준 파출소로 운영되고 있어, 강경지구대 소속으로 관리됨(강경지구대에 인원 포함)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표 8〉 논산경찰서 직위별 정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1) 경찰관								(2)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일반직
본서	137	131	1	5	14	18	44	32	17	6
지역관서	134	134	-	-	8	15	13	35	63	-
계	271	265	1	5	22	33	57	67	80	6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표 9〉 현 청사 시설 현황

(단위: ㎡)

구분	시설 현황		면적
본관	옥상	문서보관실 등	-
	3층	경비작전계, 수사심사관, 정보통신계, 정보계, 사무실, 정보과장실, 숙직실, 기계실 등	3,221.87
	2층	112치안종합상황실, 진술녹화실, 생활안전계, 경무계, 경리계, 안보계, 서장실, 비서실, 경무과장실, 치안종합상황실장, 생활안전과장실, 유치장, 의무실, 샤워실, 여직원휴게실, 당비실, 숙직실 등	
	1층	형사1팀, 형사2팀, 경제범죄수사1팀, 수사지원팀,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과장실, 교통조사계, 유치장, 조사실, 면회대기실, 면회실, 변호실, 신체검사실, 휴게실, 샤워실, 쉼터 등	
	지하1층	무도장, 숙직실, 탈의실, 샤워실, 보일러실, 기름탱크실, 변전실 등	
별관(우)	2층	교통관리계, 생활질서계, 물품창고, 독서실 등	
	1층	경제범죄수사2팀,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실, 통합증거물보관실, 샤워실 등	
별관(좌)	1층	민원봉사실, 지능범죄수사팀, 청문감사관실, 민원상담실, 숙직실 등	224.64
기타	1층	무기고/탄약고	112.34
	1~2층	식당/숙소/무기고	300.63
	1층	안내실/위병소	12.06
	1층	차고/창고	78.97
	1층	직장협의회	38.26
<b>연면적 합계</b>			<b>4,446.8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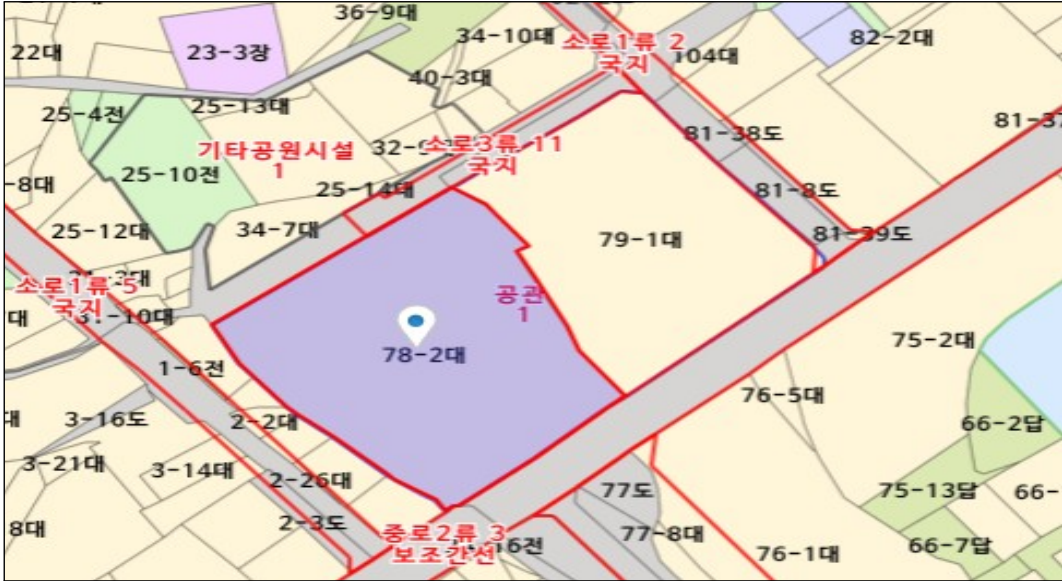
주: 건물 연면적 산출 근거- 현장실측을 통해 작성된 도면을 CAD 산출(공용면적 등을 모두 포함)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 부지 주변 현황

- 사업대상지(남교리 78-2, 79-1)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현황 확인 결과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음
- 북서측 소로 3류(폭 4m), 동남측 중로 2류(폭 15m), 북동측 소로 1류(폭 10m)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남서쪽 인접 대지에는 저층 상가가 위치함
- 기존 경찰서 부지 외에 추가 매입한 남교리 79-1 부지 내에는 노후 건축물이 있으나 철거 예정임
- 부지 남측으로 강경읍사무소, 동쪽으로 강경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주변에 노후 주거지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함

[그림 3] 사업대상지 도시계획도



자료: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https://www.eum.go.kr>, 검색일자: 2024. 8. 7.

#### 다. 지반 현황

##### □ 시추공 현장시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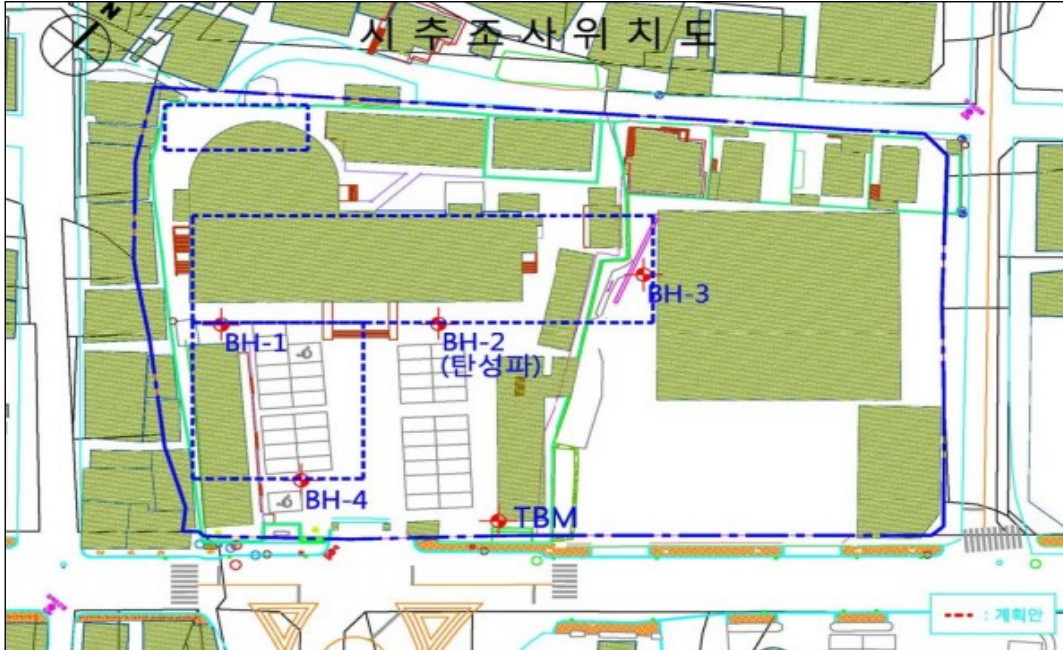
-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부지의 시추공 4개소 및 현장시험 위치를 선정해 지반의 지층 상태 및 구성성분 등 제반 지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함

〈표 10〉 부지 내 시추위치 및 지반고

구분	공번	조사좌표		지반고 (EL. +m)	비고
		X	Y		
1	BH-1	201,451,2120	295,297.1488	+5.60	-
2	BH-2	201,475.8912	295,318.7673	+5.70	Down Hole Test
3	BH-3	201,493.9103	295,345.7449	+5.10	-
4	BH-4	201,478.0783	295,284.6241	+5.65	-
5	TBM	201,505.1188	295,298.8931	+5.60	기준점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그림 4] 시추 조사위치도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 본 조사 구간의 지층은 지표로부터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및 풍화암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표 11> 지층분포 현황

(단위: m)

공번	지층분포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자갈모래실트 혼합토	실트질 점토	실트질 모래	자갈 섞인 모래	실트질 모래	실트질 모래로 분해
BH-1	0.0~1.0 (1.0m)	1.0~12.5 (11.5m)	12.5~19.5 (7.0m)	19.5~22.7 (3.2m)	22.7~35.0 (12.3m)	35.0~43.0 (8.0m)
BH-2	0.0~1.8 (1.8m)	1.8~13.0 (11.2m)	13.0~19.0 (6.0m)	19.0~22.0 (3.0m)	22.0~30.0 (8.0m)	30.0~50.0 (20.0m)
BH-3	0.0~1.0 (1.0m)	1.0~12.8 (11.8m)	12.8~18.3 (5.5m)	18.3~21.0 (2.7m)	21.0~19.0 (8.0m)	29.0~36.0 (7.0m)
BH-4	0.0~1.1 (1.1m)	1.1~12.5 (11.4m)	12.5~19.5 (7.0m)	19.5~21.5 (2.0m)	21.5~33.0 (11.5m)	33.0~40.0 (7.0m)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 지반 등급 산정 결과

- 지반의 강도가 작을 경우 구조물의 지진응답이 증폭하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구조물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총 6개의 지반으로 종류를 분류함
  - 기반암의 깊이와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를 기준으로 지반을 S<sub>1</sub>~S<sub>6</sub>으로 분류함
  - S<sub>1</sub>에서 S<sub>5</sub>로 갈수록 연약한 지반이며, S<sub>6</sub>은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 응답 해석이 요구되는 지반임
- BH-2번 공은 기반암의 깊이가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 응답 해석이 요구되는 지반으로 지반 종류는 S<sub>6</sub>으로 분류됨
  - 따라서 토목 공사 시 토목 부지 침하 및 시설물 침하를 고려한 공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12〉 지반등급산정 결과

공번	시험심도(m)	적용심도(m)	설계적용 전단파속도 V <sub>s</sub> (m/sec)	지반등급	분류기준
BH-2	0.0~30.0	0.0~30.0	199.7	S <sub>6</sub>	기반암이 깊이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주: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제정)에 따라 설계지반 등급 구분함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 3. 유사사례 검토

□ 유사사례 선정 기준

- 논산경찰서는 연면적 8,346㎡,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이므로 논산경찰서와 규모가 유사한 경찰관서 신축공사 사례를 유사사례로 선정함

□ 유사사례 중 검토대상 선정

- 연면적 10,000㎡ 이하의 일반청사 중 최근 2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한 경찰서 7건 중 특수설계가 적용된 옥천경찰서를 제외한 6개소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함

〈표 13〉 조달청(일반청사 경찰관서) 건축공사 사례 검토(2022~2023년) 종합


(단위: m<sup>2</sup>, 백만원)

구분	지역	발주연도	대지면적	연면적	총공사비	규모
옥천경찰서	충북	2023	15,360.0	6,561.5	20,358	B1/4F
충주경찰서	충북	2023	13,857.3	8,098.0	21,665	B1/5F
양평경찰서	경기	2022	9,944.0	9,521.0	26,012	B1/5F
곡성경찰서	전남	2022	6,290.0	6,149.1	15,213	B1/4F
부산수영경찰서	부산	2022	8,242.6	9,883.8	24,592	B1/6F
인천해양경찰서	인천	2022	14,089.6	8,520.0	22,399	B1/4F
진안경찰서	전북	2022	13,276.0	6,049.7	14,746	B1/3F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7. 18.

### 가. 충주경찰서 신축사업


〈표 14〉 충주경찰서 개요

구분	내용		외관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발주년월	2023. 1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70일		
건축법상용도	공공업무시설		
면적(m <sup>2</sup> )	연면적	8,098.0	
	대지면적	13,857.3	
	건축면적	1,664.0	
총공사비	21,664,942,823원		
높이(m)	기준층높이	3.9	
	최고높이	21.4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5

## 나. 양평경찰서 신축사업


〈표 15〉 양평경찰서 개요

구분	내용		외관
위치	경기도 양평군		
발주년월	2022. 1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20일		
건축법상용도	공공업무시설		
면적(㎡)	연면적	9,521.0	
	대지면적	9,944.0	
	건축면적	2,241.6	
총공사비	26,011,727,034원		
높이(m)	기준층 층고	4.2	
	최고높이	24.0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26.

## 다. 곡성경찰서 신축사업

〈표 16〉 곡성경찰서 개요

구분	내용		외관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발주년월	2022. 1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70일		
건축법상용도	업무시설		
면적(㎡)	연면적	6,149.1	
	대지면적	6,290.0	
	건축면적	1,570.5	
총공사비	15,212,682,025		
높이(m)	기준층 층고	3.9	
	최고높이	19.2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26.

## 라. 부산수영경찰서 신축사업


〈표 17〉 부산수영경찰서 개요

구분	내용		외관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주년월	2022. 1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30일		
건축법상용도	업무시설		
면적(㎡)	연면적	9,883.8	
	대지면적	8,242.6	
	건축면적	1,578.4	
총공사비	24,592,047,445원		
높이(m)	기준층 층고	4.0	
	최고높이	30.3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5.

## 마. 인천해양경찰서 신축사업

〈표 18〉 인천해양경찰서 개요

구분	내용		외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발주년월	2022. 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0일		
건축법상용도	공공업무시설		
면적(㎡)	연면적	8,520.0	
	대지면적	14,089.6	
	건축면적	3,241.8	
총공사비	22,399,453,600원		
높이(m)	기준층 층고	4.2	
	최고높이	19.9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5.

## 바. 진안경찰서 신축사업

〈표 19〉 진안경찰서 개요

구분	내용		외관
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발주년월	2022.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0일		
건축법상용도	공공업무시설		
면적(㎡)	연면적	6,049.7	
	대지면적	13,276.0	
	건축면적	1,841.2	
총공사비	14,746,207,197원		
높이(m)	기준층 층고	3.8	
	최고높이	19.3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5.

## 4.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가. 관련 법률

#### □ 국유재산법

- 본 사업은 전액 국고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서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4. 7. 23.

## 나. 관련 규정

### □ 「경찰관서 설계기준」(경찰청, 2021)

- 경찰서 청사의 시설 소요 제기를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업무와 설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시설업무를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
-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기술별 설계기준, 기능별 설계지침, 청사시설 업무지침으로 구성
-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은 변화하는 현장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2020년 수정·보완되었으며, 시설면적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인원을 순수 정원과 전체 정원으로 구분함

## 다. 관련 계획

### □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4~2018)」(경찰청, 2013)

- 경찰관서 노후시설 개선 요구 및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 건물 안전도, 직제 신설, 면적 협소, 준공 후 30년 이상의 관서를 신축 대상으로 선정 - 논산경찰서는 2015년 신축 추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18~'22년)」(충남경찰청, 2017. 12.)

- 충청남도경찰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8~'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확인 결과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이 반영되어 있음
- 계획안에서는 당초 계획인 이전 신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 사업기간은 2018~2021년(4년), 총사업비는 16,336백만원으로 책정됨
- 신축 건축물은 2개 동으로, 총 연면적 8,363㎡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함

### □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논산시, 2021. 10.)

- 논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논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도시공간구조의 정책변화와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함
-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 중 '기반시설계획'에서는 경찰서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과 기본방향, 실천전략, 수요추정을 통한 2035년까지의 계획 등을 포함

- 2017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수요추정에 의해 논산시 내 8개소의 지구대·파출소를 두는 것을 계획지표로 설정

## 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 가. 사업계획 적절성의 쟁점

#### □ 사업목적의 적절성

- 충청남도경찰청은 노후 및 협소한 청사의 신축을 통한 소속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로 국가기관 이미지 제고와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본 재검토에서는 현장 답사 및 시설계획 검토를 통해 본 사업의 목적이 적절한지 검토하고자 함

#### □ 사업부지의 적합성

- 본 사업은 당초 논산시 부적면으로 이전·신축을 추진하였으나, 현 논산경찰서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로 현 청사 부지에 인접부지 매입을 통해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됨
- 따라서 사업부지의 입지 및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함

#### □ 시설의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정원은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므로 우선적으로 검토 기준 설정이 필요
  - 요구안은 본 사업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에 반영된 2023년 2월 정원 기준임
  -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논산경찰서 정원 감소가 확인되고, 향후 계룡경찰서 신설에 따른 논산경찰서 정원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재검토의 정원 기준을 검토
  - 본청 소속 광역과학수사 7팀의 부여경찰서에서 논산경찰서로 이전 배치 반영 검토
- 형집행시설로서 경찰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진행
  - 「경찰관서 설계기준」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의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적정 규모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 본 사업은 지하주차장 없이 지상주차장만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규모의 주차장 확보 가능성 확인을 위해 법정 시설 등을 고려, 가능한 주차대수 검토 필요

## 나. 비용 추정의 쟁점

### □ 기본공사비 단가 산정기준 설정

- 중간설계내역서와 함께 최근 조달청에서 발주한 유사사례의 공사비 단가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공사비 단가를 산정하고자 함
- 공사비 단가 검토를 위한 유사사례는 사업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현장여건 공사비를 구분하여 검토하기 위해 기본공사비에서는 해당 비용을 제외하여 검토

### □ 공사비 산정 관련 쟁점

- 사업부지 변경으로 추가된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에 철거공사비 고려 필요
-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여 토목 공사비용이 증가하였으므로 본 재검토에서는 중간설계내역서 검토를 통해 현장여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기타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자 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는 기본공사비와의 중복을 고려하여 산정함

### □ 보상비

-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므로 실제 부지매입에 집행된 비용을 준용하고자 함

### □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경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 영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 □ 예비비

-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의 예비비 반영 기준에 의거하여 예비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 □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 본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상위 및 관련계획, 주무부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검토

- 경찰청 국정과제 및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4~2018), 충청남도 경찰청의 국유재산기금 중기사업계획,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중 기반시설계획 등 검토
- 부지활용 및 세부시설 계획에 있어 사업대상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경찰관서 시설 면적 기준 및 설계기준 등에 적합한지 시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체계 현황 등 사업의 준비 정도 검토
  - 기본설계 완료 단계로 향후 인허가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검토
  - 본 사업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 시 유의할 사항을 파악
-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 사업추진경위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 검토
    - 충남경찰청의 사업추진 의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논산시의 입장 등을 파악
  -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사업 수용성에 대해 주무부처의 제출자료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할 예정
    -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및 공사기간 중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 6.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 규모 검토는 요구안, 검토안, 대안으로 구분해 수행함
  - ‘요구안’은 사업수행주체가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제출한 계획안이며, ‘검토안’은 요구안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공사비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재추정함
  - ‘대안’은 2024년 4월 정원을 기준으로 「경찰관서 설계기준」 등에 따라 시설규모 및 적정 단가를 적용해 비용을 재추정함

〈표 20〉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구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검토안	대안
규모	요구면적	요구안의 규모를 존용하되, 적용 오류 사항 검토	시설규모를 검토하여 대안규모 산정
비용	요구사업비	요구안 규모에 대해 적정 공사비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재추정	대안 규모에 대해 적정 공사비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재추정

자료: 연구진 작성

###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개요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 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의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행함
- 적정 사업 규모, 총사업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의 적정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므로 본 절에서는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의 사업목적에 대하여 검토함

##### 가. 건립목적과 기능의 부합성

##### □ 현 논산경찰서 청사 현황

- 현 청사는 1981년 준공되어 43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사업수행 주체인 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은 협소도(현재 논산경찰서 연면적/신축 연면적)를 48%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체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으로 확인됨

〈표 21〉 현 논산경찰서 청사 현황

건축년도 (경과년수)	부지면적 (소유자)	건물연면적 (소유자)	정원 (현원)	협소도 (기준면적)	특이사항
1981년 (43년 경과)	4,975㎡ (경찰청)	4,093㎡ (경찰청)	145명 (155명)	48% (8,362㎡)	정밀안전진단 D등급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 □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기준 검토

-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6조는 공용재산취득계획에 대해 안전도, 협소, 노후화 등을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현 청사의 자체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이나 기획재정부 주관 안전진단이 아니므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서 제시한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기준에 미해당 - 안전도 D등급(미흡) 이하는 신축 대상기준에 해당함. 다만 부처 자체적으로 수행한 안전진단 결과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만을 인정함

- 본 재검토에서 산정한 협소도(88%)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서 제시한 신축 대상 기준(60%)을 충족하지 못함. 다만 현장답사 및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로 협소한 사무공간 및 민원공간 현황을 확인함
  - 요구안의 협소도는 현 청사의 신축계획안에 대한 비율로 48%를 제시하였으나 본 재검토에서는 1인당 사무실 면적을 기준으로 협소도를 88%로 재산정함

〈표 22〉 협소도 산정

(단위: m<sup>2</sup>/명, m<sup>2</sup>/명, %)

구분	당해건물(현 논산경찰서)	기준면적(요구안)	협소도
협소도	10.2	11.6	88

자료: 연구진 작성

- 시설 현황자료 검토결과, 내부공간 협소 및 주차 공간 부족으로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증대되는 상황을 확인함
- 현 청사는 준공 이후 43년이 경과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서 제시한 노후화 기준을 충족하며, 현장답사 및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자료 또한 노후도를 증명함
  - 기금운용계획 반영 대상 노후화 기준은 신·증축의 경우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임
  - 현 청사는 노후화에 따른 외벽 균열 등으로 건물의 기능 및 효율 저하가 우려되며, 유지장 옥상 누수, 지하 기계실 배관 노후화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해 오

〈표 23〉 누수 및 벽체 균열 등 개보수 비용 현황

(단위: 원)

구분	소계	공사비	시설장비유지비
2019년	147,765,819	52,470,170	95,295,649
2020년	198,932,060	82,797,610	116,134,450
2021년	187,990,239	84,090,460	103,899,779
2022년	114,732,910	42,392,770	72,340,140
2023년	124,391,894	22,034,000	103,357,894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4차 제출자료」, 2024. 9.

-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의 안전도, 협소, 노후화 등 신규사업 타당성 심사기준 검토 결과 안전도 및 협소 기준에 미달하나, 현황 검토 결과 신축 필요성이 인정됨

## 2. 사업부지의 적정성 검토

### □ 입지 특성

- 논산경찰서는 강경읍 남교리 78-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사업부지 동측과 남측에 접해있는 지방도 799호선인 계백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함
- 사업부지는 행정시설과 교육·문화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치안에 중요한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입지의 적정성 검토

- 요구안은 기본설계 후 중간설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 부지의 용도 및 규모제한에 부합하는 적법한 계획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입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대상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상태의 현 논산경찰서 부지로서 청사 신축에 대한 입지의 제약은 없음
  - 사업 대상지의 면적은 8,935㎡, 건축 연면적 8,346.08㎡로 법정 규모 이내이고 관련 기준에 따라 조경면적, 공개공지 등을 확보함

〈표 24〉 요구안의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업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8-2외 1필지	-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
사업기간	2018~2027년	-
건축규모	지상 5층, 지하 1층	-
대지면적	8,935㎡	-
연면적	8,346.08㎡	-
건폐율	24.71%	법정: 60%
용적률	74.07%	법정: 250%
건물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주차계획	136대	확장형: 49대, 일반형: 78대, 경형: 3대, 장애인: 5대, 버스: 1대
조경면적	2,023.01㎡	법정: 대지면적의 15% 이상 → 1,336.80㎡ 이상
공개공지	557.85㎡	법정: 대지면적의 6% 이상 → 534.72㎡ 이상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유사사례와 대지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등의 지표 비교 결과, 논산경찰서의 부지면적 지표는 사례의 범위 내에 있어 부지의 규모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25〉 유사사례의 부지면적 검토

(단위: m<sup>2</sup>, %)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충주경찰서	13,857.3	1,664.0	8,098.0	12.01	49.58
양평경찰서	9,944.0	2,241.6	9,521.0	22.54	78.61
곡성경찰서	6,290.0	1,570.5	6,149.1	24.97	79.98
부산수영경찰서	8,242.6	1,578.4	9,883.8	19.15	86.75
인천해양경찰서	14,089.6	3,241.8	8,520.0	23.01	53.73
진안경찰서	13,276.0	1,841.2	6,049.7	13.87	45.56
평균	10,949.9	2,022.9	8,036.9	19.26	65.70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28.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26〉 부지면적의 적절성 검토

(단위: m<sup>2</sup>, %)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유사사례 평균	10,949.9	2,022.9	8,036.9	19.26	65.70
요구안	8,935.0	2,207.4	8,346.1	24.71	74.07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28.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3.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 가. 요구안의 시설계획

##### □ 요구안의 시설계획

- 요구안의 시설면적은 총 8,346.08m<sup>2</sup>이며, 세부 시설구성은 다음 〈표 27〉과 같음

〈표 27〉 요구안의 세부 시설구성

(단위: m<sup>2</sup>)

용도별	시설명	실명	요구안
업무시설	순사무실	1. 저장실	88.44
		2. 과장실	194.23
		3. 행정부서	516.16

〈표 27〉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별	시설명	실명	요구안
업무시설	순사무실	4. 수사부서	612.34
		5. 광역 7팀	76.07
		소계(순사무실)	1,487.24
	순사무실 외	1. 상황실	127.00
		2. 대강당	310.85
		3. 소회의실	205.43
		4. 대회의실	104.13
		5. 유치장	538.10
		6. 진술녹화실	46.27
		7. 모니터실	35.67
		8. 민원실	205.37
		9.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87.75
		10. 상담실	12.06
		11. 상무관	288.12
		12. 실내사격장	467.87
13. 정보화교육장	51.03		
	소계(순사무실 외)	2,479.65	
	소계(업무시설)	3,966.89	
부대시설	1. 식당	110.50	
	2. 주방	48.28	
	3. 창고	43.06	
	4. 조리원휴게실	15.91	
	5. 영양사실	7.12	
	소계(부대시설)	224.87	
저장보관시설	1. 창고(문서, 비품, 소모품)	136.55	
	2. 피복창고	46.50	
	3. 수사	106.35	
	4. 경무	128.94	
	5. 생활안전	85.31	
	6. 정보	79.05	
	7. 경비, 장비창고	148.13	
	8. 무기고	94.50	

〈표 27〉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별	실명	요구안
저장보관시설	9. 탄약고	49.77
	10. 증거물감정실	25.62
	11. 전처리실	25.89
	소계(저장보관시설)	926.61
관리시설	1. 경비실	6.00
	2. 민원안내	9.72
	3. 당직실	21.60
	4. 호송차고	55.55
	5. 공익근무원실	21.42
	7. 청사관리 용역사무실	25.63
	소계(관리시설)	139.92
편의시설	1. 휴게실	79.94
	2. 샤워실	76.14
	3. 체육실	83.00
	4. 종교시설	127.00
	5. 협의화실	40.54
	6. 수유실	11.86
	소계(편의시설)	418.48
정보통신시설	1. 보안실	34.49
	2. 통신·전산장비실	54.34
	3. 전산자료실	50.08
	소계(정보통신시설)	138.91
<b>① 전용면적 합계</b>		<b>5,815.68</b>
설비관련실	1. 기계실	249.53
	2. 전기실	104.05
	3. 발전기실	37.83
	4. 중앙감시실	28.90
1. 계단, EV홀, 복도, 화장실 로비 등		2,110.09
<b>② 공용면적 합계</b>		<b>2,530.40</b>
<b>합계(①+②)</b>		<b>8,346.08</b>

자료: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23.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나. 세부 시설규모의 검토 기준

### □ 세부 시설규모의 검토 기준

- 논산경찰서의 적정규모 산정을 위해 경찰청에서 수립한 「경찰관서 설계기준」의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및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을 근거로 검토함
- 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증 및 보완을 위해 「202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행정안전부, 2024. 1.)의 청사 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을 활용함

## 다. 시설규모 산정 기준 인원

### □ 논산경찰서 본서 정원

-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조달청, 2023. 7.)는 2023년 2월 정원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나 본 재검토에서는 최신 정원인 2024년 4월 정원을 기준으로 검토함
  -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논산경찰서 본서 정원이 9명 감소하였으며 향후 계룡경찰서 신설 시 추가로 정원 축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원을 적용하고자 함
  - 다만 계룡경찰서 신설로 정원 조정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미확정 상태로, 불확실한 조건을 미리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2024년 4월 현재 최신 정원을 적용함

### □ 정원 외 인원

- 광역과학수사 7팀은 본청 소속이나, 논산경찰서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본청과 시설 중복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여 정부청사시설기준에 따라 정원 외 업무공간 기준<sup>3)</sup>을 반영
  - ‘과학수사과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설계 반영 요청’과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설계 반영 여부 재확인 요청’ 공문을 근거로 광역과학수사 7팀의 이전 확정을 확인함
  - 2014년 광역과학수사시스템 도입으로 광역과학수사팀이 본청 소속으로 전환되었으므로 2013년 준공된 충청남도경찰청과 1990년 준공된 부여경찰서<sup>4)</sup>는 광역과학수사 7팀 정원에 대한 시설 중복 문제는 없다고 판단함

3) 기획재정부,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2023. 1., p. 16 ‘정원 외 근무자 배정면적’ 1인당 5㎡

4) 2014년 10월 부여경찰서에 광역과학수사 7팀이 배치되었으며 광역수사 7팀은 논산경찰서로 이전될 예정

〈표 28〉 시설규모 검토 기준 정원 종합

(단위: 명)

구분	정원										
	본서									지역 관서	합계
	계	청문감사 인권관실	112치안 종합 상황실	경무과	정보 안보 외사과	수사과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과	경비 교통과		
2023년 2월 기준 인원	137	5	9	14	10	44	9	18	28	134	271
2024년 4월 기준 인원	128	4	6	13	5	45	11	19	25	134	262
계룡서 신설 후 기준 인원 (미확정)	120	3	6	12	4	43	10	18	24	90	210

주: 광역과학수사 7팀 인원은 정원 외 인원이므로 시설 규모 검토 기준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표 29〉 광역과학수사 7팀 인원

(단위: 명)

구분	인원	비고
경위	2	팀장 1명 포함
경사	1	-
경장	3	-
검시	2	행정근무자
합계	8	-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3차 제출자료」, 2024. 8.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라. 세부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결과

#### □ 규모 검토 결과 종합

- 2024년 4월 정원을 기준으로 관련 지침을 적용하여 세부시설 규모를 검토한 결과, 대안은 요구안 8,346.08㎡ 대비 623.57㎡ 감소한 7,722.51㎡로 산정됨
- 대안 규모가 감소한 주요 사유는 요구안은 2023년 2월 기준이었으나, 대안 검토 시에는 2024년 4월 기준 최신 정원을 적용함에 따름

- 기존 정원이 축소되면서 업무시설 등 전용면적이 전체적으로 줄었으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공용면적 또한 전용면적에 따라 감소함
- 논산경찰서 운영 현황과 시설 활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시설 규모를 조정함
  - 유치장의 경우 현황을 반영하여 요구안의 광역유치장을 일반유치장으로 변경하였고, 종교시설은 활용도를 고려하여 대안 규모에서 제외함
  - 시설면적 기준이 부재한 시설의 경우는 시설 활용도를 고려하여 요구안을 준용하거나 제외함

〈표 30〉 규모 검토 결과 종합

(단위: m<sup>2</sup>, %)

용도	시설명	요구안		사업계획 적절성 재검토		
		면적(A)	비율	대안(B)	증감(B-A)	비율
전용 면적	업무시설	3,966.89	47.5	3,613.66	-353.23	46.8
	부대시설	224.87	2.7	202.72	-22.15	2.6
	저장보관시설	926.61	11.1	1,047.97	121.36	13.6
	관리시설	139.92	1.7	147.00	7.08	1.9
	편의시설	418.48	5.0	384.66	-33.82	5.0
	정보통신시설	138.91	1.7	123.00	-15.91	1.6
	전용면적 소계	5,815.68	69.7	5,519.01	-296.67	71.5
공용 면적	설비관련실	420.31	5.0	663.00	242.69	8.6
	계단, EV홀, 복도, 화장실 로비 등	2,110.09	25.3	1,540.50	-569.59	19.9
	공용면적 소계	2,530.40	30.3	2,203.50	-326.90	28.5
<b>합계</b>		<b>8,346.08</b>	<b>100.0</b>	<b>7,722.51</b>	<b>-623.57</b>	<b>100.0</b>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1〉 규모 검토 세부 내역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전용 면적	업무 시설	순 사 무 실	서장실	88.44	1	총경(경찰서장실): 80m <sup>2</sup>	80.00	-8.44
			과장실	194.23	7	경정 7명×30m <sup>2</sup>	210.00	15.77
			행정부서	516.16	69	근무자 수×7m <sup>2</sup>	483.00	-33.16
			수사부서	612.34	51	근무자 수×10m <sup>2</sup>	510.00	-102.34
			광역7팀	76.07	8	근무자 수×5m <sup>2</sup>	40.00	-36.07
			소계	1,487.24	128	-	1,323.00	-164.24

〈표 31〉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전 용 면 적	업 무 시 설	순 사 무 실 외	상황실	127.00	128	100~200명 미만 100m <sup>2</sup>	100.00	-27.00	
			대강당	310.85	262	200~400명 미만 400m <sup>2</sup>	400.00	89.15	
			소회의실	205.43	128	20명 미만: 50m <sup>2</sup> , 1명 증가마다 0.7m <sup>2</sup> 가산	125.60	-79.83	
			대회의실	104.13	128	100~200명 미만 99m <sup>2</sup>	99.00	-5.13	
			유치장	538.10	-	일반유치장	384.00	-154.10	
			진술녹화실	46.27	51	수사관 10명당 1실 11m <sup>2</sup>	55.00	8.73	
			모니터실	35.67	51	수사관 10명당 1실 10m <sup>2</sup>	50.00	14.33	
			민원실	205.37	128	100~200명 미만 160m <sup>2</sup>	160.00	-45.37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87.75	30	과별 5명 기준, 피의자(피해자)×3m <sup>2</sup>	90.00	2.25	
			상담실	12.06	-	요구안 준용	12.06	-	
			상무관	288.12	262	200~400명 미만 300m <sup>2</sup>	300.00	11.88	
			실내사격장	467.87	262	200~400명 미만 464m <sup>2</sup>	464.00	-3.87	
			정보화교육장	51.03	17	2급서 교육인원 17명×3m <sup>2</sup>	51.00	-0.03	
			소계	2,479.65	-	-	2,290.66	-188.99	
	합계	3,966.89	-	-	3,613.66	-353.23			
	부 대 시 설			식당	110.50	128	근무자 수×1/2×1.5m <sup>2</sup>	96.00	-14.50
				주방	48.28	-	식당면적×1/3	32.00	-16.28
				창고	43.06	-	식당면적×60%	57.60	14.54
				조리원휴게실	15.91	2	(샤워장 1.7m <sup>2</sup> /인+휴게실 3.3m <sup>2</sup> /인)×사용인원	10.00	-5.91
				영양사실	7.12	1	요구안 준용	7.12	-
합계				224.87	-	-	202.72	-22.15	
저 장 보 관 시 설			창고	136.55	-	순사무실면적(광역과수7팀 제외)× 7%×3개소(문서, 비품, 소모품)	269.43	132.88	
			피복창고	46.50	262	근무자 수(지역관서 포함)×0.17m <sup>2</sup>	44.54	-1.96	

〈표 31〉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저장 보관 시설	수사	106.35	-	수사통합증거물보관실 103m <sup>2</sup> + 수사기록보관실(2급지) 35m <sup>2</sup>	138.00	31.65	
	경무	128.94	-	문서보관 28m <sup>2</sup> +지출서류보관 32m <sup>2</sup> +물품보관 60m <sup>2</sup>	120.00	-8.94	
	생활안전	85.31	-	유실물 15m <sup>2</sup> +압수물 52m <sup>2</sup> + 자료장비 60m <sup>2</sup>	127.00	41.69	
	정보	79.05	1	정보기록보관실 74m <sup>2</sup>	74.00	-5.05	
	경비, 장비창고	148.13	1	장비,물품 보관실 145m <sup>2</sup>	145.00	-3.13	
	무기고	94.50	262	200~400명 미만 50m <sup>2</sup> + 민간소유총포실 30m <sup>2</sup>	80.00	-14.50	
	탄약고	49.77	-	탄약고 20m <sup>2</sup> +화학보관실 30m <sup>2</sup>	50.00	0.23	
	증거물감정실	25.62	-	광역과수7팀 사무면적 반영	-	-25.62	
	전처리실	25.89	-	광역과수7팀 사무면적 반영	-	-25.89	
	합계	926.61	-	-	1,047.97	121.36	
전 용 면 적	관리 시설	경비실	6.00	-	정문안내소 15m <sup>2</sup>	15.00	-0.72
		민원안내	9.72	-			
		당직실	21.6	-	2급서 120m <sup>2</sup>	120.00	98.40
		호송차고	55.55	-	옥외 필로티 공간으로 연면적에서 제외	-	-55.55
		공익근무원실	21.42	-	시설면적 기준 부재	-	-21.42
		청사관리용역 사무실	25.63	-	2급서 12m <sup>2</sup>	12.00	-13.63
		합계	139.92	-	-	147.00	7.08
편의 시설	휴게실	79.94	128	여성휴게실 17~24인 기준 54m <sup>2</sup> 포함	86.78	6.84	
	샤워실	76.14	128	200명 미만 100m <sup>2</sup>	100.00	23.86	
	체육실	83.00	128	체육실: 75m <sup>2</sup> +(근무자 수-100)× 0.16m <sup>2</sup> +탈의실: 근무자수×0.55m <sup>2</sup>	149.88	66.88	
	종교시설	127.00	-	전의경 폐지 이후 시설 필요성 근거 미비로 인한 검토 대상 제외	-	-127.00	
	협의회실	40.54	1	협의회 1실 33m <sup>2</sup>	33.00	-7.54	
	수유실	11.86	1	수유시설관리 표준가이드라인 15m <sup>2</sup>	15.00	3.14	
	합계	418.48	-	-	384.66	-33.82	

〈표 31〉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전용면적	정보통신시설	보안실	34.49	1	경찰서 공통 1실 33m <sup>2</sup>	33.00	-1.49
		통신·전산장비실	54.34	-	통신 40m <sup>2</sup> +전산 50m <sup>2</sup>	90.00	35.66
		전산자료실	50.08	-	시도청 적용	-	-50.08
		합계	138.91	-	-	123.00	-15.91
<b>전용면적 합계</b>		<b>5,815.68</b>	-	-	<b>5,519.01</b>	<b>-296.67</b>	
공용면적	설비 관련실	기계실	249.53	-	10,000m <sup>2</sup> 이하 450m <sup>2</sup>	450.00	200.47
		전기실	104.05	-	10,000m <sup>2</sup> 이하 175m <sup>2</sup>	175.00	70.95
		발전기실	37.83	-	10,000m <sup>2</sup> 이하 38m <sup>2</sup>	38.00	0.17
		중앙감사실	28.90	-	기준 없음, 기계·전기실에 포함	-	-28.90
	계단, EV홀, 복도, 화장실 로비 등	2,110.09	-	전용면적의 30%(유치장제외)	1,540.50	-569.59	
<b>공용면적 합계</b>		<b>2,530.40</b>	-	-	<b>2,203.50</b>	<b>-326.90</b>	
<b>총계</b>		<b>8,346.08</b>	-	-	<b>7,722.51</b>	<b>-623.57</b>	

자료: 연구진 작성

## IV. 비용 추정

### 1. 비용 추정의 개요

#### 가. 기본 전제

#### □ 비용 추정 절차 및 방법

- 비용추정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 등에 따라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및 예비비로 구분

〈표 32〉 비용 추정 절차 및 방법

구분	연구 절차	연구 방법
I	비용 추정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추정의 기본 전제 규정</li> <li>• 총사업비 산정 방법 및 기준 제시</li> </ul>
II	비용 추정의 방법 및 기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공사비 단가 검토 기준</li> <li>• 사업의 특수여건에 따른 추가 공사비 검토 방식</li> <li>• 설계비, 감리비 등 시설부대경비 산정 기준</li> <li>• 용지보상비 및 예비비 반영 여부 등</li> </ul>
III	총사업비 추정 (검토안,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 단가를 적용하여 건축공사비 추정</li> <li>• 사업의 특수여건에 따른 추가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li> <li>• 공사비를 기초로 시설부대경비 산정 등</li> </ul>
IV	비용추정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안과 본 검토에서 추정된 비용의 비교 및 종합</li> </ul>

자료: 연구진 작성

□ 기준연도 설정

- 본 검토의 분석 기준연도는 2023년도 말로 설정하였으며, 기준단가의 조사시점이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보정지수를 활용하여 단가를 보정함

〈표 33〉 비용 보정 지수

연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2011	100.0												
2012	102.1	100.0											
2013	102.2	100.1	100.0										
2014	103.7	101.6	101.4	100.0									
2015	103.9	101.8	101.6	100.2	100.0								
2016	104.4	102.2	102.1	100.7	100.5	100.0							
2017	107.9	105.7	105.6	104.1	103.9	103.4	100.0						
2018	111.2	109.0	108.8	107.3	107.1	106.6	103.1	100.0					
2019	114.3	112.0	111.8	110.2	110.0	109.5	105.9	102.7	100.0				
2020	115.6	113.3	113.1	111.5	111.3	110.8	107.2	104.0	101.2	100.0			
2021	125.6	123.1	122.9	121.1	120.9	120.4	116.4	112.9	109.9	108.6	100.0		
2022	135.4	132.7	132.5	130.6	130.4	129.8	125.5	121.8	118.5	117.1	107.8	100.0	
<b>2023</b>	<b>139.3</b>	<b>136.5</b>	<b>136.3</b>	<b>134.4</b>	<b>134.1</b>	<b>133.5</b>	<b>129.1</b>	<b>125.3</b>	<b>121.9</b>	<b>120.5</b>	<b>110.9</b>	<b>102.9</b>	<b>100.0</b>

주: 1.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중 건설투자 항목이며, 기준연도 2020년 자료를 이용함  
 2. 음영으로 표시된 2023년 자료는 해당 연도 종료 후 6개월 내로 연간 잠정치임. 연간 잠정 시에는 일부 기초자료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추후 공표될 연간확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계열 분석 시 유의 바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4. 6. 5.

□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면적

- 본 재검토에서는 본 비용 추정에서는 요구안 면적을 준용한 '검토안'과 재검토 결과 도출한 '대안'에 대해 적정 비용을 검토함
  - 요구안 면적은 8,346㎡이며, 재검토를 통해 산정한 대안 면적은 7,723㎡

〈표 34〉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면적

(단위: ㎡)

구분	요구안 (A)	검토안 (B)	대안 (C)	증감	
				(B-A)	(C-A)
대지면적	8,935			-	-
연면적	8,346		7,723	-	-623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및 기준

□ 공사비

- 공사비는 기본공사비, 현장여건 공사비, 기타비용으로 구분함
- 기본공사비는 조달청의 유사사례 단위공사비를 검토하여 산정하였으며, 공종별 내역서를 검토하여 각 사례의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장여건 공사비를 제외함
- 현장여건 공사비는 요구안의 중간설계내역서를 검토하였으며, 각 항목의 직접공사비에 원가요율(직접공사비에 대한 순공사원가의 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연도를 보정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사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비 등 기타비용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기본공사비와 중복을 고려함

□ 보상비

- 2022년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므로 용지보상비는 실제 집행된 비용을 준용함

□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는 요구안과 동일하게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함
-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2018년 1월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최초 등록되었고, 2021년 총사업비 조정으로 설계비가 증액되었으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함
  - 설계비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기계계약금액 준용을 고려

- 시설부대비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요율에 따라 산정함

- 감리비는 발주 시점이 2025년이므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함

□ 예비비

-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에 의거 기본설계의 도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이므로 예비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 2. 총사업비 추정

### 가. 공사비

#### 1) 요구안 공사비

- 요구안의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총 26,351백만원으로 기본공사비 20,903백만원, 현장여건 공사비 5,044백만원, 기타비용 404백만원
- 공사비 세부내역은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와 충청남도경찰청의 1차 제출자료를 통해 받은 공사비 내역서를 근거로 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5〉 요구 공사비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비고
	VAT 포함	VAT 분리	
<b>공사비</b>	<b>26,351</b>	<b>26,351</b>	<b>연면적 감소, 물가변동, 기본공사비 단가 조정 비용 포함</b>
1-1. 기본공사비	20,903	19,003	-
1-2. 현장여건	5,044	4,585	-
1-2-1.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693	630	-
1-2-2. 흙막이 공사 적용	1,911	1,737	-
1-2-3. 기존 건물철거공사	1,511	1,374	-
1-2-4. 파일기초공사	929	845	-
1-3. 기타 비용	404	371	-
1-3-1.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39	35	-
1-3-2.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증가	304	276	-

〈표 35〉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비고
	VAT 포함	VAT 분리	
1-3-3. 시설분담금 등	61	59	BF본인증 및 한전/상수도/도시가스인입 사용전 검사 비용
1-4. 부가가치세	-	2,392	-

주: 부가가치세는 시설분담금 등을 제외한 금액 합계의 10%와 시설분담금 등의 제시된 부가가치세 2백만원의 합계  
 자료: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23. 7. 및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2) 기본공사비

### □ 기본공사비 단가 산정

- 공사비 정보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 중 본 사업과 유사한 규모의 경찰관서 사례를 조사함
-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비를 제외한 기본공사비 산출을 위해 각 사례의 공종별 내역서를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제외한 후 건축공사비 단가를 추정함
  - 현장여건 공사비는 해당 공종의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가요율을 활용하여 공사원가로 보정하여 산출

〈표 36〉 현장여건 공사비를 제외한 기본공사비 산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구분	총공사비 [A]	현장 여건 관련 추가 비용 [B+C]							기본공사비 [A-(B+C)]
		직접공사비(①)				원가 요율 (②)	현장여건 공사비 B (①×②)	흙막이 관급자재비 [C]	
		해체 철거	흙막이 가시설	파일 공사	소계				
충주경찰서	19,695	419	-	-	419	144	603	-	19,093
양평경찰서	23,647	503	1,044	337	1,885	145	2,732	170	20,744
곡성경찰서	13,830	161	445	-	606	148	898	-	12,932
부산수영 경찰서	22,356	174	302	-	475	147	700	-	21,656
인천해양 경찰서	20,363	-	6	494	500	147	734	404	19,226
진안경찰서	13,406	-	204	-	204	151	308	-	13,098
평균	18,883	-	-	-	681	-	996	-	17,791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2. 현장여건 제외 총공사비는 총공사비에서 현장여건공사비와 흙막이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값임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7. 18.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6개 사례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평균은 <표 37>과 같이 226만 852원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여부 검토 결과, 유사사례로 선정된 6개소 모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 공사비는 추가로 반영하지 않음

〈표 37〉 단위공사비 산정

(단위: 백만원, ㎡, 천원, %, 천원)

구분	발주연도	기본공사비	건축연면적	㎡당 공사비	기준시점 보정지수	㎡당 공사비 보정 결과	ZEB 적용
충주경찰서	2023	19,093	8,098.0	2,358	-	2,358	ZEB4
양평경찰서	2022	20,744	9,521.0	2,179	102.9	2,241	ZEB5
곡성경찰서	2022	12,932	6,149.1	2,103	102.9	2,163	ZEB5
부산 수영경찰서	2022	21,656	9,883.8	2,191	102.9	2,254	ZEB4
인천해양경찰서	2022	19,226	8,520.0	2,257	102.9	2,321	ZEB4
진안경찰서	2022	13,098	6,049.7	2,165	102.9	2,227	ZEB4
평균	-	17,791	8,036.9	2,209	-	<b>2,261</b>	-

- 주: 1. ㎡당 공사비는 현장여건을 제외한 총공사비의 ㎡당 금액임  
 2. 부가가치세 제외  
 3. 제로에너지 인증 여부는 <https://zeb.energy.or.kr>, '제로에너지 건축물'에서 확인함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7. 18.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기본공사비 추정

- 조달청 유사사례의 공사비 내역 검토를 통해 산정한 기본공사비 단가 평균은 2,260,852원/㎡로 현장여건에 따른 편차를 제거하여 준거 공사비로 정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2023년 1월 작성된 중간설계내역서를 반영한 요구안의 공사비를 기준연도 시점으로 보정한 기본공사비 단가는 2,342,896원/㎡으로 산정됨
- 본 재검토에 기본공사비 추정은 조달청 유사사례를 통해 도출한 단가 2,260,852원/㎡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요구안 190.03억원 대비 검토안은 188.69억원으로 1.34억원 감소하였으며, 대안은 174.59억원으로 15.44억원 감소함

〈표 38〉 기본공사비 추정 결과

(단위: m<sup>2</sup>, 원/m<sup>2</sup>,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면적	8,346	8,346	7,723
단위공사비	2,342,896	2,260,852	2,260,852
1-1. 기본공사비	19,003	18,869	17,459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3) 현장여건

#### □ 현장여건 공사비 검토

- 현장여건에 포함되는 항목은 연약지반 개량공사, 흙막이 공사, 기존 건물 철거공사, 파일기초공사 비용임
- 현장여건 공사비 공종별로 중간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원가요율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산출하고, 관급자재 포함, 기준연도 보정을 통해 산정함
  - 원가요율은 직접공사비에 대한 총공사원가의 비율이며 토목 공종의 원가요율은 143%, 건축 공종의 원가요율은 142%로 산정됨

〈표 39〉 중간설계내역서 원가요율 산정

(단위: 원, %)

구분	총 공사원가(A)	직접공사비(B)	원가요율(A/B)
토목	1,206,320,000	841,887,923	143
건축	16,514,299,091	11,589,251,836	142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 요구안에서는 연약지반 개량 토공사와 연약지반 보강공사 비용만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본 재검토에서는 계측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로 산출함
  - 중간설계내역서에 따르면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는 연약지반 개량 토공사, 연약지반 보강공사, 계측공사 비용으로 구분함

-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는 중간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 477백만원에 토목 원가요율 143%를 적용하고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연도보정하여 717백만원으로 검토됨

〈표 40〉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구분	직접공사비 (A)	토목 원가요율 (B)	관급자재비 (C)	보정지수 (D)	금액 ((A×B)+(C))×(D)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477	143	13	102.9	717

주: 1. 원가요율은 직접공사비를 순공사원가로 보정하기 위한 비율로 '원가요율=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의 산식으로 산정함  
2.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흙막이 공사비

- 흙막이 공사비 또한 중간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 1,312백만원에 건축 원가요율 142%를 적용하고 기준연도를 보정하여 1,924백만원으로 검토함

〈표 41〉 흙막이 공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 백만원)

구분	직접공사비	건축 원가요율	보정지수	금액
흙막이 공사비	1,312	142	102.9	1,924

주: 1. 원가요율은 직접공사비를 순공사원가로 보정하기 위한 비율로 '원가요율=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의 산식으로 산정함  
2.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

-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기존 건축물 등의 철거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산정이 필요함
- 건축·토목·조경 철거공사비는 중간설계내역서를 검토하여 확인한 직접공사비에 원가요율을 적용하고 연도보정하여 각각 444백만원, 42백만원, 12백만원으로 산정함
  - 철거공사비는 본 사업 고유의 현장 여건이 반영된 비용으로 유사사례와 공사비 산출기준이 상이하여 중간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를 준용함

〈표 42〉 철거공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 백만원)

구분	직접공사비	원가요율	보정지수	금액
건축 철거공사비	303	142	102.9	444
토목 철거공사비	28	143	102.9	42
조경 철거공사비	8	142	102.9	12

주: 1. 원가요율은 직접공사비를 순공사원가로 보정하기 위한 비율로 '원가요율=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의 산식으로 산정함  
 2.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석면 철거공사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석면 철거공사비에 석면 철거감리비를 포함하여 243백만원으로 검토함

〈표 43〉 석면 철거공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구분	공사비	보정지수	금액
석면 철거공사비 <sup>1)</sup>	236	102.9	243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1) 석면 철거공사비는 철거공사비 222백만원, 석면 철거감리비 14백만원의 합임

자료: 연구진 작성

- 폐기물처리 비용의 경우 중간설계내역서를 준용하여 분석 기준연도로 보정한 금액과 분석 기준연도 폐기물처리 기준단가를 사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비교 검토함
  - 중간설계내역서와 「2024년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한국건설자원협회, 2024. 1. 시행)를 사용한 재산정한 금액이 유사하므로 중간설계내역서를 준용함

〈표 44〉 건설폐기물 처리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중간설계내역서	757	기준연도로 보정
재산정	810	중간설계내역서의 폐기물 용량을 기준으로 재산정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검토 결과, 기존 건물 철거비는 건축·토목·조경 철거공사비, 석면 철거공사비, 건설 폐기물처리비를 합산하여 1,498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검토안과 대안의 비용은 같음

〈표 45〉 기존 건물 철거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A)	검토안·대안 (B)	증감 (B-A)	비고
건축 철거공사비	406	444	37	중간설계내역서 비용을 기준연도로 보정
토목 철거공사비	41	42	1	중간설계내역서 비용을 기준연도로 보정
조경 철거공사비	13	12	-1	중간설계내역서 비용을 기준연도로 보정
석면 철거공사비	236	243	7	중간설계내역서 비용을 기준연도로 보정
건설폐기물처리비	678	757	79	중간설계내역서 비용을 기준연도로 보정
<b>합계</b>	<b>1,374</b>	<b>1,498</b>	<b>124</b>	-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파일기초공사비

- 요구안은 건축공사 시 연약지반에 따른 건축물 침하방지를 위해 파일기초를 계획하였으며 본 재검토는 중간설계의 파일길이와 공사비 내역을 검토하여 해당 비용을 준용함
- 중간설계내역서 직접공사비 404백만원에 건축 원가요율을 적용하고 관급자재비 포함, 기준연도로 보정하여 902백만원으로 산정함

〈표 46〉 파일기초공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구분	직접공사비 (A)	건축 원가요율 (B)	관급자재비 (C)	보정지수 (D)	금액 ((A×B)+(C))×(D)
파일 기초 공사비	404	142	301	102.9	902

주: 1. 원가요율은 직접공사비를 순공사원가로 보정하기 위한 비율로 '원가요율=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의 산식으로 산정함

2.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4) 기타 비용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공사비

- 당초 사업계획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대로 계획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요구함
- 현행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7대 설치하여야 하며, 이 중 급속 충전시설은 1대를 포함해야 함

〈표 47〉 전기차 및 급속 충전시설 설치 수량 산정

(단위: 대, %)

구분	법정 주차대수	요율	충전시설 수량
전기차 충전시설	136	5	7
급속 충전시설	7	10	1

자료: 연구진 작성

- 법령 개정 이후 발주한 유사사례 내역서 확인 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평균 7대의 설치비용이 기본공사비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판단되어 추가 공사비는 미반영함

〈표 48〉 유사사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충전기 설치 수량

(단위: 대)

구분	발주연도	주차대수	산정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
충주경찰서	2023	201	주차면수×5%	11
양평경찰서	2022	129		7
곡성경찰서	2022	64		4
부산 수영경찰서	2022	114		6
인천해양경찰서	2022	137		7
평균				7

자료: 연구진 작성

##### □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의 중복 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사례 해당 연도에 대한 적용비율 32%를 제외한 추가분 2%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를 추정하고자 함
  - 본 사업의 인허가 시점인 202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34%임

〈표 49〉 유사사례 경찰서 단가 기준

구분	발주연도	의무공급비율	본 사업 공급 의무비율	추가 산정 비율
충주경찰서	2023	32%	34%	2%
양평경찰서	2022			
곡성경찰서	2022			
부산 수영경찰서	2022			
인천해양경찰서	2022			

자료: 연구진 작성

- 본 사업의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지역은 충남에 해당하므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에너지사용량은 〈표 50〉과 같음

〈표 50〉 에너지사용량 산정

(단위: m<sup>2</sup>, kWh/m<sup>2</sup>yr, kWh/yr)

구분	연면적	단위에너지사용량	지역계수	예상에너지사용량	비고
검토안	8,346.0	371.66	0.99	3,070,856	업무시설 /충남
대안	7,722.5	371.66	0.99	2,841,448	

주: 상기 연면적은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지 않는 시설의 면적이며, 단위에너지 사용량 및 보정계수는 업무시설을 적용하고, 지역계수는 충남 지역을 기준으로 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별표2], 2024. 2. 2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전체 에너지사용량을 2025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34%를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음과 같음

〈표 51〉 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량 산정

(단위: kWh/yr, %, kWh/yr)

구분	예상에너지사용량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량
검토안	3,070,856	34	1,044,091
대안	2,841,448	34	966,09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별표2], 2024. 2. 2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논산경찰서 총사업비 조정 심의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설비로 태양광(고정식) 100%를 적용하여 산정한 태양광 설치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52〉 대안별 태양광 설치 규모 산정

(단위: kWh/yr, kWh/kW·yr, kW)

구분		신·재생에너지량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원별 설치규모
검토안	태양광	1,044,091	1,358	0.95	809
대안	태양광	966,092	1,358	0.95	749

주: 태양광의 설치 비율 100%로 산정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10], 2024. 1. 9.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위에서 산정한 태양광 설치규모를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34%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먼저 산정하고 기존 사례 대비 추가되는 2%를 적용한 결과 검토안 80백만원, 대안 74백만원으로 산정됨

〈표 53〉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비 종합

(단위: kW, 천원/kW, 백만원)

구분		원별 설치규모	원별 공사 단가	공사비 (34% 기준)	적용공사비 (2% 기준)
검토안	태양광	809	1,685	1,363	80
대안	태양광	749	1,685	1,261	74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설비가격 및 지원단가」, 게시일자: 2024. 4. 5.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비용 및 시설분담금

- 요구안에서는 BF 본인증 시기를 사용승인 후로 계획하고 인증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요구안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319,600원을 반영

〈표 54〉 개별시설 BF 본인증 수수료

(단위: 원)

구분		300㎡ 미만 (제1구간)	300㎡ 이상 ~1,000㎡ 미만 (제2구간)	1,000㎡ 이상 ~3,000㎡ 미만 (제3구간)	3,000㎡ 이상 ~10,000㎡ 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3호)」[별표8], 2018. 8.

- 시설부담금은 한전 인입 비용, 상수도 인입 비용, 도시가스 인입 비용, 전기 사용 전 검사 비용으로 구성되며 시설분담금의 산출 근거를 검토하여 요구안의 비용을 준용함

〈표 55〉 BF 본인증 비용 및 시설분담금 검토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A)	검토안·대안(B)	비고
BF 본인증	5	5	-
한전 인입	17	17	-
상수도 인입	35	35	부가가치세 별도 비용
도시가스 인입	1	1	부가가치세 별도 비용
전기 사용 전 검사	1	1	-
부가가치세	2	2	BF본인증, 한전 인입, 전기 사용 전 검사
총계	61	61	-

자료: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자료」, 2024. 4.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기타비용 종합

- 기타비용은 검토안은 요구안 대비 232백만원 감소한 139백만원, 대안은 238백만원 감소한 133백만원으로 검토됨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비는 기본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어 미반영
  - 신재생에너지관련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증가분(2%) 반영
  - BF 본인증 비용 및 시설분담금은 요구안의 비용을 준용함

〈표 56〉 기타비용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검토안			대안		비고
	요구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35	-	-35	-	-35	기본공사비에 포함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증가	276	80	-196	74	-202	공급의무비율 증가분 반영
시설분담금 등	59	59	-	59	-	요구안 준용
합계	371	139	-232	133	-238	-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5) 공사비 종합

### □ 공사비 추정 결과 종합

- 검토안의 공사비는 요구안 대비 99백만원 증가한 26,450백만원으로 검토되었으며, 대안은 1,459백만원 감소한 24,892백만원으로 검토됨
  - 검토안과 대안의 주요 변동 원인은 기본공사비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공사비 단가 재산정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 그 외에 중간설계내역서를 검토하여 재산정한 현장여건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비용에서 일부 항목이 삭제되는 등 변동이 발생함

〈표 57〉 공사비 추정 결과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비고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b>1. 공사비</b>	<b>26,351</b>	<b>26,450</b>	<b>99</b>	<b>24,892</b>	<b>-1,459</b>	-
1-1. 기본공사비	19,003	18,869	-134	17,459	-1,543	-
1-2. 현장여건	4,585	5,040	455	5,040	455	중간설계비용 준용
1-2-1. 연약지반 개량공사비	630	717	87	717	87	-
1-2-2. 흙막이 공사 적용	1,737	1,924	187	1,924	187	-
1-2-3. 기존 건물철거 공사	1,374	1,498	124	1,498	124	-
1-2-4. 파일기초공사	845	902	57	902	57	-
1-3. 기타 비용	371	139	-232	133	-238	-
1-3-1.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35	-	-35	-	-35	공사비에 포함
1-3-2.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증가	276	80	-196	74	-202	-
1-3-3. 시설분담금 등	59	59	-	59	-	요구안 준용
<b>소계</b> (1-1)+(1-2)+(1-3-1)+(1-3-2)	23,900	23,990	90	22,574	-1,326	시설분담금 등 제외
1-4. 부가가치세	2,392	2,401	9	2,259	-133	-

주: 부가가치세는 시설분담금 등을 제외한 공사비 합계의 10%와 시설분담금 등의 제시된 부가가치세 2백만원의 합계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보상비

### □ 토지보상 집행 내역

- 경찰청에 1차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1~2022년 2개년에 걸쳐 총 매각대금 4,157백만원을 완납하여 용지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 재검토에서는 총 매각대금인 4,157백만원을 준용함

〈표 58〉 토지보상비 집행 내역

(단위: 원)

구분	집행금액	비고
용지비	4,149,366,000	-
관련부대비	7,604,100	감정평가수수료,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
총계	4,156,970,100	-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다. 시설부대경비

### □ 시설부대경비 산정 기준

- 요구안의 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여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비용을 검토함
- 본 사업은 이미 설계계약이 완료되었고 설계비 일부가 집행되었으며 사업초기에 필요한 조사·측량 등이 완료되었으므로 조사·측량비는 검토대상에서 제외

### □ 설계비

- 본 사업은 이미 설계계약이 완료되었고 설계비 일부가 집행되었으며, 설계비에 대한 증액요구가 없었으므로 검토안 및 대안의 설계비는 실제 계약금액을 준용함

〈표 59〉 설계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비고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설계비	891	814	-77	814	-77	-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감리비

- 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대상<sup>5)</sup>에 해당하므로 전면 책임감리를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감리는 2025년 이후 발주하게 되므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4. 5.)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함
-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산정 결과 검토안은 7.65%, 대안은 7.82%이며, 각각의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감리비는 검토안 1,839백만원, 대안 1,769백만원임

〈표 60〉 감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구분	기준공사비 <sup>1)</sup>	적용 요율	금액
검토안	24,043	7.65	1,839
대안	22,628	7.82	1,769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1) 기준공사비에서 BF인증비용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시기를 감안하여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7. 4.)의 요율을 적용
- 시설부대비 요율은 검토안 및 대안 모두 기준공사비의 0.23%이며, 이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설부대비는 검토안 55백만원, 대안 52백만원임

〈표 61〉 시설부대비 추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구분	기준공사비 <sup>1)</sup>	적용 요율	금액
검토안	24,043	0.23	55
대안	22,628	0.23	52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1) 기준공사비에서 BF인증비용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5)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 시설부대경비 종합

- 사업 추진 경과와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 검토안은 요구안 대비 182백만원 감소한 2,978백만원, 대안은 요구안 대비 261백만원 감소한 2,899백만원임

〈표 62〉 시설부대경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비고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설계비	891	814	-77	814	-77	기계약금액 준용
감리비	1,926	1,839	-88	1,769	-157	-
시설부대비	55	55	-	52	-3	-
부가가치세	287	271	-17	264	-24	-
합계	3,160	2,978	-182	2,899	-261	-

자료: 연구진 작성

라. 예비비

□ 예비비 산정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7조 제6항에 따라 기본설계 시행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비용 항목이 확정되는 단계에는 예비비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본설계가 완료된 단계로 요구안에도 예비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재검토에서도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음

마. 총사업비 종합

□ 총사업비 추정결과 종합

- 총사업비 추정 경과 요구안 33,670백만원 대비 검토안은 85백만원 감소한 33,585백만원, 대안은 1,722백만원 감소한 31,948백만원으로 검토됨
  - 검토안의 경우 중간설계내역서를 준용하여 기준연도를 보정한 현장여건 공사비는 증가하였으나, 단가 조정에 따른 기본공사비가 감소하였으며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부대경비 재산정으로 총사업비가 소폭 감소함
  - 대안의 경우 최신 정원을 기준으로 시설 규모 조정 등 전체 연면적이 감소하여 기본공사비가 감소하였고 이와 연동되는 시설부대경비 감소로 총사업비 또한 감소함

〈표 63〉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비고
	금액(A)	금액(B)	증감 (B-A)	금액(C)	증감 (C-A)	
<b>총사업비</b>	<b>33,670</b>	<b>33,585</b>	<b>-85</b>	<b>31,948</b>	<b>-1,722</b>	-
<b>1. 공사비</b>	<b>26,351</b>	<b>26,450</b>	<b>99</b>	<b>24,892</b>	<b>-1,459</b>	-
1-1. 기본공사비	19,003	18,869	-134	17,459	-1,543	-
1-2. 현장여건	4,585	5,040	455	5,040	455	중간설계비용 준용
1-2-1.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630	717	87	717	87	-
1-2-2. 흙막이 공사 적용	1,737	1,924	187	1,924	187	-
1-2-3. 기존 건물철거 공사	1,374	1,498	124	1,498	124	-
1-2-4. 파일기초공사	845	902	57	902	57	-
1-3. 기타 비용	371	139	-232	133	-238	-
1-3-1.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35	-	-35	-	-35	공사비에 포함
1-3-2.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증가	276	80	-196	74	-202	-
1-3-3. 시설분담금 등	59	59	-	59	-	요구안 준용
1-4. 부가가치세	2,392	2,401	9	2,259	-133	-
<b>2. 보상비</b>	<b>4,159</b>	<b>4,157</b>	<b>-2</b>	<b>4,157</b>	<b>-2</b>	-
<b>3. 시설부대경비</b>	<b>3,160</b>	<b>2,978</b>	<b>-182</b>	<b>2,899</b>	<b>-261</b>	-
3-1. 설계비	891	814	-77	814	-77	기계약금액 준용
3-2. 감리비	1,926	1,839	-88	1,769	-157	-
3-3. 시설부대비	55	55	-	52	-3	-
3-4. 부가가치세	287	271	-17	264	-24	-

주: 공사비의 부가가치세는 시설분담금 등을 제외한 공사비 합계의 10%와 시설분담금 등의 제시된 부가가치세 2백만원의 합계  
 자료: 연구진 작성

### 3.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계획

□ 요구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계획

○ 총사업비 중 2023년까지 기투자된 비용과 요구안의 연차별 배분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64〉 사업계획 요구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불용 및 잔여금	합계	비고
A. 공사비	금액	-	-	2,635	10,540	13,176	-	26,351	-
	비율	-	-	10%	40%	50%	-	100%	
B. 용지보상비	금액	4,157	-	-	-	-	(2) <sup>1)</sup>	4,159	토지매입 완료
	비율	99.95%	-	-	-	-	0.05%	100%	
C. 시설부대경비	금액	572	-	545	871	1,087	(85) <sup>2)</sup>	3,160	-
	비율	18%	-	17%	28%	34%	3%	100%	
C-1. 설계비	금액	568	-	327	-	-	(85) <sup>2)</sup>	980	'25에 잔여금 집행
	비율	58%	-	33%	-	-	9%	100%	
C-2. 감리비	금액	-	-	212	848	1,059	-	2,119	-
	비율	-	-	10%	40%	50%	-	100%	
C-3. 시설부대비	금액	4	-	6	23	28	-	61	-
	비율	7%	-	10%	38%	46%	-	100%	
D. 예비비	금액	-	-	-	-	-	-	-	-
	비율	-	-	-	-	-	-	-	
E. 총사업비 (A+B+C+D)	금액	4,729	-	3,180	11,411	14,263	(87)	33,670	잔여금 제외 33,583
	비율	14.0%	-	9.4%	33.9%	42.4%	0.3%	100%	

주: 1) 질의답변에 따르면 2백만원은 불용금액

2) 질의답변에 따르면 85백만원은 설계공모비, 심의수당, 교통영향평가용역, 설계용역 계약금의 잔여금액

3)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연구진 작성

○ 2026년 착공으로 가정하여 총사업비 연차별로 배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65〉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계획

(단위: %)

구분	2023년 (기투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공사비	-	-	-	50	50	100
보상비	100	-	-	-	-	100
설계비	59	-	41	-	-	100
감리비	-	-	-	50	50	100
시설부대비	7	-	-	47	47	100

자료: 연구진 작성

- 2026년 착공 기준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 비율에 따라 검토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66〉 검토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기투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비고
A. 공사비	검토안	-	-	-	15,997	10,453	26,450	-
	비율	-	-	-	60%	40%	100%	-
	대안	-	-	5,544	9,674	9,674	24,892	-
	비율	-	-	22%	39%	39%	100%	-
B. 용지보상비	검토안	4,157	-	-	-	-	4,157	토지 매입 완료 (2021~2022년)
	대안	4,157	-	-	-	-	4,157	
	비율	100%	-	-	-	-	100%	
C. 시설부대경비	검토안	573	-	326	1,040	1,039	2,978	-
	비율	19%	-	11%	35%	35%	100%	-
	대안	573	-	326	1,000	1,000	2,899	-
	비율	20%	-	11%	34%	34%	100%	-
C-1. 설계비	검토안	569	-	326	-	-	895	공모심사비 및 수당(7) 설계용역(746) 교통영향평가용역(143)
	비율	64%	-	36%	-	-	100%	
	대안	569	-	326	-	-	895	
	비율	64%	-	36%	-	-	100%	
C-2. 감리비	검토안	-	-	-	1,011	1,011	2,022	-
	대안	-	-	-	973	973	1,946	-
	비율	-	-	-	50%	50%	100%	-
C-3. 시설부대비	검토안	4	-	-	28	28	61	계약수수료(4)
	비율	7%	-	-	47%	47%	100%	
	대안	4	-	-	27	27	57	
	비율	7%	-	-	47%	46%	100%	
D. 예비비	검토안	-	-	-	-	-	-	-
	대안	-	-	-	-	-	-	-
	비율	-	-	-	-	-	-	-
E. 총사업비 (A+B+C+D)	검토안	4,730	-	326	17,037	11,492	33,585	-
	비율	14%	-	1%	51%	34%	100%	-
	대안	4,730	-	5,870	10,674	10,674	31,948	-
	비율	15%	-	18%	33%	33%	100%	-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연구진 작성

## V. 정책성 분석

###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 □ 정책성 분석의 근거 및 개요

-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중 계량화는 어렵지만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분석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별표 3]에 따라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별도평가항목을 검토함
- (사업추진 여건) 상위계획 반영 여부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과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 외부여건 등을 검토함
- (정책 효과) 기본항목(일자리 효과, 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과 선택항목(안전성 평가)을 검토하고 사업 부처에서 제시하는 사업특화항목을 검토함
- (사업별도평가항목) 채용조달 위험성 또는 문화재 가치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영함
- 정책성 분석은 ‘사업추진 여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책효과’와 ‘사업별도평가항목’은 포함하지 않음

〈표 67〉 정책성 분석의 세부평가항목

중분류	세부평가항목	수행 여부
사업추진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li> <li>•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li> </ul>	검토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효과</li> <li>• 생활여건 영향</li> <li>• 환경성 평가</li> <li>• 안전성 평가(선택)</li> <li>• 사업특화항목</li> </ul>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 생략 가능
사업별도평가항목 (선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조달 위험성</li> <li>• 문화재 가치</li> </ul>	미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78호)」[별표 3], 2023. 12. 27.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2. 사업추진 여건

### 가. 내부여건 검토 결과

- 상위·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경찰청 국정과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기초시설로서 노후 경찰서 시설환경 개선은 정책방향에 부합
    - 상기 국정과제의 목표는 ‘교통 및 건설·건축현장의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치안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임
    - 경찰서 시설환경 개선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경찰청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논산경찰서 신축사업은 경찰청에서 2013년 수립한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4~2018)」에 포함되어 노후 경찰관서 시설환경 개선 대상에 해당
    - 총괄청의 행정재산 통합관리 체계 전환 이후 경찰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노후 경찰관서의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5년 단위 계획을 수립
    - 본 시설은 상기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4~2018)」의 2015년 신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상위 계획에 부합함
  - 충청남도경찰청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2018~2022)」에 포함
    - 본 사업의 초기 계획이었던 총 사업기간 4년(2018~2021), 총사업비 163.36억원, 연면적 8,363㎡ 규모로 반영되어 있음
  - 논산시의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의 기반시설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
    -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 중 공공시설 계획지표에 따라 2035년까지 경찰서 1개소, 지구대·파출소 8개소 설치·운영 중이며, 경찰서는 중심생활권에 위치함
    - 사업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로 계획되어 적법하며, 시설용도는 공공업무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청사)에 부합함
  - 요구안의 사업계획은 경찰관서 청사시설 설계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나, 합리적인 시설계획을 위해 정원 외 인원에 대한 기준 등 일부 기준은 보완 필요
    - 기본설계 완료 후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검토’를 거쳐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

- 적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나, 본 검토를 통해 관련 기준과 현황을 토대로 시설 규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유치장, 광역수사팀, 종교시설 등을 조정함
- 2021년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개정을 통해 광역과학수사팀 인원에 대해 인당 7㎡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인원은 본청 소속으로 시설 중복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향후 기준 개정 시 반영 필요
  - 전의경 제도 폐지 등 경찰조직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시설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등 시설계획 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 □ 사업의 준비정도

- 부지 확정 및 매입이 완료되었고 기본설계가 이미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의 준비 정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2017년 12월 최초로 예산이 확정되고 세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결과 총사업비 증액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함
- 향후 인허가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및 공사 진행 시 현장 여건 관련 주변 지역 민원에 대비 필요
  -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 중단된 상태로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주차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계룡경찰서 신설 이후 정원 변경 가능성에 대비 필요
  - 굴착공사 시 연약지반으로 인한 인접 건축물 침하 등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철저한 공사관리계획 수립 필요
- 재원조달계획의 경우 총사업비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진행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나. 외부여건 검토 결과

##### □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 경찰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지속적 관리 필요
  - 경찰관서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현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2013년 최초

5개년(2014~2018)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수립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지속적 관리 필요

- 또한 경찰청에서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 하달 시 각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시설 환경개선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으나<sup>6)</sup> 충남경찰청에서 수립한 별도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

- 충남경찰청은 논산경찰서 청사의 노후화 진행 상황과 그간의 사업 지연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신속 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사업추진 의지가 높음

○ 논산시는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관련 입지 선정 및 부지확보 과정을 적극 지원

- 사업 초기 논산경찰서 이전 관련 지역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서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충남경찰청, 논산경찰서, 논산시 등 관계기관 실무 협의 추진

- 논산시와 논산경찰서 간 부지 매입 관련 협약체결로 논산시에서 사업대상지를 선 매입한 후 충남경찰청에 매각 완료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사업 수용성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논산경찰서 ‘이전 신축’에서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사업 수용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 논산경찰서 주변 지역주민은 사업 초기 논산경찰서의 이전계획에 적극 반대하며 현 사업부지에 재건축을 강력히 주장함

- 따라서 현 사업부지에 재건축하는 계획에는 반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착공 이후 발생 가능한 주변 민원에는 미리 대비할 필요

○ 공사기간 중 발생 가능한 지역주민의 불편, 임차청사 운영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공사 중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공사 중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임시청사에 대한 정보 전달 등 임시청사의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필요

6) 경찰청 공문(재정담당관-349, 2013. 1. 21.)

## VI. 지역균형발전 분석

### 1.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개요

#### □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요

-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낙후도 평가와 균형발전효과 분석을 수행함
- (지역낙후도)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서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 (균형발전효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와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함
  -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부처의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간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이용하여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등의 증가를 계량화한 수치로 평가함
- 단 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생략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계획 변경요구안의 규모와 비용이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한 조사로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지 않음. 따라서 본 재검토에서는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함

### 2. 지역낙후도 평가

#### □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 사업대상지인 충청남도의 지역낙후도는 17개 광역시·도별 기준으로는 13위
- 충청남도 논산시의 지역낙후도는 167개 시·군별 기준으로는 82위

###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 투자비 내역

〈표 68〉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단위: 억원)

투입부문	비용항목	충청남도	
		검토안	대안
건설(비주거용건물)	공사비	240.49	226.33
	시설부대경비	27.07	26.35
합계		267.56	252.68

- 주: 1. 총투자비는 2023년 기준임  
 2. IRIO 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순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지역귀속이 불분명한 시운전비 제외)를 합산한 것임  
 3. 총투자액은 본 모형의 지역구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의 건설(비주거용건물) 부문에 투입됨  
 4. IRIO 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하므로 완공 후 운영비는 제외함  
 5. 사업비 중 보상비는 이전소득이므로 제외함  
 6. 사업비 추계 시 포함된 예비비와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분석함

자료: 연구진 작성

####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결과

〈표 6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단위: 억원)

구분	검토안	대안
투입액	268	253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	141	133
지역 내 총생산(GRDP)	1,409,283	1,409,283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0.0100%	0.0094%

- 주: 1. 투입액은 2023년 기준가격이며, 지역 내 총생산은 2022년 기준 잠정치임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 지역인 충청남도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 해당 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자료: 연구진 작성

## VI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1. 종합결론

#### □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 (사업목적)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의 신규 사업 요건상 현 청사는 노후도 요건만을 충족하나 주무부처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취약 및 내외부 공간 부족 등 문제를 확인하여 신축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
- (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입지로 계획한 규모의 청사 건립에 문제가 없으며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적절한 범위에 해당
- (시설규모) 검토안은 요구안을 준용하고, 대안은 최신 정원을 기준으로 규모 재검토, 광역유치장을 일반유치장으로 변경, 활용도 낮은 시설 배제 등으로 총 연면적 감소
  - 대안의 연면적은 7,722.51㎡로 산정되어 요구안 면적 8,346.08㎡ 대비 623.57㎡ 감소
- (비용 추정) 2023년 말을 기준시점으로 검토하였으며, 총사업비를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수행
  - 총사업비 검토 결과, 검토안은 335억 8,500만원, 대안은 319억 4,800만원으로 산정되어 요구안의 총사업비 336억 7,000만원보다 각각 8,500만원, 17억 2,200만원이 감소

#### □ 정책성 분석

- 본 사업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향후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합리화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

#### □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생략하고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검토
  - 충남 논산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17개 시·도 기준 13위, 167개 시·군 기준 82위
  -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검토안 기준 0.0100%, 대안 0.0094%임

## 2. 정책제언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측면의 고려사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요인에 대비 필요
    - 인허가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특히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 중단된 상태로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주차계획 등이 변경될 가능성 존재
    - 향후 계통경찰서 신축사업 완료 후 정원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시설계 진행 시 조직개편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권장
  - 착공 이후 발생 가능한 주변 민원에는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
    - 굴착공사 시 연약지반으로 인한 인접 건축물 침하 등 위험요소,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공사관리계획 수립 필요
  - 공사 진행 중 경찰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청사 운영계획 마련이 필요
  
- 향후 보다 합리적인 경찰관서 청사 시설환경 개선과 시설계획을 위한 고려사항
  - 경찰청에서 수립한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경찰관서의 체계적인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은 2013년 최초 계획 이후 후속 관리가 요구됨
    - 경찰청의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관리로 실행체계 구체화 필요
  - 경찰청 자체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찰관서 설계기준」 개정으로 시설계획 기준 합리화
    - 2021년 개정으로 광역과학수사팀에 대해 인당 7㎡ 면적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본청 소속 인원의 각급 경찰서 배치 시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시설 중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
    - 본 재검토에서 전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공간 활용도 저하를 사유로 종교시설을 반영하지 않은 것처럼 시대 변화 및 정책·제도 변경 등 시설계획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 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III.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IV.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 V. 정책성 분석
- VI. 지역균형발전 분석
- VII.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

# 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

##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 사업의 추진 배경

본 사업은 1981년에 준공되어 43년이 경과한 논산경찰서 현 청사의 안전성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근무자와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청사 규모를 확장하여 다시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 논산경찰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논산경찰서의 안전등급은 D등급으로 판정되었다.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슬래브 및 보에서 균열과 일부 누수 흔적, 녹물 유출 등이 발견되었고, 외부 마감재 타일은 들뜸·백화·탈락 등의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벽체의 경우, 콘크리트 탄산화가 철근 깊이까지 도달하였고, 내진설계가 현 내진기준에 미달되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7)</sup>

충청남도경찰청은 우천 시 옥상과 벽면 균열 틈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일부 사무실에 누전 및 단전이 발생한 바 있어 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난방 보일러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가 요구되나, 교체 시 노후한 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으로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난방보일러 유류 저장소인 지하 유류탱크가 민원인 휴게실과 인접해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논산경찰서 현 청사 부지 및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직원의 근무 공간뿐 아니라 민원서비스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나 시설 확충 및 시설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현 청사 준공 이후 증가한 인력 규모에 따라 사무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하나 공간이 부족하여 차고 공간을 활용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 공간도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외에 현재 본서 근무인력 130여 명과 하루 평균 민원 이용자가 약 59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옥외 공간에 설치된 주차면수는 33대에 불과하여 주차공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7)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참조

##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충청남도경찰청은 현재 논산경찰서가 건물 노후화로 인해 다수의 하자과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부족한 사무공간과 민원인 공간, 주차 공간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남도경찰청은 논산경찰서를 신축함으로써 근무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민원인의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사업의 추진 근거 및 경위

### 가. 사업의 추진 근거

본 사업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제12조(경찰의 조직) 및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제3항 및 제42조(경찰서)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시·도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4. 7. 23.

##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제3항 및 제42조(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영으로, 제2조 제3항에서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정 제42조에서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259개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도록 하고 있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70호, 2024. 10. 29., 일부개정]

- 제2조(소속기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및별표 1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 제42조(경찰서)** ① 시·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259개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②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과 같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4.11. 15.

## 3)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유재산법」 제26조의5에서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 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4.11. 15.

## 나. 사업의 추진 경위<sup>8)</sup>

본 사업은 2018년 1월에 총사업비 관리대장에 최초 등록되었으며, 이후 2023년 6월까지 세 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당초 계획은 논산경찰서가 논산시와 계룡시를 함께 관할하고 있어 계룡시에 좀 더 근접해 있는 국유지(기재부 소유지)인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강경읍·부적면·계룡시) 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부지 재선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충남청-논산서-논산시 관계기관 실무협의, 논산서 신축 관련 직원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후 계룡시를 별도로 관할하는 계룡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2019년 6월, 논산경찰서는 부지를 이전하지 않고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현 부지에 확장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합의 및 결정되었다. 계룡경찰서는 예산안 편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19년 12월에 신축에 대한 국회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추가 매입하기로 한 인접부지는 논산시가 토지를 먼저 매입한 후 충청남도경찰청에 매각하는 절차로 진행되어, 2019년 10월 충남경찰청이 논산시와 3,960㎡ 부지에 대한 매매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부지의 보상비(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2020년 11월 1차 총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총사업비가 보상비로 인해 16,336백만원에서 20,495백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에 해당되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전환되었다.<sup>9)</sup> 충청남도경찰청은 논산시가 선매입한 인접부지에 대해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용

8)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자료」, 2024. 4.,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및 「토지매매 협약서」등을 참조

9)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동 지침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음.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됨. 제3조(관리대상 사업)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지보상을 완료하였다.

2021년 9월에는 시설부대경비를 증액하는 2차 총사업비 조정이 있었다. 사업초기 설계비 예산이 건축설계대가요율에 따른 비용만으로 되어 있어, 법령상 의무 반영이 필요한 각종 인증 관련 추가업무대가, 설계공모비용 및 지질조사·현황측량 등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344백만원 증가하였다.

이후 2022년 7월 논산경찰서 신축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반조사 결과 사업부지의 지반 상태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초기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기간 내 물리적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충청남도경찰청은 3차 총사업비 조정(2023. 6.)을 통해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였고, 이번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급등, 물가상승, 현장여건(연약지반), 각종 법정 분담금으로 인한 상승분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변경안에 대한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여 2023년 7월에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에 반영하였다.

〈표 1-1〉 사업의 추진경위

연월	내용
2017. 12.	• 논산경찰서 이전 신축 예산 확정(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2018. 1.~2019. 4.	• 계룡시의회, 경찰서 이전 촉구 탄원서 접수 • 논산서 이전 반대 비대위 탄원서 접수 • 논산경찰서 신축 부지 재선정 절차 시작 - 충남청, 논산서, 논산시 관계기관 실무 협의 - 논산서 신축관련 직원 설문조사 및 주민공청회 개최 - 논산서, 부지선정 관련 협의체 구성
2019. 6.	• 현 부지 신축으로 확정(인접부지 추가 매입 조건) - 계룡경찰서 신설 추진 협의
2019. 10.	• 논산서와 논산시청 간 부지매입 관련 협약 - 논산시에서 선매입 후 충남청에 매각
2019. 12.	• 계룡경찰서 신축 국회 예산안 확정
2020. 5.	• 총사업비 조정신청(부지변경, 보상비 증액) - (총사업비 관리대장) 1차 조정: 2020. 11. 19.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표 1-1〉의 계속

연월	내용
2021. 3.	• 설계 기획심의(조달청)
2021. 8.	• 총사업비 조정신청(설계비 등 증액) - (총사업비 관리대장) 2차 조정: 2021. 9. 16.
2022. 6.	• 노산시가 선매입한 부지를 충남청이 매입(잔금 집행 완료)
2022. 7.	• 노산경찰서 신축 설계공모 및 계약
2023. 6.	• 총사업비 조정(사업기간 연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3차 조정: 2023. 6. 16.
2023. 7.	•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완료
2024. 5.	•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구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399(2024.05.24.)

자료: 경찰청, 「충남 노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24. 5. 및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충청남도경찰청은 본 사업의 현장 특수여건으로 총사업비가 현행안 20,839백만원(3차 조정안, 2023. 6.)에서 33,670백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였다. 변경요구안의 총사업비는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하면 최초 등록된 총사업비 대비 57.1% 증가한 금액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하여 동 지침 제49조의2에 의거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의뢰되었다.<sup>10)</sup> 주요 증액 사유는 사업대상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약지반 개량 및 지반 보강을 위한 공사비 증가이다.

〈표 1-2〉 총사업비 타당성재조사 요건 내용(최초단계 대비 변경요구안 증감)

(단위: 백만원)

구분	최초단계	변경요구	증감	
	사업비(A)	사업비(B)	(B-A)	%
총사업비	16,336	33,670	17,334	106.1
총사업비 (물가지가 제외 시)	16,336	25,661	9,325	57.1
- 물가상승분	-	3,850	3,850	-
- 지가상승분	-	4,159	4,159	-

주: 「충남 노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에서 일부 수치 오류가 있어, 주무부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여 수정함  
자료: 경찰청, 「충남 노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24. 5. 및 충청남도경찰청, 3차 제출자료, 2024. 8.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10)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399(2024. 5. 24.)

### 3. 사업의 주요 내용

#### 가. 사업개요

본 사업은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8-2번지에 위치한 충남 논산경찰서를 현 부지에 인접부지(3,960㎡)를 추가 매입하여 확장 신축하는 사업이다. 매입부지는 현 부지의 바로 옆에 위치한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9-1번지이다. 해당 부지는 논산시가 먼저 매입한 후 충청남도경찰청에 매각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으며, 2021년 토지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충청남도경찰청이 선납 금액을 지불하였고 2022년 잔금을 모두 집행하여 용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의 사업기간은 2018~2027년(10년)이며 부지면적은 8,935㎡이다. 연면적의 변경요구안은 현행안 대비 16㎡ 축소한 8,346㎡이고, 총사업비의 변경요구안은 현행안 20,839백만원에서 12,831백만원 증가한 33,670백만원이다.

〈표 1-3〉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안	변경요구안
사업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8-2외 1필지	
사업규모	부지면적 <sup>1)</sup>	8,935㎡
	연면적	8,362㎡
사업기간	2018년~2027년(10년)	
사업주체	충청남도 경찰청	
총사업비	20,839백만원	33,670백만원
재원분담	국고 100%(국유재산관리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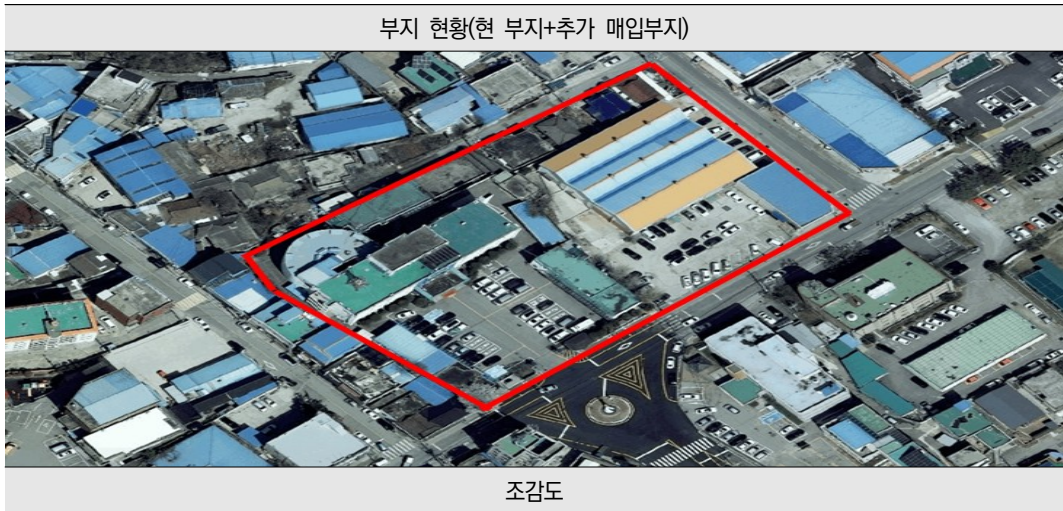
주: 1)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에서 부지면적이 8,912㎡로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함  
 -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를 통해 과거 부지 확보 예정 면적이 8,912㎡ 였으나, 2021년 12월 부지면적이 8,935㎡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함

자료: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24. 5. 및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그림 1-1] 위치도 및 부지 현황, 조감도



자료: 연구진 작성



자료: 연구진 작성 및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자료」, 2024. 4., p. 2에서 발췌

## 나. 사업규모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은 대지면적 8,935㎡에 연면적 8,346㎡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전용면적은 5,816㎡, 공용면적은 2,530㎡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시설로는 각 과별 업무공간과 대강당·회의실 등 공용업무공간으로 구성된 업무시설, 식당·주방·창고 등 부대시설, 저장·보관시설, 경비실·당직실 등 관리시설, 휴게실·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이 있으며, 기계·전기실 등 설비 관련실과 계단실·엘리베이터홀·복도·화장실·로비 등은 공용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표 1-4〉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업무시설	서장실	서장실	88.44	
		소계	88.44	
	경무과	과장실	29.07	
		경무	39.28	
		경리	74.58	
		과 소회의실		
		정보화장비(통신, 정보, 장비)	32.90	
		소계	175.78 (175.83)	
		생활 안전과	과장실	22.09
	생활안전계(생활, 범죄, CCTV)		54.34	
	풍속		조사실	11.34
			대기실	13.65
	과 소회의실		40.72	
	소계		142.14	
	수사과	과장실	32.13	
		수사지원팀 (수사지원, 수사심사, 유치관리)	80.80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46.71	
		지능범죄수사팀 (지능범죄, 사이버범죄)	79.94	
		경제범죄수사팀	81.47	
		형사팀(지역형사)	180.43	
		소계	501.48	

〈표 1-4〉의 계속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업무시설	여성 청소년과	과장실	31.30
		여성청소년계 (여성업무, 학교전담, 학대전담)	66.90
		여성청소년수사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성폭력, 실종, 피의자피해자)	114.22
		피해자통합대기공간	27.39
		상담실	12.06
		소계	251.87
	경비 교통과	과장실	30.24
		경비작전계(경비)	20.16
		교통관리계 (내근, 교통지도, 수신호, 순찰차, 싸이카)	96.80
		교통조사팀 (교통조사, 교통범죄수사, 피의자피해자대기실)	105.59
		과 소회의실	63.45
		소계	316.24
	정보 안보 외사과	과장실	20.71
		공공안녕정보외사계 (정보내근, 정보외근, 외사)	87.51
		안보계(안보외근)	
		외사조사실	19.35
		소계	127.57
	청문 감사 인권관	청문감사인권	28.69
		피해자보호	
		감찰조사실	32.89
		민원	
		과 소회의실	51.26
		소계	112.84
	광역과학 수사 7팀	사무실	76.07
		소계	76.07
	공용 업무시설	상황실	127.00
		대강당	310.85
대회의실		104.13	
유치장		538.10	
진술녹화실		46.27	

〈표 1-4〉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공용 업무시설	모니터실	35.67
	민원실	205.37
	상무관	288.12
	실내사격장	467.87
	정보화교육장	51.03
	소계	2,174.41
	소계	3,966.84 (3,966.89)
부대시설	식당	110.50
	주방	48.28
	창고	43.06
	조리원휴게실	15.91
	영양사실	7.12
	소계	224.87
저장, 보관 시설	창고(문서, 비품, 소모품)	136.55
	피복창고	46.50
	수사기록보관실	106.35
	경무(지출서류, 문서, 물품)	128.94
	생활안전(자료장비, 압수물보관, 유실물보관)	85.31
	정보기록보관실	79.05
	경비, 장비창고	148.13
	무기고	94.50
	탄약고	49.77
	증거물 감정실	25.62
	전처리실	25.89
	소계	926.61
	관리시설	경비실
민원안내		9.72
당직실		21.60
호송차고		55.55
공익근무원실		21.42
청사관리 용역사무실		25.63
소계		139.92

〈표 1-4〉의 계속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편의시설	휴게실(남, 여)		79.94
	샤워실(남, 여)		76.14
	체육실		83.00
	종교시설		127.00
	직장인협의회실		40.54
	수유실		11.86
	소계		418.48
정보통신시설	보안실		34.49
	통신, 전산장비실		54.34
	전산자료실		50.08
	소계		138.91
① 전용면적 계			<b>5,815.63</b> <b>(5,815.68)</b>
공용시설	설비 관련실	기계실	249.53
		전기실	104.05
		발전기실	37.83
		중앙감시실	28.90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 등		2,110.09
② 공용면적 계			<b>2,530.40</b>
합계(①+②)			<b>8,346.03</b> <b>(8,346.08)</b>

주: 괄호 안 수치는 연구진 재계산 결과임

자료: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23. 7., pp. 29~37를 바탕으로 「경찰관서 설계 기준」의 용도 분류 기준에 맞추어 연구진 재정리

#### 다. 총사업비

충청남도경찰청에서 제시한 총사업비는 33,670백만원으로 현행안 총사업비 20,839백만원 대비 약 61.6% 증가하였다. 주무부처는 총사업비 주요 변경 요인으로 부지 확정 지연,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급등, 물가상승과 현장여건(연약지반, 철거공사)의 변화와 법령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증가하였으며, 보상비와 설계비는 현행안을 유지하였다.

〈표 1-5〉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안 (A)	변경요구안 (B)	증감		증감내역
			(B-A)	%	
총사업비(A+B+C)	20,839	33,670	12,831	61.6	
A. 공사비	15,505	26,351	10,846	70.0	• 물가, 현장여건, 분담금, 법령개정 반영
A-1. 기본공사비	15,505	17,083	1,578	10.2	• 기본공사비 단가 조정 ※ 물가상승분, 연면적감소분 제외
A-2. 물가상승분	-	3,850	3,850		• '18년 1분기~'23년 1분기 물가변동분
A-3. 연면적감소	-	-30	-30		•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시 연면적 감소(-16㎡)
A-4. 현장여건 (연약지반, 철거)	-	5,044	5,044		• 연약지반 개량, 사업부지 변경으로 추가된 기존건물 철거
A-5. 법령개정	-	343	343		•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A-6. 그 외	-	61	61		• BF본인증, 한전/상수도/ 도시가스 인입/사용전 검사
B. 보상비	4,159	4,159	-	-	
C. 시설부대경비	1,175	3,160	1,985	168.9	
C-1. 설계비	980	980	-	-	
C-2. 감리비	158	2,119	1,961	1241.1	• 전면책감요율적용
C-3. 시설부대비	37	61	24	64.9	• 부대비 요율반영

주: 1. 부가가치세 포함

2. 증감 % 수치는 현행안과 변경안의 표 수치로 연구진 재계산 결과임(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자료: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24. 5. 및 충청남도경찰청, 「4차 제출자료」, 2024. 9.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2023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총사업비(변경요구안)의 14.05%에 해당하는 총 4,729백만원으로, 세부항목으로 살펴보면 용지보상비에 4,157백만원, 설계비에 568백만원, 시설부대비에 4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3,180백만원(총사업비의 9.44%), 2026년에는 11,411백만원(33.89%), 2027년 14,263백만원(42.36%)을 계획하였고, 불용에 따른 잔액은 87백만원으로 이는 기집행된 용지보상비 및 설계비를 제외한 잔액이다.

〈표 1-6〉 기집행 상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요구안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既 집행 (’23년까지)	2024	2025	2026	2027	비용 및 잔여금	합계	비고
총사업비 (A+B+C)	4,729 (14.05%)	-	3,180 (9.44%)	11,411 (33.89%)	14,263 (42.36%)	(87) (0.26%)	33,670 (100%)	
A. 공사비	-	-	2,635	10,540	13,176	-	26,351	
B. 용지보상비	4,157	-	-	-	-	(2) <sup>1)</sup>	4,159	토지 매입 완료 (’21~’22)
C. 시설부대경비	572	-	545	871	1,087	(85)	3,160	
C-1. 설계비	568	-	327	-	-	(85) <sup>2)</sup>	980	’25에 잔금 집행
C-2. 감리비	-	-	212	848	1,059	-	2,119	
C-3. 시설부대비	4	-	6	23	28	-	61	

주: 1) 건설보상비 차액은 토지매입 관련 절차와 집행이 모두 완료되어 불용 금액임

2) 설계비 차액은 총사업비 내에서 설계공모비, 심의수당 금액 집행, 교통영향평가용역과 설계용역을 계약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교통영향평가용역과 설계용역은 선금과 기성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액은 용역이 끝난 후 집행 예정으로, 25년도 투자 계획에 작성)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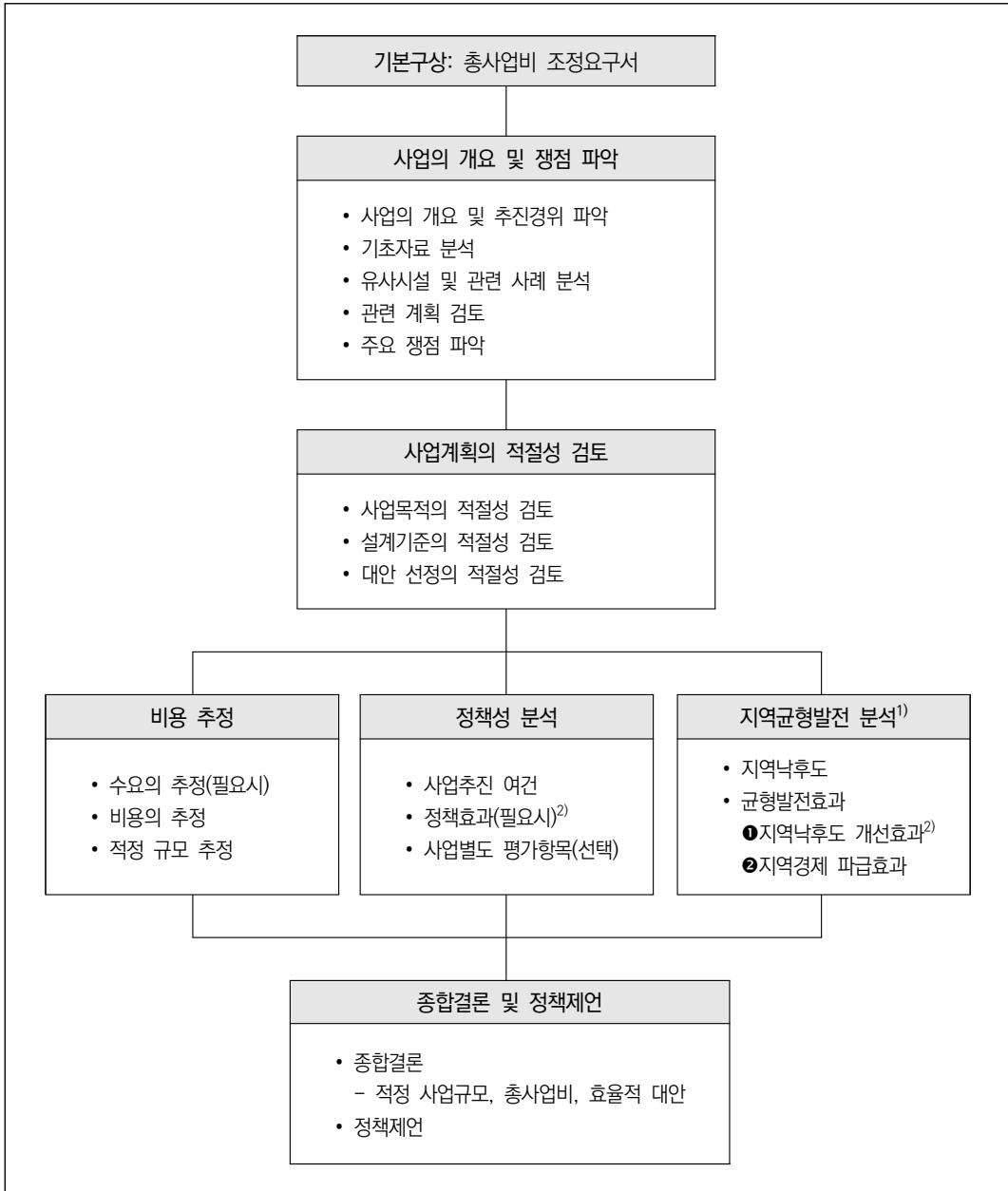
##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sup>11)</sup>

### 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수행절차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그림 I-2]와 같이 사업의 개요 및 재검토의 쟁점파악, 사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비용 추정,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이루어진다.

1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를 참조하여 정리함

[그림 1-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주: 1) 수도권 유형의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함. 또한 해당 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는 정책효과 및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생략 가능함

자료: 기획재정부훈령, 「총사업비 관리지침」, 「에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내용을 재구성함

##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분석방법

### 1)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추진 근거,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재검토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예비)타당성조사 등 이전단계의 분석결과 및 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파악한다. 그 다음으로 사업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관련 분야의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등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재검토에서의 주요 쟁점을 도출한다.

### 2)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비용 추정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는 당초 사업 추진 당시와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입지 및 환경측면에서의 부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에 충족하였는지 또는 과다 설계된 부분이 있는지 등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검토된 사업목적, 설계기준,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처가 제출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대안을 검토한다.

총사업비 추정은 공종별로 물량 및 적정 단가 산정을 통해 추정하며, 구조물 형식 등 변경요인이 현저한 부분을 분석하고,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한다. 재검토 시행시기에 따라 총사업비 추정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사업단계별 예비비를 차등 적용한다. 기본·실시설계 단계의 재조사에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는다.

### 3)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은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중 계량화가 곤란하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차원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평가항목은 크게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별도평가항목(선택)으로 구성한다.

사업추진 여건 항목에서는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 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등을 검토한다. 정책효과 항목에서는 부처의 제출 자료를 기초로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선택), 사업특화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도평가항목으로 재원조달 위험성, 문화재가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4)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세부 항목은 지역낙후도 평가와 균형발전효과 분석이다. 지역낙후도 평가에서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서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한다. 균형발전효과 분석에서는 부처의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간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이용하여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등의 증가를 계량화한 수치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한다.

다만 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 5)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사업 추진경위,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및 비용 추정,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사업비 조정 시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산출한다. 또한 재검토 결과에 대한 제약점을 기술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제언한다.

---

##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 1. 기초자료 분석

####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 1) 위치 및 지리적 특징<sup>12)</sup>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경 127°38'~125°32', 북위 35°58'~37°03' 사이에 있다. 동쪽은 충청북도 청주시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쪽은 황해, 남쪽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완주군·군산시, 북쪽은 경기도 평택시·안성시와 각각 접하고 있다. 위치상 영남과 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으로 서울, 부산, 목포로 통하는 1번 국도, 경부·호남선의 철도, 경부·호남고속도로,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통과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까지는 1시간대, 부산이나 목포까지는 3시간대의 위치에 있다.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한 동고서저의 지형지세로서 숲과 들로 이루어진 임야가 전체 면적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산으로는 서대산(904m), 계룡산(845m), 대둔산(878m) 등이 있다. 큰 하천으로는 삽교천, 곡교천, 무한천 등이 있으며 금강 주변과 하천 중심으로 평야가 잘 발달되어 있다. 서해안과 접해 있는 해안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총 해안선의 길이는 1,212km이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가로림만·천수만 등 만이 잘 발달되어 있다.

충청남도의 연평균 기후는 12.3℃로서 대체로 온화하나 전체적으로는 대륙성 기후이며, 특히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을 만한 지형적 장애물이 적어 같은 위도상의 동해안보다 추우며, 서북부 해안지대는 적설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논산시는 충청남도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계룡시 두마면, 대전광역시·금산군, 서쪽은 부여군, 남쪽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익산시, 북쪽은 공주시와 접하고 있다.

---

12)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참조

## 2) 면적 및 행정구역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은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당진시 8개 시 및 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 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충청남도청은 홍성군에 위치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총면적은 전국 총면적(100,431km<sup>2</sup>)의 8.2%인 8,246.59km<sup>2</sup>이며,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에 이어 여섯 번째이다. 시군별 면적을 보면 공주시가 864.13 km<sup>2</sup>로 가장 넓고, 계룡시가 60.7km<sup>2</sup>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논산시의 행정구역은 2읍 11면 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556.2km<sup>2</sup>로 충청남도 시·군 중 여덟 번째 크기에 해당한다.

[그림 II-1] 충청남도 행정구역도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검색일자: 2024. 7. 4.

〈표 II-1〉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면적(2022년 1월 기준)

(단위: km<sup>2</sup>, %)

구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면적	636.09	864.13	586.74	542.8	742.15	<b>556.2</b>	60.7	705.48
비율	7.71	10.48	7.11	6.58	9.00	<b>6.74</b>	0.74	8.55
구분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계
면적	577.13	624.62	366.13	479.11	446.69	542.66	515.96	8246.59
비율	7.00	7.57	4.44	5.81	5.42	6.58	6.26	100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검색일자: 2024. 7. 4.

## 나.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 1) 인구 현황 및 변화

충청남도의 총인구수는 213만 119명으로, 충청남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천안시와 아산시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5개년간의 충청남도 인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9~2021년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2023년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에 비해 2023년 인구는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계룡시와 아산시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각각 4.9%, 3.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0~1%대 증가율을 보인 예산군과 당진시, 금산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 시와 5개 군은 모두 인구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대상지인 논산시의 2023년 인구수는 11만 423명으로 충청남도 시·군 중에 5번째이며, 충청남도 인구의 5.18%를 차지하고 있다. 논산시는 5개년간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 비해 2023년 인구는 7.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충청남도 인구수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충청남도	2,123,709	2,121,029	2,119,257	2,123,037	2,130,119
천안시	652,258	658,808	658,486	657,559	655,959
공주시	106,474	104,545	103,145	102,571	102,104
보령시	101,114	100,229	98,408	97,157	95,772
아산시	314,395	316,129	324,580	334,539	345,796
서산시	174,690	175,591	176,645	176,413	176,011
<b>논산시</b>	<b>118,842</b>	<b>116,675</b>	<b>114,483</b>	<b>112,617</b>	<b>110,423</b>
계룡시	42,971	42,822	43,331	44,475	46,667
당진시	167,042	166,249	167,092	168,253	170,302
금산군	52,257	51,413	50,477	50,092	50,093
부여군	66,740	65,354	63,774	62,343	61,046
서천군	52,805	51,866	50,745	49,964	49,116
청양군	31,717	30,948	30,440	30,266	30,168
홍성군	100,423	100,102	99,324	98,068	97,524
예산군	79,238	78,084	76,801	77,385	78,354
태안군	62,743	62,214	61,526	61,335	60,784

주: 인구수는 내국인 기준(외국인 제외)이며, 연말(4분기) 기준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주민등록인구현황), 검색일자: 2024. 7. 4.

## 2) 자동차 등록대수

충청남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111만 8,117대에서 2023년 124만 5,446대로 11.39% 증가했으며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의 대상 지인 논산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3년 기준 6만 5,342대로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대수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3〉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충청남도	1,118,117	1,149,845	1,176,350	1,211,477	1,245,446
천안시	324,506	336,725	343,545	351,796	357,203
공주시	55,520	56,648	57,373	58,802	59,768
보령시	52,812	53,905	54,548	55,485	56,148
아산시	167,412	173,160	182,179	191,986	203,365
서산시	94,827	98,036	101,073	103,650	106,565
<b>논산시</b>	<b>62,683</b>	<b>63,534</b>	<b>64,025</b>	<b>65,041</b>	<b>65,342</b>
계룡시	21,887	22,646	23,470	24,957	26,825
당진시	96,255	98,704	101,460	105,477	109,915
금산군	30,122	30,891	30,969	31,677	32,675
부여군	35,078	35,600	35,845	36,339	36,635
서천군	27,857	28,003	28,156	28,523	28,991
청양군	17,852	17,906	17,996	18,442	18,911
홍성군	53,281	54,452	55,217	55,924	57,154
예산군	43,996	44,577	45,244	47,024	48,883
태안군	34,029	35,058	35,250	36,354	37,066

주: 월별 자료로 공시되며, 해당 표는 연말(12월) 기준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자동차등록현황보고\)](https://kosis.kr(자동차등록현황보고)), 검색일자: 2024. 7. 5.

## 3) 산업 및 경제활동

충청남도 총사업체 수는 2022년 기준 26만 6,577개소이고,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22.73%, 숙박 및 음식점업 15.57%, 건설업 10.09%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 사업체의 총종사자 수는 2022년 기준 109만 2,389명이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28.89%, 도매 및 소매업 11.3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4〉 충청남도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

산업 대분류		사업체		종사자	
		2022년	구성비	2022년	구성비
합계		266,577	100.00	1,092,389	100.00
A	농업, 임업 및 어업	1,636	0.61	8,123	0.74
B	광업	110	0.04	818	0.07
C	제조업	25,584	9.60	315,551	28.89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401	4.65	19,350	1.77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96	0.34	8,042	0.74
F	건설업	26,898	10.09	85,556	7.83
G	도매 및 소매업	60,583	22.73	123,836	11.34
H	운수 및 창고업	24,286	9.11	47,627	4.36
I	숙박 및 음식점업	41,510	15.57	96,378	8.82
J	정보통신업	2,206	0.83	8,550	0.78
K	금융 및 보험업	2,014	0.76	18,905	1.73
L	부동산업	9,647	3.62	19,903	1.8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52	2.23	29,666	2.72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933	2.23	39,397	3.61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47	0.28	40,925	3.75
P	교육 서비스업	9,475	3.55	73,726	6.7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259	2.72	101,754	9.3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108	2.29	15,404	1.4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332	8.75	38,878	3.56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 검색일자: 2024. 7. 5.

사업대상지인 충청남도 논산시의 총사업체 수는 2022년 기준 1만 7,205개소이고,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22.48%, 숙박 및 음식점업 13.0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48%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논산시 사업체의 총종사자 수는 2022년 기준 5만 3,628명이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20.9%, 도매 및 소매업 13.8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1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5〉 논산시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

산업 대분류		사업체		종사자	
		2022년	구성비	2022년	구성비
합계		17,205	100	53,628	100
A	농업, 임업 및 어업	127	0.74	725	1.35
B	광업	2	0.01	4	0.01
C	제조업	1,457	8.47	11,209	20.9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147	12.48	2,235	4.17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5	0.38	626	1.17
F	건설업	1,621	9.42	4,023	7.50
G	도매 및 소매업	3,867	22.48	7,407	13.81
H	운수 및 창고업	1,673	9.72	2,652	4.95
I	숙박 및 음식점업	2,239	13.01	4,574	8.53
J	정보통신업	89	0.52	322	0.60
K	금융 및 보험업	141	0.82	1,187	2.21
L	부동산업	320	1.86	591	1.1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9	1.27	1,000	1.86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90	1.69	790	1.47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	0.27	2,506	4.67
P	교육 서비스업	481	2.80	4,046	7.5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2	2.92	6,515	12.1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9	2.09	793	1.48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59	9.06	2,423	4.52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 검색일자: 2024. 7. 5.

#### 다. 사업대상지 치안 환경 분석

2022년 기준, 전국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148만 2,433건으로 전년도 대비 5만여 건 증가하였다. 최종별로 살펴보면, 지능범죄가 27.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기타범죄를 제외하면 폭력범죄 16.55%, 교통범죄 16.26%, 절도범죄 12.3%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건수가 증가한 것은 지능범죄로 약 6만여 건이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교통범죄로 16만 7천여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전국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죄종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580,751	1,611,906	1,587,866	1,429,826	1,482,433
강력범죄	26,787	26,476	24,332	22,476	24,954
절도범죄	176,809	186,957	179,517	166,409	182,270
폭력범죄	287,611	287,913	265,768	232,661	245,286
지능범죄	344,698	381,533	424,642	361,107	405,105
풍속범죄	20,162	21,153	22,632	23,360	27,113
특별경제범죄	53,994	51,400	47,826	40,708	48,615
마약범죄	6,513	8,038	9,186	8,088	10,331
보건범죄	11,033	12,570	14,595	16,936	17,749
환경범죄	4,791	3,877	3,568	3,656	3,477
교통범죄	408,371	377,354	348,725	308,634	241,029
노동범죄	1,883	975	356	406	714
안보범죄	69	169	216	206	219
선거범죄	1,897	611	829	274	2,969
병역범죄	14,271	12,712	3,845	1,823	4,638
기타범죄	221,862	240,168	241,829	243,082	267,964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범죄·안전\)](https://kosis.kr(범죄·안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검색일자: 2024. 7. 8.

충청남도의 2022년 기준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5만 9,196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3.99%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4,97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죄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지능범죄 28.35%, 교통범죄 21.35%, 폭력범죄 14.94% 순으로 높았다. 2018~2021년까지 총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9.17% 증가하였다.

〈표 II-7〉 충남청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죄종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68,577	62,666	61,612	54,223	59,196
강력범죄	1,098	969	943	909	999
절도범죄	8,573	8,212	7,623	7,139	7,653
폭력범죄	11,882	10,284	9,679	8,552	8,846
지능범죄	14,968	14,473	15,652	12,761	16,780
풍속범죄	748	749	819	757	968
특별경제범죄	1,610	1,634	1,655	1,250	1,702

〈표 11-7〉의 계속

(단위: 건)

죄종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약범죄	288	319	401	308	418
보건범죄	309	337	478	587	538
환경범죄	170	183	168	111	158
교통범죄	19,526	16,529	16,258	14,411	12,636
노동범죄	19	11	14	21	14
안보범죄	2	1	1	12	6
선거범죄	84	49	17	3	104
병역범죄	793	528	207	77	116
기타범죄	8,507	8,388	7,697	7,325	8,258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범죄·안전\)](https://kosis.kr(범죄·안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충남청), 검색일자: 2024. 7. 8.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2022년 기준 1만 7,433건으로 총 범죄 발생 건수의 29.45%를 차지하고 있다. 총 범죄 발생 추세와 같이 2018~2021년까지 5대 범죄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5.61%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산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총 1,073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충청남도 발생 건수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2018~2021년까지 충청남도의 범죄 발생 추이와 같이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검거율은 2018년과 2019년은 충청남도 검거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과 2021년은 충청남도 검거율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8〉 충남청 및 논산서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충남청	발생	21,447	19,379	17,366	16,507	17,433
	검거	15,588	14,349	13,543	12,113	12,749
	검거율	72.7	74	73	73.4	73.1
논산서	발생	1,245	1,198	1,137	1,073	-
	검거	910	970	797	684	-
	검거율	73.1	81.0	70.1	63.7	-

주: 1.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사건을 포함

2. 강간·추행 통계는 형법상 강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 제13조는 제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을 포함시킴

자료: 충청남도 경찰통계, <https://www.cnpolice.go.kr>, 검색일자: 2024. 7. 8.

## 2. 충남 논산경찰서 현황

경찰은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1본부 8국 12관 54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교통국이 민생치안을, 수사기획조정관·수사인권담당관·수사국·형사국·안보수사국이 소속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경비국·치안정보국·범죄예방대응국·국제협력관이 사회질서 유지를, 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미래치안정책국이 행정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부속기관으로는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등 4개의 교육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이 있다. 또한 치안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특별시·광역시·도에 18개 시·도 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시·도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 259개, 지구대 626개, 파출소 1,417개를 운영하고 있다.<sup>13)</sup>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2]를 통해 경찰서별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경찰청 소속인 논산경찰서의 현 관할지역은 ‘논산시’와 ‘계룡시’이다.

### 가. 조직 및 인력 현황(2023년 2월 기준)<sup>14)</sup>

#### 1) 조직 현황

논산경찰서는 서장을 중심으로 경무과, 112 치안종합상황실, 정보안보외사과, 수사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청문감사인권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할지역 내 지구대 및 파출소는 논산지구대, 연무지구대, 강경지구대, 계룡지구대, 연산파출소, 상월파출소, 양촌파출소, 광석파출소<sup>15)</sup>로 총 8개소이다.

13)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 검색일자: 2024. 7. 9.

14)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에 반영된 중간설계안 상의 조직 및 인력 현황(2023년 2월 기준)을 기재

15) 광석파출소는 준 파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경지구대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음. 광석면은 농촌지역으로 치안 수요 등이 적어 파출소를 설치하기는 어려우나 관할 지구대 및 인접 경찰관서와의 원거리 등으로 강력사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치안센터에 경찰 인력을 증원하여 준 파출소 형태의 치안센터로 운영함

〈표 II-9〉 충남 논산경찰서 조직 현황

경찰서			지역 관서	
1	청문감사인권관	청문감사인권·피해자보호·감찰·민원	지구대	1. 논산지구대 2. 연무지구대 3. 강경지구대 4. 계룡지구대
2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		
3	경무과	경무계·경리계·정보화장비계		
4	정보안보외사과	공공안녕정보외사계·안보계		
5	수사과	수사지원팀·경제범죄수사팀·지능범죄수사팀·형사팀	파출소	1. 연산파출소 2. 상월파출소 3. 양촌파출소 4. 광석파출소
6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7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여성청소년수사팀		
8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교통조사팀·교통관리계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표 II-10〉 충남 논산경찰서 지역 관서 운영 현황

	지구대	
	1. 논산지구대 - 은진치안센터	관할인구: 57,000여 명 면적: 72.29km <sup>2</sup>
2. 연무지구대 - 가야곡치안센터 - 채운치안센터	관할인구: 34,000여 명 면적: 201.04km <sup>2</sup>	
3. 강경지구대 - 성동치안센터	관할인구: 34,000여 명 면적: 156.34km <sup>2</sup>	
4. 계룡지구대 - 별곡치안센터	관할인구: 45,000여 명 면적: 185.24km <sup>2</sup>	
파출소		
1. 연산파출소 - 부적치안센터	관할인구: 11,597여 명 면적: 85.73km <sup>2</sup>	
2. 상월파출소 - 노성치안센터	관할인구: 8,616여 명 면적: 80.6km <sup>2</sup>	
3. 양촌파출소	관할인구: 6,731명 면적: 77.14km <sup>2</sup>	
4. 광석파출소	관할인구: 5,000여 명 면적: 34km <sup>2</sup>	

자료: 논산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cnpolice.go.kr>, 검색일자: 2024. 8. 29.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2) 인력 현황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설계면적에 반영된 논산경찰서의 기본 정원은 2023년 2월 기준 본서 137명, 지역관서 134명으로 총 271명이다.

〈표 II-11〉 충남 논산경찰서 조직별 정원 현황

(단위: 명)

본서		지역관서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청문감사인권관	5	논산지구대	46
112치안종합상황실	9	연무지구대	19
경무과	14	강경지구대 (광석파출소 포함 <sup>1)</sup> )	19
정보안보외사과	10		
수사과	44	계룡지구대	21
생활안전과	9	연산파출소	12
여성청소년과	18	상월파출소	9
경비교통과	28	양촌파출소	8
합계	137	합 계	134

주: 광석파출소는 준 파출소로 운영되고 있어, 강경지구대 소속으로 관리됨(강경지구대에 인원 포함)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표 II-12〉 논산경찰서 직위별 정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1) 경찰관								(2) 일반직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본서	137	131	1	5	14	18	44	32	17	6
지역관서	134	134	-	-	8	15	13	35	63	-
계	271	265	1	5	22	33	57	67	8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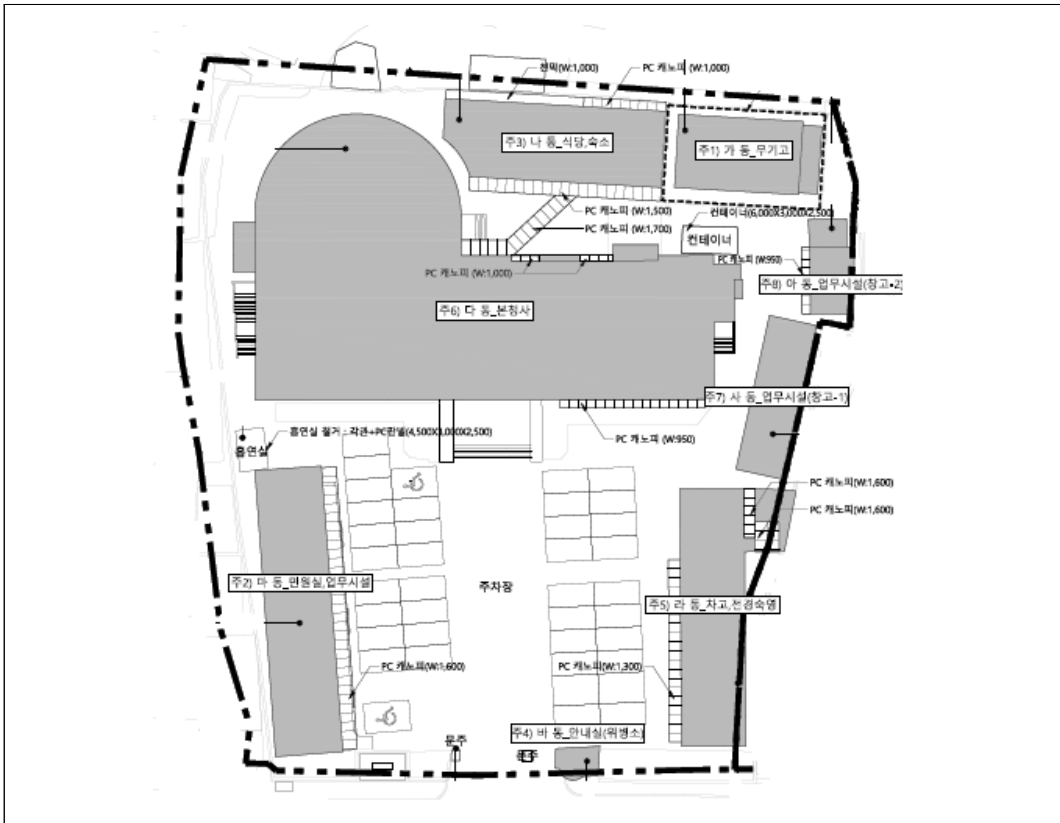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 나. 현청사 현황

### 1) 시설 현황

충남 논산경찰서는 본관, 별관 2개 건물, 그 외 5개 시설물(무기고/탄약고, 식당/숙소, 안내실/위병소, 차고/창고, 직장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2] 현 청사 건물 배치도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실측 기준, 본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총 연면적 3,221.87㎡ 규모이며 우측 별관은 지상 2층의 연면적 458.05㎡ 규모이고 좌측 별관은 단층의 연면적 224.64㎡ 규모이다.

〈표 II-13〉 현 청사 시설 현황

(단위: ㎡)

구분	시설 현황		면적
본관	옥상	문서보관실 등	-
	3층	경비작전계, 수사심사관, 정보통신계, 정보계, 사무실, 정보과장실, 숙직실, 기계실 등	3,221.87
	2층	112치안종합상황실, 진술녹화실, 생활안전계, 경무계, 경리계, 안보계, 서장실, 비서실, 경무과장실, 치안종합상황실장, 생활안전과장실, 유치장, 의무실, 샤워실, 여직원휴게실, 탕비실, 숙직실 등	
	1층	형사1팀, 형사2팀, 경제범죄수사1팀, 수사지원팀,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과장실, 교통조사계, 유치장, 조사실, 면회대기실, 면회실, 변호실, 신체검사실, 휴게실, 샤워실, 쉼터 등	
	지하1층	무도장, 숙직실, 탈의실, 샤워실, 보일러실, 기름탱크실, 변전실 등	
별관(우)	2층	교통관리계, 생활질서계, 물품창고, 독서실 등	
	1층	경제범죄수사2팀,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실, 통합증거물보관실, 샤워실 등	
별관(좌)	1층	민원봉사실, 지능범죄수사팀, 청문감사관실, 민원상담실, 숙직실 등	224.64
기타	1층	무기고/탄약고	112.34
	1~2층	식당/숙소/무기고	300.63
	1층	안내실/위병소	12.06
	1층	차고/창고	78.97
	1층	직장협의회	38.26
<b>연면적 합계</b>			<b>4,446.82</b>

주: 건물 연면적 산출 근거-현장실측을 통해 작성된 도면을 CAD 산출(공용면적 등을 모두 포함)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표 II-14〉 층별·실별 사무실 이용 현황 및 면적

(단위: ㎡)

논산경찰서 사무실별 면적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본관	1층	형사 1팀·2팀	104.00	2층	생활안전과장실	15.92	
		형사 2팀	38.64		의무실	13.20	
		경제범죄수사1팀	60.50	3층	경비작전계	55.57	
		수사지원팀	36.50		수사심사관	51.67	
		여성청소년수사팀	72.75		정보통신계	27.65	
		수사과장실	19.50		정보계	59.62	
		교통조사계	67.92		사무실	45.55	
	서장실	71.50	정보과장실	31.40			
	2층	112치안종합상황실	55.00	1층	경제범죄수사2팀	64.08	
		진술녹화실	21.00		여성청소년과	64.80	
		생활안전계	35.75		여성청소년과장실	30.24	
		경무계	52.65	2층	교통관리계	88.40	
		경리계	52.00		생활질서계	43.92	
		안보계	18.50	1층	청문감사관실	46.36	
		비서실	17.87		지능범죄수사팀	74.16	
		경무과장실	38.67		민원봉사실	78.48	
		치안종합상황실장	14.00		민원상담실	1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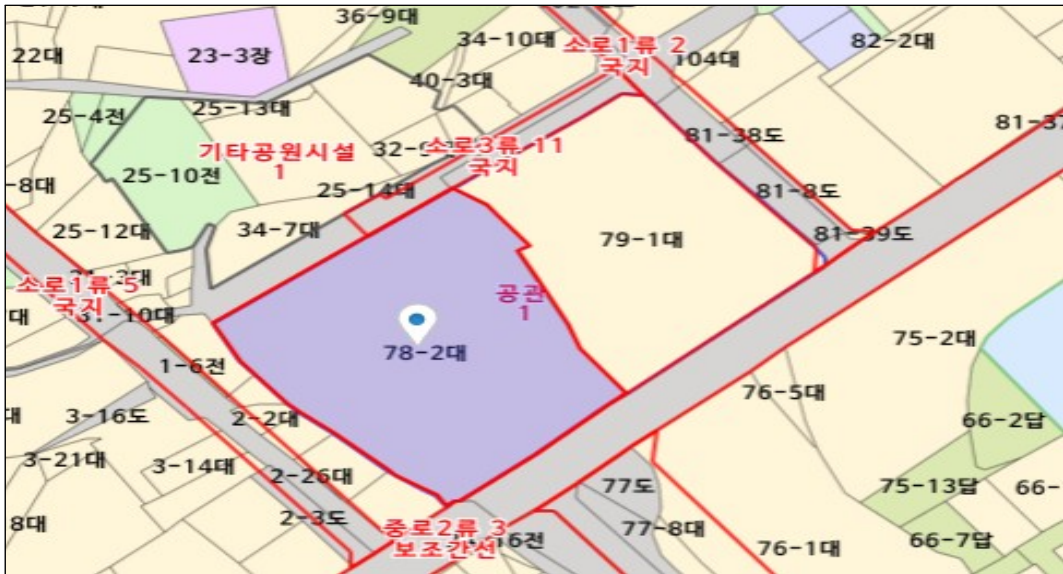
주: 건물 연면적 산출 근거-현장실측을 통해 작성된 도면을 CAD 산출(공용면적 등을 모두 포함)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 2) 부지 주변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 현황 확인 결과, 사업대상지(남교리 78-2, 79-1)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2017-03-20)이며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다. 사업대상지는 북서측 소로 3류(폭 4m), 동남측 중로 2류(폭 15m), 북동측 소로 1류(폭 10m)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남서쪽 인접 대지에는 저층 상가가 위치하고 있다.<sup>16)</sup> 기존 논산경찰서 부지 외에 추가 매입한 남교리 79-1 부지에는 노후 건축물이 있으나 철거 예정이다. 부지 남측으로는 강경읍사무소, 동쪽으로는 강경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주변에는 노후 주거지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다.

[그림 II-3] 사업대상지 도시계획도



자료: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검색일자: 2024. 8. 7.

16)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검색일자: 2024. 8. 7. 참조

## 다. 지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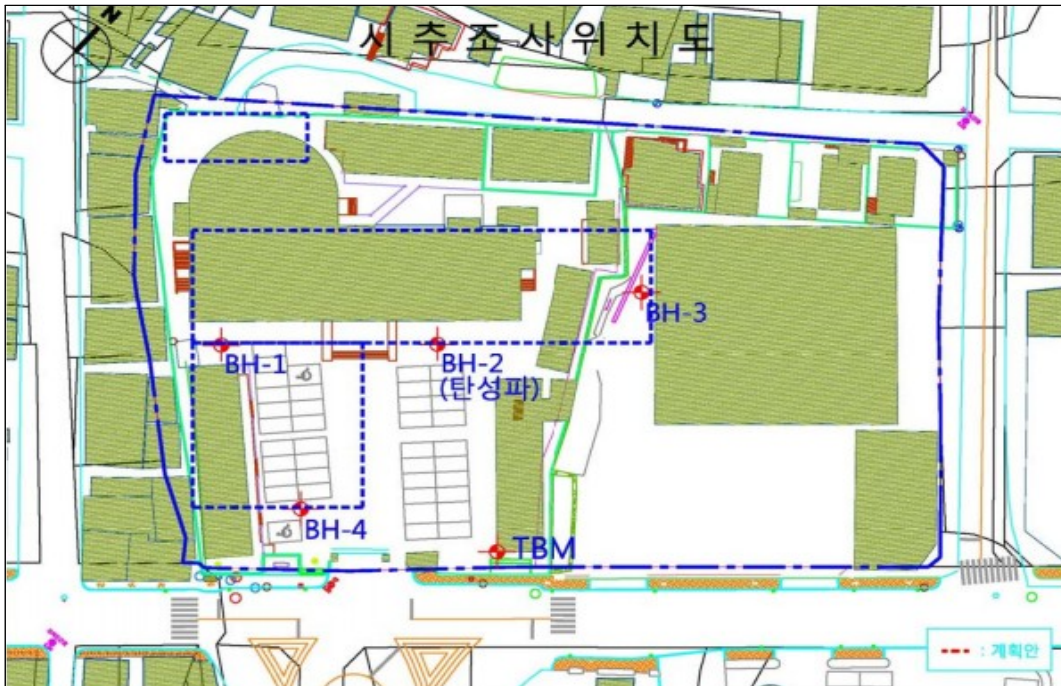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부지의 시추공 4개소 및 현장시험 위치를 선정해 지반의 지층 상태 및 구성성분 등 제반 지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II-15>와 같다.

<표 II-15> 부지 내 시추위치 및 지반고

구분	공번	조사좌표		지반고 (EL. +m)	비고
		X	Y		
1	BH-1	201,451,2120	295,297.1488	+5.60	-
2	BH-2	201,475.8912	295,318.7673	+5.70	Down Hole Test
3	BH-3	201,493.9103	295,345.7449	+5.10	-
4	BH-4	201,478.0783	295,284.6241	+5.65	-
5	TBM	201,505.1188	295,298.8931	+5.60	기준점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그림 II-4] 시추 조사위치도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본 조사 구간의 지층은 지표로부터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II-16〉 지층분포 현황

(단위: m)

공번	지층분포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자갈모래실트 혼합토	실트질 점토	실트질 모래	자갈 섞인 모래	실트질 모래	실트질 모래로 분해
BH-1	0.0~1.0 (1.0m)	1.0~12.5 (11.5m)	12.5~19.5 (7.0m)	19.5~22.7 (3.2m)	22.7~35.0 (12.3m)	35.0~43.0 (8.0m)
BH-2	0.0~1.8 (1.8m)	1.8~13.0 (11.2m)	13.0~19.0 (6.0m)	19.0~22.0 (3.0m)	22.0~30.0 (8.0m)	30.0~50.0 (20.0m)
BH-3	0.0~1.0 (1.0m)	1.0~12.8 (11.8m)	12.8~18.3 (5.5m)	18.3~21.0 (2.7m)	21.0~19.0 (8.0m)	29.0~36.0 (7.0m)
BH-4	0.0~1.1 (1.1m)	1.1~12.5 (11.4m)	12.5~19.5 (7.0m)	19.5~21.5 (2.0m)	21.5~33.0 (11.5m)	33.0~40.0 (7.0m)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지반의 강도가 작을 경우 구조물의 지진응답이 증폭하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구조물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반암의 깊이와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를 기준으로 지반을 S<sub>1</sub>~S<sub>6</sub>, 총 6개의 지반으로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 S<sub>1</sub>에서 S<sub>5</sub>로 갈수록 연약한 지반이며, S<sub>6</sub>은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 응답 해석이 요구되는 지반에 해당한다.

BH-2번 공은 기반암의 깊이가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 응답 해석이 요구되는 지반으로 지반 종류는 S<sub>6</sub>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토목 공사 시 토목 부지 침하 및 시설물 침하를 고려한 공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표 II-17〉 지반등급산정 결과

공번	시험심도(m)	적용심도(m)	설계적용 전단파속도 V <sub>s</sub> (m/sec)	지반등급	분류기준
BH-2	0.0~30.0	0.0~30.0	199.7	S <sub>6</sub>	기반암이 깊이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주: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제정)에 따라 설계지반 등급 구분함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 3. 유사사례 검토

논산경찰서는 연면적 8,346㎡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이므로 유사한 규모의 경찰서 사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최근 2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 연면적 10,000㎡ 이하 규모를 조사한 결과 해당 규모의 경찰서 공사는 총 7건이 있었으나, 이 중 옥천경찰서의 경우 특수설계<sup>17)</sup>를 적용하였기에 유사사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충주경찰서, 양평경찰서, 곡성경찰서, 부산수영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진안경찰서 6개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표 II-18〉 조달청(일반청사 경찰관서) 건축공사 사례 검토(2022~2023년) 종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역	발주연도	대지면적	연면적	총공사비	규모
옥천경찰서	충북	2023	15,360.0	6,561.5	20,358	B1/4F
충주경찰서	충북	2023	13,857.3	8,098.0	21,665	B1/5F
양평경찰서	경기	2022	9,944.0	9,521.0	26,012	B1/5F
곡성경찰서	전남	2022	6,290.0	6,149.1	15,213	B1/4F
부산수영경찰서	부산	2022	8,242.6	9,883.8	24,592	B1/6F
인천해양경찰서	인천	2022	14,089.6	8,520.0	22,399	B1/4F
진안경찰서	전북	2022	13,276.0	6,049.7	14,746	B1/3F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7. 18.

17) 공사비 정보광장의 설계 특이사항에서 대강당 지붕은 경량지붕+철골조를 적용하였으며, 포스트텐션 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됨

### 가. 충주경찰서 청사이전 신축사업

충주경찰서는 충청북도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로 총 5개의 지구대(중앙, 연수, 호암, 서충주, 엄정)와 4개의 파출소(수안보, 중앙탑, 금가, 양성)를 담당 관할하고 있다. 연면적은 8,098.0㎡,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2026년 1월 준공 예정이다.

〈표 II-19〉 유사사례(1) 충주경찰서


구분	내용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발주연월	2023. 1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70일	
건축법상용도	공공업무시설	
면적(㎡)	연면적	8,098.0
	대지면적	13,857.3
	건축면적	1,664.0
총공사비	21,664,942,823원	
높이(m)	기준층 층고	3.9
	최고높이	21.4
외관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5

## 나. 양평경찰서 신축사업

양평경찰서는 연면적 9,521.0㎡,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총공사비 260억원으로 확인된다. 양평경찰서는 1985년 준공되어 35년간 사용되면서 노후화와 공간 협소 등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신축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2019년 현 청사를 철거하고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토지매수와 행정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2024년 준공, 2025년 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 세부 공종 확인 결과, 해체 및 철거공사, 파일공사, 흙막이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20〉 유사사례(2) 양평경찰서

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 양평군	
발주연월	2022. 1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20일	
건축법상용도	공공업무시설	
면적(㎡)	연면적	9,521.0
	대지면적	9,944.0
	건축면적	2,241.6
총공사비	26,011,727,034원	
높이(m)	기준층 층고	4.2
	최고높이	24.0
외관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26.

#### 다. 곡성경찰서 신축사업

곡성경찰서 신청사는 연면적 6,149.1㎡,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공사비 152억원을 투입하여 2025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완공 전까지 현 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이전한 뒤 기존 청사는 철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공사 범위에 해체 및 철거공사가 포함되며 흙막이 공사 또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21〉 유사사례(3) 곡성경찰서

구분	내용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발주연월	2022. 1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70일	
건축법상용도	업무시설	
면적(㎡)	연면적	6,149.1
	대지면적	6,290.0
	건축면적	1,570.5
총공사비	15,212,682,025	
높이(m)	기준층 층고	3.9
	최고높이	19.2
외관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26.

## 라. 부산수영경찰서 신축사업

부산수영경찰서는 연면적 9,883.8㎡, 지하 1층~지상 6층의 규모로 계획되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초기 지반조사 과정에서 부지 지하에 해수 유입이 확인되어 흠막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지 지하의 우수박스 이전이 취소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2025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표 II-22〉 유사사례(4) 부산수영경찰서

구분	내용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주연월	2022. 1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30일	
건축법상용도	업무시설	
면적(㎡)	연면적	9,883.8
	대지면적	8,242.6
	건축면적	1,578.4
총공사비	24,592,047,445원	
높이(m)	기준층 층고	4.0
	최고높이	30.3
외관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5

#### 마. 인천해양경찰서 신축사업

인천해양경찰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산하의 해양경찰서로 국가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해상경비, 해양안전 관리, 해상치안 질서 유지, 해양오염 방지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연면적 8,520.0㎡로 지하 1층~지상 4층의 규모로 확인된다. 공사 세부 공종에는 해체 및 철거공사, 파일공사, 흙막이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표 II-23〉 유사사례(5) 인천해양경찰서

구분	내용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발주연월	2022. 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0일	
건축법상용도	공공업무시설	
면적(㎡)	연면적	8,520.0
	대지면적	14,089.6
	건축면적	3,241.8
총공사비	22,399,453,600원	
높이(m)	기준층 층고	4.2
	최고높이	19.9
외관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5.

## 바. 진안경찰서 신축사업

진안경찰서 현 청사는 1985년 준공되어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노후 건축물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였다. 신축 경찰서는 연면적 6,049.7㎡,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이며 공사 세부 공종에는 해체 및 철거공사, 파일공사, 흙막이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표 II-24〉 유사사례(6) 진안경찰서

구분	내용	
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발주연월	2022.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0일	
건축법상용도	공공업무시설	
면적(㎡)	연면적	6,049.7
	대지면적	13,276.0
	건축면적	1,841.2
총공사비	14,746,207,197원	
높이(m)	기준층 층고	3.8
	최고높이	19.3
외관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5.

## 4.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가. 관련 법률

#### 1) 「국유재산법」

본 사업은 전액 국고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유재산법」 제26조의5에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4. 7. 23.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371호)」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공용재산취득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청이 그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사·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 재원으로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나. 관련 규정

#### 1)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경찰관기동대) 시설면적 기준 개선

의경 폐지 등 변화하는 현장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경찰관서 시설면적 기준이 2020년에 수정 및 조정되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시설면적기준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인원은 순수 지방청·경찰서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대강당, 상무관 등 전체 근무자가 사용하는 시설은 전체 정원(경찰서의 경우 지역관서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조정되었다.

〈표 II-25〉 시설 및 면적 기준 주요 변경 사항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업무시설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명 미만: 350㎡</li> <li>• 200~400명 미만: 400㎡</li> <li>• 400~600명 미만: 450㎡</li> <li>•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7㎡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포함)</li> </ul>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명 미만: 66㎡</li> <li>• 100~200명 미만: 99㎡</li> <li>• 2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3㎡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li> </ul>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명 미만: 50㎡ (20명 이상 기준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관, 과별 설치</li> <li>• 112상황실은 미설치</li> </ul>
	업무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서 최소 기준 33㎡ 일괄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청은 개별 검토</li> <li>• 명칭 변경(도서실→업무자료실)</li> </ul>
	진술녹화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관 10명당 1실</li> <li>• 면적 축소(12㎡→11㎡)</li> </ul>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의자(피해자)×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과 기준 신설(수사, 형사, 여청과, 교통과)</li> <li>• 과별 5명 기준</li> </ul>
	민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명 미만: 120㎡</li> <li>• 100~200명 미만: 160㎡</li> <li>• 200~300명 미만: 220㎡</li> <li>• 300~400명 미만: 280㎡</li> <li>• 4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2㎡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li> <li>• 면적 기준 조정</li> </ul>
	상황실(지령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명 미만: 79㎡</li> <li>• 100~200명 미만: 100㎡</li> <li>• 200~400명 미만: 125㎡</li> <li>• 400~600명 미만: 175㎡</li> <li>• 600명 이상은 1명 증가마다 2.5㎡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li> </ul>
	상무관(체력단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명 미만: 75㎡</li> <li>• 100~200명 미만: 200㎡</li> <li>• 200~400명 미만: 300㎡</li> <li>• 400~600명 미만: 400㎡</li> <li>•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5㎡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포함)</li> </ul>
	사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명 미만(6개 사로): 366㎡</li> <li>• 200~400명 미만(8개 사로): 464㎡</li> <li>• 400~600명 미만(10개 사로): 5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포함)</li> </ul>
	정보화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인원×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지별 기준 추가 (1급서-25명, 2급서-17명, 3급서-10명)</li> </ul>

〈표 II-25〉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편의시설	직원휴게실	• 9.9㎡+(정원-24인)×0.22㎡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여경, 여직원 휴게실	• 1~4인 기준: 15㎡ • 5~8인 기준: 21㎡ • 9~16인 기준: 36㎡ • 17~24인 기준: 54㎡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체육실	• 75㎡+(정원-100)×0.16㎡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관복보관 및 탈의실	• 인원×0.55㎡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목욕실	• 인원×1.5㎡ • 200명 미만: 100㎡ • 200~400명 미만: 150㎡ • 400~600명 미만: 20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2.5㎡ 가산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종교단체	• 1실: 40㎡	• 경목, 경승, 경산실
	협의회	• 1실: 33㎡	• 경우회, 청소년육성회
정보통신	통신장비실	• 40㎡	• 면적 기준 조정 (장비 1조×5㎡→40㎡)
	전산장비실	• 50㎡	• 면적 기준 조정 (전산기 수×5㎡→50㎡)
저장, 보관실	피복창고	• 인원×0.17㎡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포함)
관리시설	정문안내소	• 15㎡	• 면적 기준 조정 (근무자 수×3㎡→15㎡)
	당직실	• 1급서: 160㎡ • 2급서: 120㎡ • 3급서: 80㎡	• 면적 기준 조정 (당직자 수×3㎡→급지별 구분 지정)
	지하주차장	• 차량 수×34.3㎡	• 면적 기준 조정 (차량 수×28㎡→차량 수×34.3㎡)
	청사관리 용역사무실	• 1급서: 18㎡ • 2급서: 12㎡ • 3급서: 10㎡	• 면적 기준 조정 (용역원 수×3㎡→급지별 구분 지정)

자료: 경찰청,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경찰관기동대) 시설면적 기준 개선」, 2020. 2.의 내용을 연구진 재구성

## 2) 경찰관서 설계기준

경찰서 청사의 시설 소요 제기를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업무와 설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시설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은 2021년 12월에 「경찰관서 설계기준」을 발행했다. 2020년 작성된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경찰관기동대) 시설면적 기준 개선」과 큰 차이는 없으나 일부 시설이 통합·신설되었다.

〈표 II-26〉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주요 변경 사항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저장, 보관실	수사 통합증거물보관실	• 1실: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 개별 검토</li> <li>• 영치물 압수보관실, 증거분석 보관실을 통합하여 통합증거물 보관실로 변경</li> </ul>
	수사기록보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권당 99㎡</li> <li>* A4 용지 400박스 분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기록 보관실 경찰서(급지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서 104㎡</li> <li>- 2급서 35㎡</li> <li>- 3급서 12㎡</li> </ul> </li> <li>* 수사자료 송치실 삭제</li> <li>※ 전산조화실, 저장·보관실 항목에서 삭제</li> <li>업무시설인 민원실 면적에 포함</li> </ul>

자료: 경찰청, 「경찰관서 설계기준」 2021. 12.의 내용을 연구진 재구성

## 다. 관련 계획

### 1)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4~2018년)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은 경찰관서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근무인원 증가 및 여성청소년과 신설 등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부족한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시설환경 개선 추진을 위해 경찰청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예산 요구 측면에서도 기존에 일선 관서의 요구를 취합하여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목표제를 도입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상기 계획에 따르면 신축은 건물 안전도, 직제 신설, 면적 협소, 준공 후 30년 이상 등의 관서를 대상으로 하며, 신축 대상 중 면적이 충분한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준공 후 15년 이상 관서 중 청사 노후도,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증축 대상을 선정한다. 경찰청에서 2013년에 수립한 5개년 계획에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23개서와 준공 후

25~30년이 된 29개서를 대상으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10개 경찰서의 신축을 계획하였다. 논산경찰서는 2015년 신축 추진 대상 10개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표 II-27〉 신축과 리모델링(증축 포함) 기준

-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 우선 개선 -

- ▶ 신축은 건물 안전도, 직제 신설, 면적 협소, 30년 이상 등의 관서
- ▶ 리모델링(증축)은
  - 신축대상 중 면적이 충분한 곳은 리모델링 추진
  - 15년 이상 관서 중 청사 노후도, 치안 수요 등 고려하여 선정

자료: 경찰청,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계획(2014~2018년)」, 2013. 1.

동 계획에서는 신·증축 시 적용할 기준면적의 조정(안)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참고인) 대기실과 전산자료실이 신설되었고, 수사(조사)공간도 10㎡로 조정되었다. 이외에도 경찰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강당, 소회의실, 상황실, 상무관(체력단련장) 등의 기준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찰시설 환경개선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5개년 계획이 추가로 수립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신축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계획을 참고하여 안전도, 노후도, 협소도 순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2018~2022년)

논산경찰서 신축사업은 충청남도경찰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충청남도경찰청의 2018~2022년 중기사업계획에는 2개 경찰서 청사시설의 신축사업과 2개 경찰서 청사시설의 증축사업, 3개 지구대·파출소·나도 치안센터 청사시설의 취득사업 등 총 7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충청남도경찰청은 논산경찰서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건물 붕괴 우려 등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시설 면적이 협소하여 사무 공간 및 민원인 주차 공간이 부족함을 이전 신축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당시 계획안의 총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는 16,336백만원으로 책정하였다. 신축 건축물은 2개 동, 총 연면적 8,363㎡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였다.

〈표 II-28〉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 개발 개요(2018~2022년 중기사업계획)

부지취득	신규취득(사용승인)			
취득형태	신축			
지원근거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토지	주소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227-1 외 46필지		
	소유자	면적	용도지역	
	기재부	(25,712)㎡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계획	계획용적률	(100)%	법정용적률	(100)%
	총 ( 2 )개동	지하( 1 )층, 지상( 4 )층		연면적 (8,363)㎡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

### 3)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

논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3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논산시, 2021. 10.)은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변경(2차)」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목표연도를 재조정하고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인구 및 도시지표를 재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한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2021년에 승인되어 공고<sup>18)</sup>하고 있다.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충청남도 도시공간구조 정책변화와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발전 미래상의 재정립과 국내 최대 국방 관련기관의 집적지로서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 생활인프라 취약지역 보완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균형적 도시성장 기반 마련, 시민주도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II-29〉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의 목적

01. 미래상 재정립	〈도시여건변화 대응〉 도시발전 미래상 재정립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제시
02. 국방혁신거점 조성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 국방관련기관 및 연구소, 대학교 등과 연계한 국방혁신의 선도 거점 조성
03. 도시성장기반 마련	〈논산의 균형발전 도모〉 취약지역의 보완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인프라계획 수립
04. 시민주도의 생활권계획	〈시민주도의 생활권발전 비전 구상〉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과제 도출 및 생활권 발전 비전 등 도출

자료: 논산시,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 2021. 10., p. 6.

18) 충청남도 건설정책과-15761호(2021. 10. 19.)

동 계획의 ‘기반시설계획’에서는 경찰서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과 기본방향, 실천전략, 수요추정을 통한 2035년까지의 계획<sup>19)</sup> 등을 포함한다. 논산시는 행정의 능률성과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능의 집적화’ 도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비스 규모가 유사한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등을 가급적 근접 배치하고 수용대상시설은 개별 기능과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공공시설이 상호관련성을 갖도록 배치하고 있다.

또한 시설별 인구 수준을 근거로 도시 현황과 관련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여 공공시설의 적정 단위 기준을 설정하고, 공공시설의 양적인 확충 및 기존 시설의 질적인 정비·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파출소의 경우,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에 의거하여 인구 15,000~30,000인당 1개소, 규모는 600~700㎡를 시설계획 기준으로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수요추정에 의해 논산시 내 8개소의 지구대·파출소를 두는 것을 계획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표 II-30〉 기타 기반시설계획 기본방향

- 
- 공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 시설별 인구 수준을 근거로 도시 현황과 관련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 단위 기준 설정
    - 공공시설의 양적인 확충 및 기존 시설의 질적인 정비·확충 도모
  - 형평성을 고려한 공공시설 입지
    - 공공시설 입지를 위해 주민의 욕구 충족,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제고한 공공시설 입지 도모
  - 이용 편의성의 증대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과의 연계 도모
  - COVID-19 등 세계적인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대응 전략 마련
- 

자료: 논산시,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 2021. 10., p. 274.

〈표 II-31〉 기타 기반시설계획 실천전략

- 
- 1) 공공시설 조성 시 서비스 수준 조사
    -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의 이용패턴 및 공공시설의 서비스 영역을 파악하여 공공시설 서비스 지도로 활용
  - 2) 장래 도시개발 및 인구성장을 고려한 시설 배치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조성사업, 정비사업 등 인구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장래 수요 예측을 통한 시설배치계획 수립
  - 3) 공공서비스 기능의 집적화
    - 행정의 능률성과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비스 규모가 유사한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등을 가급적 근접 배치
    - 수용대상시설은 개별 기능과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공공시설이 상호관련성을 갖도록 배치
- 

19) 2017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하여 수요를 추정

- 
- 4) 기존 공공시설의 질적 향상 도모
    - 기존 공공시설의 증·개축, 이전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사회적,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 및 지역 주민 모두가 평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 5) 스마트 건강주구 기반의 건강도시 확대
    -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근린주구와 차별화된 스마트 건강주구(누구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공간 단위)를 기반으로 건강도시 확대
    -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지원 확대 및 지역별 의료정보센터 설치, 비상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 및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한 스마트 의료 및 돌봄인프라 확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자료: 논산시,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 2021. 10., p. 274.

## 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 가. 사업계획 적절성의 쟁점

#### 1) 사업목적의 적절성

충청남도경찰청은 노후 및 협소한 청사의 신축을 통한 소속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로 국가기관 이미지 제고와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현장 답사 및 요구안의 시설계획 검토를 통해 본 사업의 목적이 적절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 2) 사업부지의 적합성

본 사업은 당초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논산시 부적면에 신축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기존 논산경찰서가 위치한 강경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논산경찰서 현 부지 및 인접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부지의 입지 및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3) 시설 규모의 적절성

##### 가) 시설의 기준인원 설정

정원은 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므로 세부시설 규모 검토에 앞서 기준 인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재검토에 앞서 진행된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는 2023년 2월 정원을 기준으로 시설 규모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2024년 1월 경찰청 주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논산경찰서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진행 중인 논산경찰서 관할 지역 내 계룡경찰서 신축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논산경찰서 정원에도 변경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재검토에서는 질의회신을 통해 논산경찰서의 현재 정원 과 계룡경찰서 신설 이후 정원 변경 계획 유무를 확인하여 시설 규모 검토의 적절성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충남경찰청은 현재 부여경찰서에 있는 광역과학수사 7팀을 신축하는 논산경찰서에 배치하고자 본 사업 설계에 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 나) 시설 규모의 적절성 검토

현행안의 시설 규모는 8,362㎡로 계획되었으나 요구안은 중간설계 및 조달청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8,346㎡로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본 재검토에서는 형집행시설로서 경찰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관서 설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정부청사관리규정」의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본 사업은 지하주차장 없이 전체 지상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현 사업대상지 내 건축면적, 조경면적, 공개공지 등 법정 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가능한 주차 대수를 검토함으로써 계획한 주차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나. 비용 추정의 쟁점

#### 1) 기본공사비 단가 산정기준 설정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에서는 당초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재검토에서는 중간설계내역서의 공사비 단가와 함께 조달청에서 최근 발주한 유사사례의 공사비 단가를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공사비 단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기본공사비 단가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유사한 경찰서 사례를 선정하여 공사비를 조사

하고 한국은행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본 재검토의 기준연도에 맞춰 금액을 보정해 산정하고자 한다. 본 사업의 경우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반 개량 및 보강 등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비를 기본공사비와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사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현장여건 관련 공사비는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해 기본공사비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장여건 관련 공사비로는 연약지반 개량 공사, 흙막이 공사, 철거 공사, 파일 기초 공사 비용 등이 있다.

## 2) 공사비 산정 관련 쟁점

본 사업 대상지 특성과 관련하여 공사비 검토 시 고려할 사항이 있다.

먼저 사업대상지에는 기존 노후 청사가 있고, 추가로 매입한 인접 부지에도 노후 건축물이 있다. 본 공사 착공을 위해 먼저 현 청사 및 인접 부지의 노후 건축물 철거가 필요하므로 해당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반조사 결과 사업 대상지는 연약지반 S<sub>6</sub> 등급에 해당한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설 흙막이 공법과 연약지반의 침하방지 및 보강을 위해 지반개량 및 파일기초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 지하구조물 철거 시 인접한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지하구조물은 존치하여 흙막이로 활용할 계획이다. 요구안에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증가한 토목공사 비용을 현장여건공사비로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구안에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추가 공사비로 제시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의 경우 유사사례의 기본공사비에 포함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검토하고자 한다.

## 3) 보상비

요구안에 따르면 본 사업 대상지의 매입이 완료되었다. 본 재검토에서는 주무부처 제출 자료를 통해 용지 매입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집행된 비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 4) 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경비로 구분하여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

획안 작성지침」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자 한다. 다만 본 사업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시설부대경비의 일부가 집행되었으므로 해당 내역을 같이 검토하였다.

## 5) 예비비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의 예비비 반영 기준에 의거하여 예비비를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 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 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먼저 본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통해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정과제,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 「국유재산 기금 중기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무부처 사업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중 기반시설계획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사업대상지 관련 도시관리 계획 현황과 사업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부지활용 및 시설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찰청에서 자체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에 부합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 관리체계 등 사업의 준비 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기본설계 완료 단계이므로 향후 인허가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착공 후 연약지반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먼저 그간의 사업추진경위와 사업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업추진 주체인 충남경찰청의 사업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사업대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논산시의 사업 관련 여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진행상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무부처의 제출자료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입지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주민의 의견 및 공사 기간 중 주변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한 검토가 요구된다.

## 6.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본 재검토에서는 요구안, 검토안, 대안으로 구분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요구안은 사업 수행주체가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제출한 계획안이며, 검토안은 요구안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공사비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재추정한 안이다. 대안은 주무부처를 통해 구득한 최신 정원인 2024년 4월 정원을 기준으로 「경찰관서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시설 규모를 조정하고 적정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재추정한 안이다.

〈표 II-32〉 대안의 설정

구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검토안	대안
규모	요구면적	요구안의 규모를 준용하되, 적용 오류 사항 검토	시설규모를 검토하여 대안규모 산정
비용	요구사업비	요구안 규모에 대해 적정 공사비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재추정	대안 규모에 대해 적정 공사비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재추정

자료: 연구진 작성

###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사업계획 적절성 재검토는 사업 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의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행한다. 적정 사업 규모, 총사업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의 적절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므로 본 절에서는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의 사업목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가. 건립목적과 기능의 부합성

충남 논산경찰서는 노후 및 협소한 청사의 신축을 통해 소속 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논산경찰서 현 청사는 1981년 준공하여 43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자체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사업수행 주체인 충청남도경찰청은 계획한 신축 규모에 대한 논산경찰서 현 청사 규모의 비율 48%를 기준으로 협소함을 제기하고 있다.

〈표 Ⅲ-1〉 현 논산경찰서 청사 현황

건축년도 (경과년수)	부지면적 (소유자)	건물연면적 (소유자)	정원 (현원)	협소도 (기준면적)	특이사항
1981년 (43년 경과)	4,975㎡ (경찰청)	4,093㎡ (경찰청)	145명 (155명)	48% (8,362㎡)	정밀안전진단 D등급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6조는 공용재산취득계획에 대해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고 기타 협소와 노후화 등의 사유를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시행 2024. 6. 13.] [기획재정부지침 제699호, 2024. 6. 13., 일부개정]

**제16조(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①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1. 사무용·사업용 공용재산

가. 안전도(기본조사 용역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진단 결과 등의 권고내용 감안, 안전등급 D(미흡) 이하는 신축으로 우선 고려, 안전등급 B(양호)~C(보통)은 리모델링으로 우선 고려)

나. 기타사유

(3) **협소**: 신축의 경우 당해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단위건물내의 순 사무실 면적/단위건물 내에 부여된 정원)이 기준면적(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준용) 보다 60% 이하인 경우, 리모델링의 경우 당해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이 기준면적 보다 70% 이상인 경우

(5) **노후화**: 신·증축의 경우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된 청사,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된 청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4. 12. 18.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안전진단결과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이 신축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부처 자체적으로 수행한 안전진단 결과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sup>20)</sup> 현 청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진단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sup>21)</sup>되며, 자체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으로 진단받았다.

기타 사유 중 협소의 경우 주무부처에서는 협소도를 48%로 제시하였으나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의하면 협소 사유는 당해 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단위건물 내의 순 사무실 면적/단위건물 내에 부여된 정원)이 기준면적(요구안)의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지침에 따른 협소도를 재산정하기 위해 1인당 사무실 면적을 산정한 결과, 논산경찰서 현 청사 1인당 사무실 면적은 10.2㎡, 요구안의 기준면적은 11.6㎡로,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 협소 비율은 88%로 기준면적에는 미달하지만 기금운용계획안 반영을 위한 신축 대상에는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2. 13.)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모든 재건축 대상인 청·관사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의 신규사업 선정 근거로 활용을 목표로 함

21)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에서 확인함

〈표 Ⅲ-2〉 1인당 사무실 면적 산정

(단위: ㎡, 명, ㎡/명)

구분	순사무실 면적	정원	1인당 사무실 면적
당해건물(현 논산경찰서)	1,400.1	137	10.2
기준면적(요구안)	1,587.1	137	11.6

주: 정원은 2023년 2월 분서 정원을 기준으로 함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표 Ⅲ-3〉 협소도 산정

(단위: ㎡/명, ㎡/명, %)

구분	당해건물(현 논산경찰서)	기준면적(요구안)	협소도
협소도	10.2	11.6	88

자료: 연구진 작성

다만 경찰서 근무인원과 방문 민원인 규모를 고려할 때 주차공간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일평균 경찰서 방문 민원인은 59명인 것에 비해 민원인 주차 공간은 13대<sup>22)</sup>로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민원인 차량 외에 경찰업무 차량, 긴급출동을 위한 공영차량을 위한 주차공간도 부족하여 논산경찰서 내 주차공간이 혼잡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표 Ⅲ-4〉 일 평균 민원인 수

(단위: 명, 일)

구분	방문목적						총 민원수	평일 일수	하루 평균 민원인 수
	청문	수사	형사	경우	교통	기타			
	헤어진 가족 찾기 등	고소·고발 등	성범죄 경력 등	정보 공개 등	범법, 과태료 등	집회, 유실물 등			
23년 1월	데이터 없음								
2월	데이터 없음								
3월	8	256	41	49	1,504	18	1,876	22	86
4월	3	151	13	33	1,294	15	1,509	20	76
5월	9	169	8	31	892	5	1,114	21	54
6월	0	155	4	31	766	0	956	21	46

22)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2024. 6. 28.), '본 사업 추진 경위 및 근거'에서 확인

〈표 Ⅲ-4〉의 계속

구분	방문목적						총 민원수	평일 일수	하루 평균 민원인 수
	청문	수사	형사	경우	교통	기타			
	헤어진 가족 찾기 등	고소·고발 등	성범죄 경력 등	정보 공개 등	범법, 과태료 등	집회, 유실물 등			
7월	3	151	11	25	726	7	923	21	44
8월	데이터 없음								
9월	0	167	26	40	741	0	974	19	52
10월	0	148	12	44	703	5	912	19	48
11월	3	152	17	47	976	6	1,201	22	55
12월	0	105	9	15	1,228	5	1,365	20	69
24년 1월	0	126	9	11	968	0	1,114	22	51
총 하루 평균 민원인 수									59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그림 Ⅲ-1] 주차공간 현황



자료: 연구진 작성

내부 공간의 경우 협소한 복도 및 사무공간으로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유치장, 설비실 등 다른 기능의 시설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어 각각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 수용 공간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그림 Ⅲ-2] 건물 내부 협소 현황



자료: 연구진 작성

노후화의 경우, 현 청사는 1981년 준공 이후 43년이 경과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지침」의 노후화 기준(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된 청사)에 부합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논산경찰서 현 청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천 시 옥상과 벽면 균열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일부 사무실에 누전 및 단전이 발생하는 등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건물 외부 균열이 가속화되면서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또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5〉 누수 및 벽체 균열 등 개보수 비용 현황

(단위: 원)

구분	소계	공사비	시설장비유지비
2019년	147,765,819	52,470,170	95,295,649
2020년	198,932,060	82,797,610	116,134,450
2021년	187,990,239	84,090,460	103,899,779
2022년	114,732,910	42,392,770	72,340,140
2023년	124,391,894	22,034,000	103,357,894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4차 제출자료」, 2024. 9.

[그림 Ⅲ-3] 청사 노후 현황



자료: 연구진 작성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의 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안전도와 협소는 기준에 미달하고 노후도의 경우만 신축 대상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진의 현장답사 및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 결과, 건물 내외부 균열 및 누수, 부족한 주차 공간, 협소한 사무공간과 민원 공간 등 현 청사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후한 청사의 시설환경 개선으로 업무 효율 향상, 민원인 편의 증대, 치안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되므로 본 사업은 정책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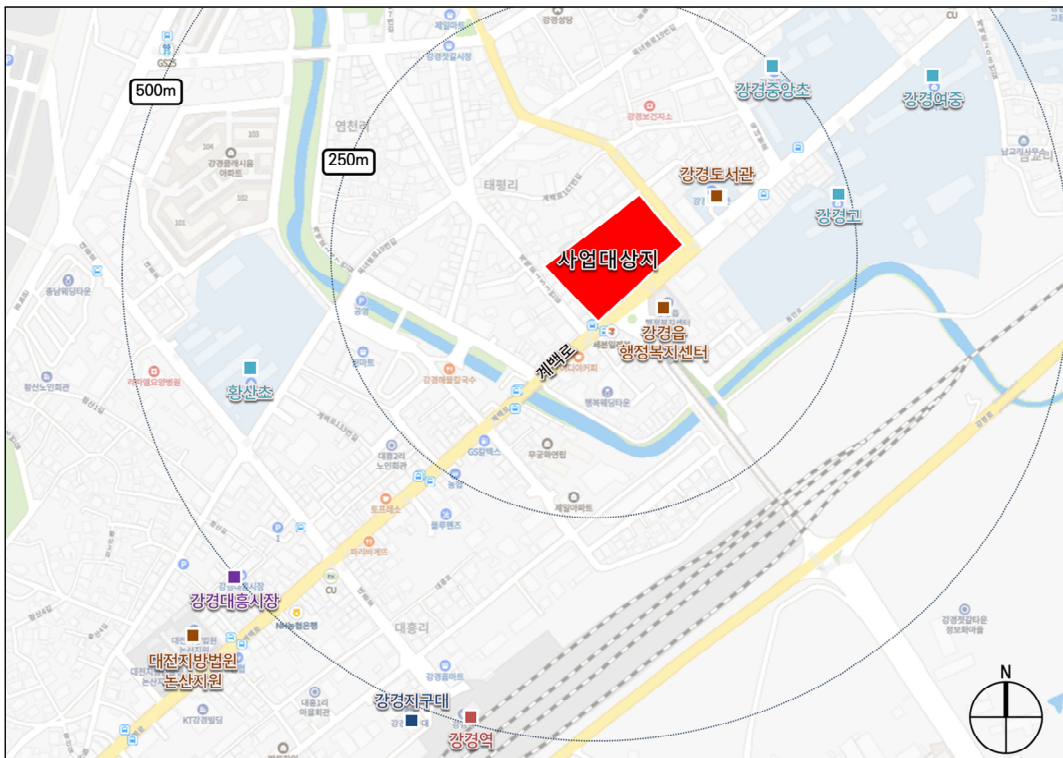
## 2. 사업부지의 적정성 검토

### 가. 부지 위치의 적정성 검토

논산경찰서는 강경읍 남교리 78-2번지 일원에 있으며, 사업부지 동측과 남측에 접해 있는 지방도 799호선인 계백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대상지 남측으로는 강경읍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은 강경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 서측은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하고 있다. 또한 대상지로부터 반경 500m 부근에 논산경찰서 관할인 강경지구대와 호남선 철도역인 강경역, 강경대흥시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위치해 있어, 사업 부지는 행정시설과 교육·문화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치안에 중요한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III-4] 논산경찰서 입지 여건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부지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23. 9.) 제91조에 따라 건축사업 부지의 규모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또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본 사업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 부지의 용도 및 규모제한에 부합하는 적법한 계획을 담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사업부지의 행위제한 사항과 관계된 주요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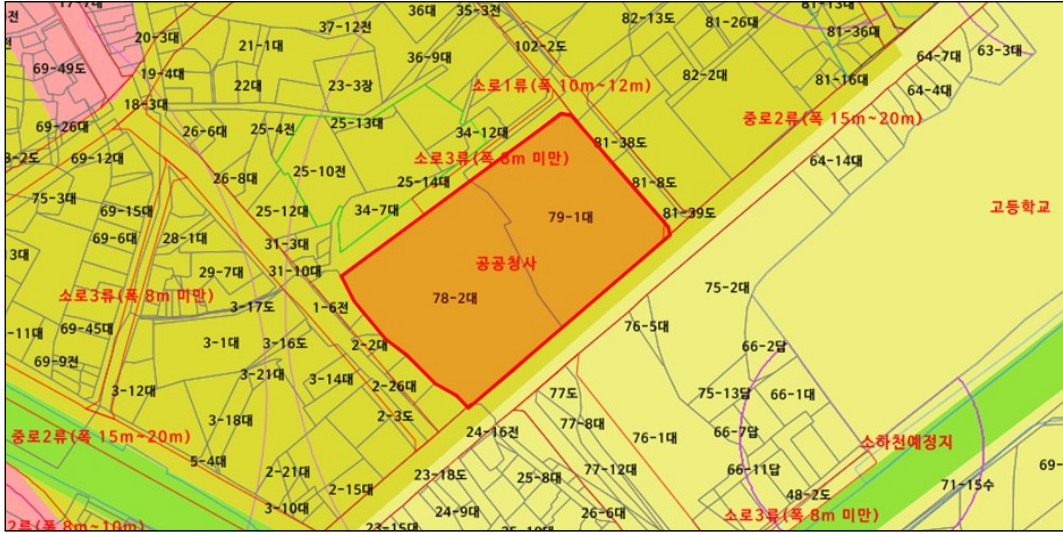
논산경찰서의 부지면적은 8,935㎡로, 지역지구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용지에 해당하며,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청사 신축에 제한은 없다. 요구안은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법정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범위 로 적법하게 계획되었으며 조경 면적과 공개공지 또한 법정 면적 이상으로 계획되었다.

〈표 Ⅲ-6〉 요구안의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업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8-2외 1필지	-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
사업기간	2018~2027년	-
건축규모	지상 5층, 지하 1층	-
대지면적	8,935㎡	-
연면적	8,346.08㎡	-
건폐율	24.71%	법정: 60%
용적률	74.07%	법정: 250%
건물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주차계획	136대	확장형: 49대, 일반형: 78대, 경형 03대, 장애인: 05대, 버스 01대
조경면적	2,023.01㎡	법정: 대지면적의 15% 이상 → 1,336.80㎡ 이상
공개공지	557.85㎡	법정: 대지면적의 6% 이상 → 534.72㎡ 이상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그림 III-5]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https://www.eum.go.kr>, 검색일자: 2024. 8. 6.

법적인 기준 외에 논산경찰서와 유사한 규모의 6개 경찰서 사례를 통해 부지면적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비교 검토해 보았다. <표 III-7>과 같이 유사사례와 대지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등의 지표를 비교한 결과, 논산경찰서의 지표는 사례의 범위 내에 있어 부지면적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II-7> 유사사례의 부지면적 검토

(단위: m<sup>2</sup>, %)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충주경찰서	13,857.3	1,664.0	8,098.0	12.01	49.58
양평경찰서	9,944.0	2,241.6	9,521.0	22.54	78.61
곡성경찰서	6,290.0	1,570.5	6,149.1	24.97	79.98
부산수영경찰서	8,242.6	1,578.4	9,883.8	19.15	86.75
인천해양경찰서	14,089.6	3,241.8	8,520.0	23.01	53.73
진안경찰서	13,276.0	1,841.2	6,049.7	13.87	45.56
평균	10,949.9	2,022.9	8,036.9	19.26	65.70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28.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Ⅲ-8〉 부지면적의 적절성 검토

(단위: ㎡, %)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유사사례 평균	10,949.9	2,022.9	8,036.9	19.26	65.70
요구안	8,935.0	2,207.4	8,346.1	24.71	74.07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8. 28.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3.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 가. 요구안의 시설규모

요구안의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8,346.08㎡이며, 업무시설 중 순사무실의 비율은 37%, 순사무실 외의 비율은 63%이며, 전체 연면적 중 공용면적은 30%를 차지한다. 세부 시설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Ⅲ-9〉 요구안의 세부 시설구성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실명	요구안
업무시설	순사무실	1. 서장실	88.44
		2. 과장실	194.23
		3. 행정부서	516.16
		4. 수사부서	612.34
		5. 광역 7팀	76.07
		소계(순사무실)	1,487.24
	순사무실 외	1. 상황실	127.00
		2. 대강당	310.85
		3. 소회의실	205.43
		4. 대회의실	104.13
		5. 유치장	538.10
		6. 진술녹화실	46.27
		7. 모니터실	35.67
		8. 민원실	205.37
		9.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87.75
		10. 상담실	12.06

〈표 Ⅲ-9〉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별	시설명	실명	요구안
업무시설	순사무실 외	11. 상무관	288.12
		12. 실내사격장	467.87
		13. 정보화교육장	51.03
		소계(순사무실 외)	2,479.65
	소계(업무시설)		3,966.89
부대시설	1. 식당		110.50
	2. 주방		48.28
	3. 창고		43.06
	4. 조리원휴게실		15.91
	5. 영양사실		7.12
	소계(부대시설)		224.87
저장보관시설	1. 창고(문서, 비품, 소모품)		136.55
	2. 피복창고		46.50
	3. 수사		106.35
	4. 경무		128.94
	5. 생활안전		85.31
	6. 정보		79.05
	7. 경비, 장비창고		148.13
	8. 무기고		94.50
	9. 탄약고		49.77
	10. 증거물감정실		25.62
	11. 전처리실		25.89
	소계(저장보관시설)		926.61
관리시설	1. 경비실		6.00
	2. 민원안내		9.72
	3. 당직실		21.60
	4. 호송차고		55.55
	5. 공익근무원실		21.42
	7. 청사관리 용역사무실		25.63
	소계(관리시설)		139.92
편의시설	1. 휴게실		79.94
	2. 샤워실		76.14

〈표 Ⅲ-9〉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별	실명	요구안
편의시설	3. 체육실	83.00
	4. 종교시설	127.00
	5. 협의회실	40.54
	6. 수유실	11.86
	소계(편의시설)	418.48
정보통신시설	1. 보안실	34.49
	2. 통신·전산장비실	54.34
	3. 전산자료실	50.08
	소계(정보통신실)	138.91
① 전용면적 합계		5,815.68
설비관련실	1. 기계실	249.53
	2. 전기실	104.05
	3. 발전기실	37.83
	4. 중앙감시실	28.90
1. 계단, EV홀, 복도, 화장실 로비 등		2,110.09
② 공용면적 합계		2,530.40
<b>합계(①+②)</b>		<b>8,346.08</b>

자료: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23.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나. 시설규모 검토 기준

경찰서는 형 집행시설로서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청사 수급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경찰관서 설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재검토에서는 논산경찰서의 적정 시설 규모 산정을 위해 경찰청 재정담당관실에서 배포한 「경찰관서 설계기준」의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sup>23)</sup>과 경찰청예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근거하여 세부시설 규모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청사 수급 및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공용재산으로서 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증 및 보안을 위해 「202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행정안전부, 2024. 1.)의 청사 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을 같이 활용하고자 한다.

23)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 제1편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중 제2장 면적산출 기준

### 1)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경찰관서 설계기준」의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관리 용도 내 기계실의 경우 본 기준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경찰관 기동대 및 경찰특공대 면적 산정 시 「경찰시설기준(설비공학 편람)」을 적용하므로, 본 재검토에서도 기계실 면적 산정 시 「경찰시설기준(설비공학 편람)」을 적용하여 규모를 검토하였다.

〈표 Ⅲ-10〉 경찰관서 청사 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단위: ㎡)

계급별	구분	면적	비고
치안총감	청장실	165	집무실·부속실
치안정감(치안감)	청의 차장실	105	집무실·부속실
	시도청장실	120	집무실·부속실
	기관장실	105	집무실·부속실
치안감	국장실	85	집무실·부속실
	시도청의 차장실	85	집무실·부속실
경무관	기관장실	82	집무실·부속실
	국장실, 관리관실	82	집무실·부속실
	시도청의 차장·부장실	82	집무실·부속실
총경	경찰서장실	80	집무실·부속실
	특수기관장실	66	집무실·부속실
	과장실	44	집무실
경정	특수기관장실	30	집무실
	과장실	30	집무실
경감	지구대장·파출소장실	20	집무실
	특수기관장실	20	집무실
	일반직원	7	집무면적
경위급이하	파출소장실	20	집무면적
	일반직원	7	집무면적

주: 경찰업무의 특수성 고려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을 준용  
 자료: 경찰청, 「경찰관서 설계기준」, 2021. 12., p. 40

〈표 III-11〉 경찰서 각 실면적 세부산출내역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업무시설 (회의실)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명 미만: 350㎡</li> <li>• 200~400명 미만: 400㎡</li> <li>• 400~600명 미만: 450㎡</li> <li>•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7㎡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시설 표준화기준</li> <li>• 지방청, 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li> <li>※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li> </ul>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100명 미만: 66㎡</li> <li>• 100~200명 미만: 99㎡</li> <li>• 2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3㎡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시설기준(법무부)</li> <li>• 지방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li> <li>※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li> </ul>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명 미만: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시설 표준화기준</li> <li>• 국, 관, 과별 설치</li> <li>※ 112상황실은 미설치</li> </ul>
	업무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고: 장서수/200</li> <li>• 열람실: 서고×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 개별검토</li> <li>• 경찰서 최소 기준 33㎡(10평) 일괄 적용</li> </ul>
업무시설 (수사, 형사, 생활안전, 여청, 외사, 교통, 경무, 청문감사, 정보, 보안, 경비)	행정, 관리업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자수×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업무 근무자 적용</li> </ul>
	수사, 조사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자 수×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조사부서 근무자 적용</li> <li>※ 순수 수사업무 담당자만 해당, 수사지원팀 등 행정업무 수행 근무자는 7㎡ 적용</li> </ul>
	과학수사(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자 수×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수사팀 근무자 적용</li> <li>※ 광역과학수사팀 운영, 경찰서만 적용</li> </ul>
	진술녹화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녹화조사실 설치기준</li> <li>※ 경찰청 내부 지침(2015년)</li> <li>• 수사관 10명당 1실</li> <li>※ 수사, 형사, 여청수사, 교통수사, 청문 근무자 해당</li> </ul>
	진술녹화모니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녹화조사실 설치기준</li> <li>※ 경찰청 내부 지침(2015년)</li> <li>• 수사관 10명당 1실</li> </ul>
	거짓말탐지검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만 해당</li> </ul>
	거짓말탐지관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만 해당</li> </ul>
	사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부서 근무 인원에 편입</li> </ul>
	디지털증거분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관수×1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만 해당</li> <li>※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실 표준설계 지침(2018)</li> </ul>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의자(피해자)×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청 수사인력에 따라 검토</li> <li>• 경찰서 수사(경제·지능), 형사(강력·당직), 여청과, 교통과 등 6개 부서</li> <li>※ 수사, 형사과는 업무특성상 별도 구분 필요</li> </ul>

〈표 III-11〉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업무시설 (청문감사)	민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명 미만: 120㎡</li> <li>• 100~200명 미만: 160㎡</li> <li>• 200~300명 미만: 220㎡</li> <li>• 300~400명 미만: 280㎡</li> <li>• 4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2㎡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li> <li>※ 통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종합전산조회실, 수사상담센터, 인권상담센터, 다목적상담 부수 면적 민원실에 추가</li> </ul>
업무시설 (유치장)	일반유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평균수용인원 8명 이하.</li> <li>최다수용인원 12명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인원 고려 개별 검토·적용</li> <li>※ 경찰청 '유치장 관리부서 이관 시범운영 확대 및 인력재배치 계획'에 의거 현재 일시 사용치 않는 유치장은 일반유치장 적용</li> </ul>
	광역유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평균수용인원 16명 이하.</li> <li>최다수용인원 27명 이하</li> </ul>	
	초광역유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평균수용인원 28명 이하.</li> <li>최다수용인원 43명 이하</li> </ul>	
업무시설 (경비)	상황실(지령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명 미만 79㎡</li> <li>• 100~200명 미만 100㎡</li> <li>• 200~400명 미만 125㎡</li> <li>• 400~600명 미만 175㎡</li> <li>• 600명 이상은 1명 증가마다 2.5㎡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li> <li>※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li> </ul>
업무시설 (생활안전)	112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실: 3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만 해당</li> </ul>
업무시설 (경무)	상무관 (체력단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명 미만 75㎡</li> <li>• 100~200명 미만 200㎡</li> <li>• 200~400명 미만 300㎡</li> <li>• 400~600명 미만 400㎡</li> <li>•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5㎡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li> <li>※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li> </ul>
	사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명 미만(6개사로): 366㎡</li> <li>• 200~400명 미만(8개사로): 464㎡</li> <li>• 400~600명 미만(10개사로): 5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li> <li>※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li> </ul>
	정보화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인원×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 개별 검토</li> <li>•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급서 교육인원 25명</li> <li>2급서 교육인원 17명</li> <li>3급서 교육인원 10명</li> </ul> </li> </ul>
편의시설	직원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정원-24인)×0.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li> <li>※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li> </ul>
	여경, 여직원 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인 기준 15㎡</li> <li>• 5~8인 기준 21㎡</li> <li>• 9~16인 기준 36㎡</li> <li>• 17~24인 기준 5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여) 적용</li> <li>※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li> </ul>
	체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정원-100)×0.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li> <li>※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li> </ul>

〈표 III-11〉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편의시설	관복보관 및 탈의실	• 직원 수×0.55㎡	•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목욕실(남, 여)	• 인원×1.5㎡ • 200명 미만 100㎡ • 200~400명 미만 150㎡ • 400~600명 미만 20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2.5㎡ 가산	•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종교단체	• 1실: 40㎡	• 시도청 개별검토 • 경찰서 공통적용(급지구분 없음) ※ 종교단체: 경목, 경승, 경신실(3개소)
	협의회	• 1실: 33㎡	• 시도청 개별검토 • 경찰서 공통적용(급지구분 없음) ※ 협의회: 경우회, 청소년육성회(2개소)
정보통신	통신장비실	• 장비 1조×5㎡	• 시도청 개별검토 • 경찰서 공통적용 (급지구분없이 40㎡ 적용)
	전산장비실	• 전산기 수×5㎡	• 시도청 개별검토 • 경찰서 공통적용 (급지 구분없이 50㎡ 적용)
	전산실 및 전산자료실	• 전산기 수×5㎡	• 시도청 적용
	교환실	• 미적용	• 미운영 시설로 제외
	보안실	• 1실: 33㎡	• 시도청 개별검토 • 경찰서 공통적용(1실 33㎡)
저장, 보관실	문서고	• 순사무실 면적×7%	• 청사시설 기준(행안부)
	비품창고	• 순사무실 면적×7%	-
	소모품창고	• 순사무실 면적×7%	-
	피복창고	• 직원 수×0.17㎡	• 시도청·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
	수사	통합증거물 보관실	• 1실: 103㎡
수사기록 보관실		• 1만권당 99㎡	• 수사기록 보관실 경찰서(급지별 구분) - 1급서 104㎡ - 2급서 35㎡ - 3급서 12㎡ • 수사자료 송치실 삭제 ※ 전산조회실, 저장·보관실 항목에서 삭제 업무시설인 민원실 면적에 포함

〈표 III-11〉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저장, 보관실	경무	문서 보관실	• 1실: 28㎡	-	
		지출서류 보관실	• 1실: 32㎡	-	
		물품 보관실	• 1실: 60㎡	-	
	생활 안전	즉결유실물 보관실	• 1실: 15㎡	• 시도청, 경찰서 평균	
		압수물 보관실	• 1실: 52㎡		
		자료 및 장비보관실	• 1실: 60㎡		
	정보	정보기록 보관실	• 1실: 74㎡	• 시도청, 경찰서 평균	
	경비	장비 및 물품보관실	• 1실: 145㎡	• 피복보관실 포함	
	무기 탄약	무기 탄약	무기고	• 200명 미만 40㎡ • 200~400명 미만 50㎡ • 400~600명 미만 6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0.5㎡ 가산	• 시도청, 경찰서 평균
			탄약고	• 1실: 20㎡	
민간소유 총포보관실			• 1실: 30㎡		
화학 보관실			• 1실: 30㎡		
관리시설	정문안내소		• 15㎡	• 시도청 개별검토 • 경찰서 공통적용 (금지구분 없음)	
	당직실		• 지방청(당직자수×10㎡) • 경찰서(금지별 구분) - 1급서: 160㎡ - 2급서: 120㎡ - 3급서: 80㎡	• 시도청 개별 검토 • 경찰서 금지별 구분	
	차고		• 미적용	•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	
	지하주차장		• 차량 수×34.3㎡	• 램프 및 통로면적 포함하여 34.3㎡로 조정	
	운전원대기실		• 미적용	• 미운영 시설로 제외	

〈표 III-11〉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관리시설	청사관리 용역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청(용역원 수×3㎡)</li> <li>경찰서(급지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서: 18㎡</li> <li>- 2급서: 12㎡</li> <li>- 3급서: 1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 개별검토</li> <li>• 경찰서 급지별 구분</li> </ul>
부대시설 (식당)	식당	• 직원수×1/2×1.5㎡	• 청사시설 기준(행안부)
	주방면적	• 식당면적×1/3	• 법무시설기준(법무부)
	주식창고	• 식당면적×35%	-
	부식창고	• 식당면적×25%	-
	조리원샤워장	• 인원×1.7㎡(탈의실 포함)	-
	조리원휴게실	• 인원×3.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명 미만 250㎡</li> <li>• 200~400명 미만 310㎡</li> <li>• 400~600명 미만 575㎡</li> <li>•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13㎡ 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 경찰서 평균</li> <li>• 주방, 창고, 매점 포함</li> </ul>
시설관리	기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기준면적</li> <li>1,000㎡ 이하: 70㎡</li> <li>3,000㎡ 이하: 200㎡</li> <li>5,000㎡ 이하: 290㎡</li> <li>10,000㎡ 이하: 450㎡</li> <li>15,000㎡ 이하: 600㎡</li> <li>20,000㎡ 이하: 7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시설 기준(설비공학 편람)</li> <li>※ 전용면적:기계·전기·발전실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li> </ul>
	전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기준면적</li> <li>1,000㎡ 이하: 40㎡</li> <li>2,000㎡ 이하: 65㎡</li> <li>13,000㎡ 이하: 87㎡</li> <li>4,000㎡ 이하: 106㎡</li> <li>5,000㎡ 이하: 124㎡</li> <li>10,000㎡ 이하: 175㎡</li> <li>20,000㎡ 이하: 280㎡</li> <li>30,000㎡ 이하: 3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시설 기준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법무시설기준)</li> </ul>
	발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기준면적</li> <li>2,500㎡ 이하: 19㎡</li> <li>5,000㎡ 이하: 24㎡</li> <li>10,000㎡ 이하: 38㎡</li> <li>15,000㎡ 이하: 54㎡</li> <li>30,000㎡ 이하: 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시설 기준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법무시설기준)</li> </ul>
기타시설	공용면적	• 산출면적의 30% 추가 (복도, 계단, 화장실, 공조실 등)	• 건축계획 각론

자료: 경찰청, 「경찰관서 설계기준」, 2021. 12., pp. 41~46 중 해당 내용 발췌

## 2)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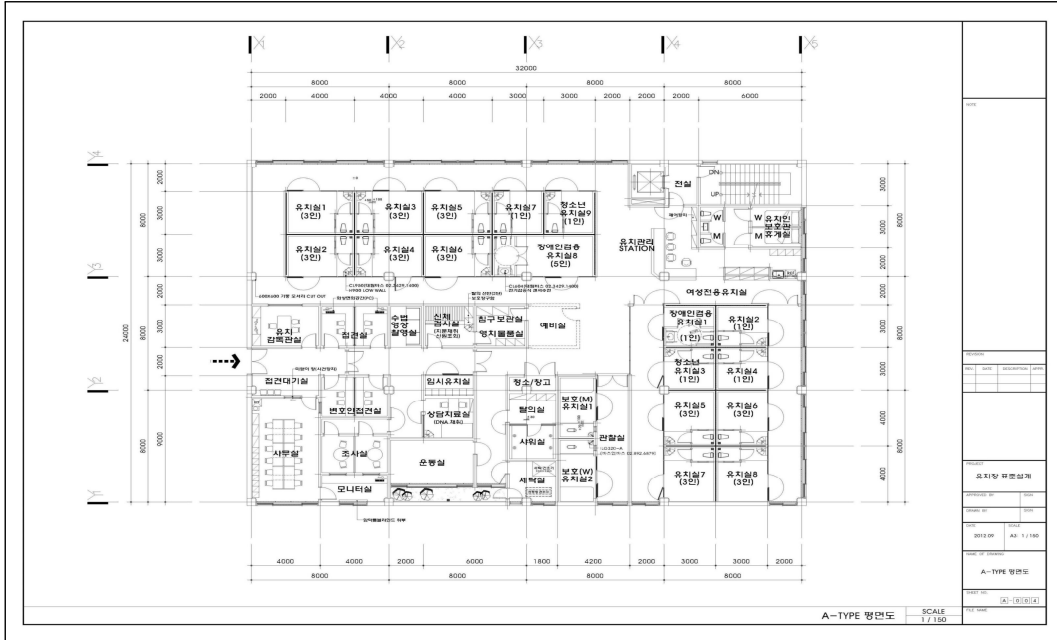
경찰청은 유치장의 시설표준을 규정하기 위해 「(경찰청)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경찰청예규 제564호, 2020. 7.)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 제5조에서 유치장 설계 일반 사항을 정하고 ‘별도’를 통해 유치장 유형별 평면도를 제시하고 있다.

<b>「(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b> [시행 2020.7.16.] [경찰청예규 제564호, 2020.7.16., 일부개정]	
<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절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5조(건축 설계 일반사항)</b>	① 유치장의 전체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치실은 일자형으로 배치하되 별도 1에서 별도 3의 평면도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유치실의 마감 천장 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2.9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하며, 유치실을 제외한 유치장 내 모든 실 및 복도의 마감 천장 높이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2.7미터로 한다. ③~⑨ 항 생략 ⑩ 유치장의 복도 폭은 교차보행이 가능하도록 1.8m에서 2m 사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b>제6조(유치장 유형)</b>	유치장은 일일평균수용인원과 최다수용인원 통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한다. 1. 일반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12명 이하 2. 광역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16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27명 이하 3. 초광역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2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43명 이하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따른 경찰서의 유치장 유형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일반, 광역, 초광역 유치장으로 구분된다. 일반 유치장의 경우 일일 평균 수용인원 8명 이하, 최다 수용인원 12명 이하, 광역 유치장은 일일 평균 수용인원 16명 이하, 최다 수용인원 27명 이하, 초광역 유치장은 일일 평균 수용인원 28명 이하, 최다 수용인원 43명 이하의 기준이다. 유치장 유형별 표준 평면도는 다음 [그림 III-6], [그림 III-7], [그림 III-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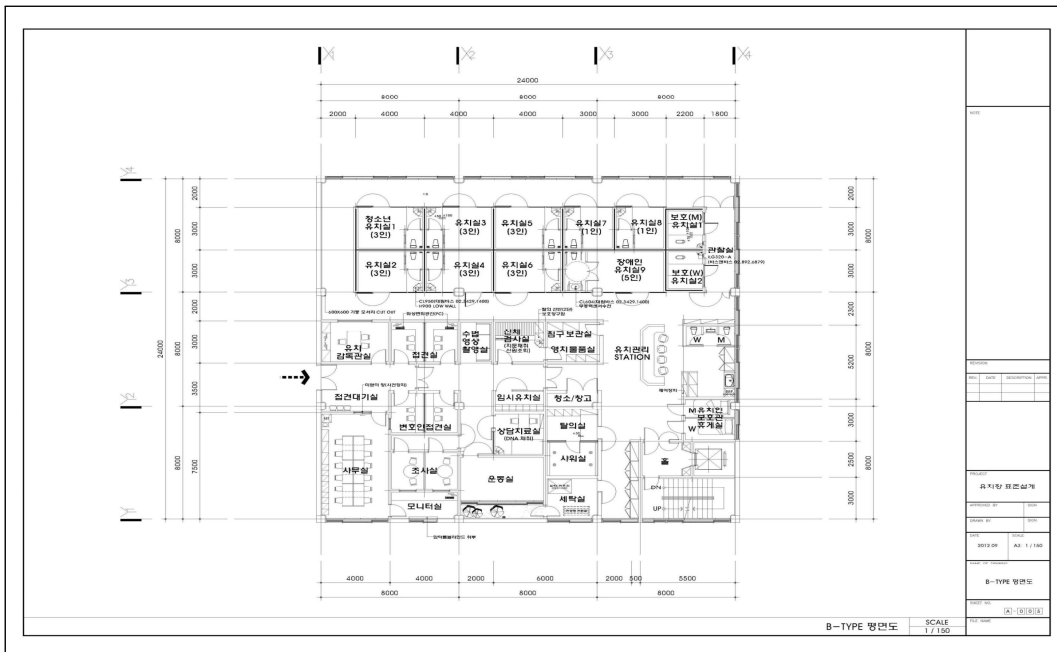
본 검토는 논산경찰서 현 청사 유치장 평균 수용인원 및 최다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유치장 유형을 검토하고 해당 표준도면을 기준으로 본 청사 유치장 규모와 공용면적을 검토하였다.

[그림 III-6] 초광역유치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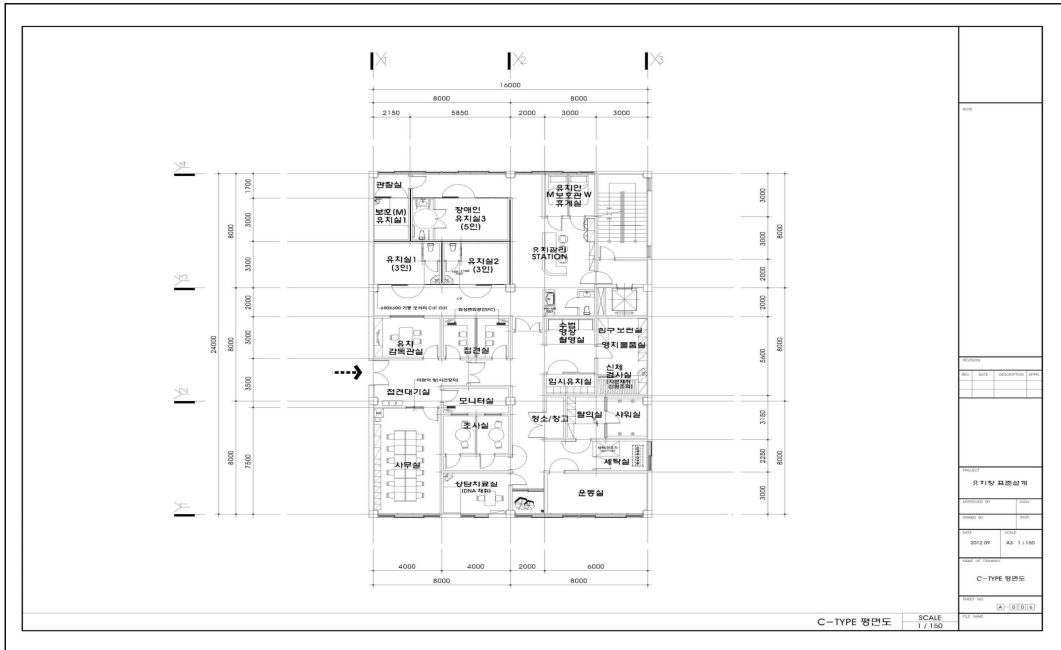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경찰청예규 제564호)」[별도 1], 2020. 7.

[그림 III-7] 광역유치장 평면도



자료: 경찰청,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경찰청예규 제564호)」[별도 2], 2020. 7.

[그림 III-8] 일반유치장 평면도



자료: 경찰청,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경찰청예규 제564호)」[별도 3], 2020. 7.

### 3) 청사 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이 사용하는 청사 취득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용재산취득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이 형집행시설로서 청사수급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경찰관서 설계기준」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수단으로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청사 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을 활용하고자 한다. 청사 면적 기준으로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청사시설기준표’가 있으며 정원 외 근무자에 대해 1인당 5㎡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III-12〉 청사시설기준표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업무시설	1. 상황실 장관급 기관	165㎡	20인 이하는 미설치
	차관급 기관	132㎡	
	2. 회의실	50㎡+0.7㎡(정원-20인)	
보조시설	1. 식당	정원×1.5㎡×1/3	주방 포함
저장시설	1. 창고	순사무실면적×7%	특수용도의 창고는 기관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문서고	순사무실면적×7%	
관리시설	1. 수위실	근무자 수×3㎡	출입면적 별도산정
	2. 당직실	당직자 수×10㎡	
	3. 차 고	대형차 20㎡×관용차량 수	
		중형차 15㎡×관용차량 수	
		소형차13.2㎡×관용차량 수	
4. 지하주차장 등	45㎡		
5. 운전원대기실	운전원 수×1.65㎡		
편의시설	1. 휴게실	9.9㎡+(정원-24인)×0.22㎡	정원 24인 미만 제외
	2. 이발실	6.6㎡+(정원-60인)×0.1㎡	정원 60인 미만 제외
	3. 의무실	22㎡+(정원-100인)×0.048㎡	정원 100인 미만 제외
	4. 체육실	75㎡+(정원-100인)×0.16㎡	정원 100인 미만 제외
주거시설	1. 단독주택		기관장
	장관급	168㎡	
	차관급	153㎡	
	1급	135㎡	
	2. 3급	102㎡	
	4급	83㎡	
	5급	66㎡	
	6급 이하	50㎡	
	2. 공동주택		기관장
	장관급	135㎡	
	차관급	120㎡	
	1급	102㎡	
2. 3급	85㎡		

〈표 III-12〉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주거시설	4급	66㎡	
	5급 이하	50㎡	
	3. 직원관사	25.0㎡/1인	기관장 외
	4. 기 숙 사	14.5㎡/1인	기관장 외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2024. 1., p. 12.

#### 다. 시설규모 산정 기준 인원

경찰청 「경찰관서 설계기준」의 ‘경찰관서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표 III-10)’ 및 ‘실면적 세부 산출내역(표 III-11)’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 인원에 따라 건축 규모가 결정되므로 시설 규모 검토를 위해서는 기준 정원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충남경찰청에서 제출한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서(2023. 7.)」는 논산경찰서의 2023년 2월 정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변경이 있었으므로 본 검토에서는 최신 정원을 확인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기준 정원과 관련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룡경찰서 신설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계룡경찰서는 논산경찰서 관할구역에 신규로 건립하는 경찰서로서 논산경찰서의 일부 인원을 이동 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계획을 확인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충남경찰청에서는 광역과학수사 7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부여경찰서에서 신축하는 논산경찰서로 이전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정원 외 인원에 대한 시설규모 반영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 1) 기준 정원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사업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는 2023년 2월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당시의 정원은 다음 표와 같이 본서 137명, 지역관서 134명으로 전체 정원 271명이었다.

〈표 Ⅲ-13〉 충남 논산경찰서 전체 정원(2023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1) 경찰관								(2) 일반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본서	137	131	1	5	14	18	44	32	17	6
지역관서	134	134	-	-	8	15	13	35	63	-
계	271	265	1	5	22	33	57	67	80	6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2024년 1월 충청남도경찰청과 경찰서 조직개편에 따라 논산경찰서의 정원은 2024년 4월 현재 본서 128명, 지역관서 134명, 전체 262명으로 2023년 대비 본서 9명이 감소하였다.

〈표 Ⅲ-14〉 충남 논산경찰서 전체 정원(2024년 4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1) 경찰관								(2) 일반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본서	128	122	1	7	9	21	42	27	15	6
지역관서	134	134	-	1	8	17	13	34	61	-
계	262	256	1	8	17	38	55	61	76	6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충남경찰청은 계룡경찰서 신축 이후 논산경찰서의 정원을 210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2024년 4월 기준 현 정원에서 본서 8명, 지역관서 44명이 감소하는 규모이다. 다만 경찰서의 정원은 개서 6개월 전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하는 사항이므로 불확실한 조건을 미리 반영하여 검토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본 검토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표 Ⅲ-15〉 계룡서 신설에 따른 논산·계룡서 정원 요구안

구분	논산경찰서 (현재)	신설 이후	
		논산경찰서(-52명) (7과, 지역경찰관서 6개소)	계룡경찰서(신설) (5과, 지역경찰관서 2개소)
총 인력 (정원)	〈262명〉 경찰 256명, 일반 6명 (총경 1, 경정 8, 경감 17, 경위 38, 경사 55, 경장 61, 순경 76명, 일반 6)	〈210명〉 경찰 206명, 일반 4명 (총경 1, 경정 8, 경감 17, 경위 30, 경사 40, 경장 51, 순경 59명, 일반 4)	〈109명〉 경찰 107명, 일반 2명 : 재배치 52명, 순증 57명 (총경 1, 경정 3, 경감 13, 경위 11, 경사 18, 경장 28, 순경 33, 일반2)
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문감사인권관 (4명)</li> <li>○ 경무과 (13명)</li> <li>○ 범죄예방대응과 (17명)</li> <li>○ 여성청소년과 (19명)</li> <li>○ 수사과 (45명)</li> <li>○ 경비안보과 (5명)</li> <li>○ 교통과 (25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문감사인권관 (3명)/(-1명)</li> <li>○ 경무과 (12명)/(-1명)</li> <li>○ 범죄예방대응과 (16명)/(-1명)</li> <li>○ 여성청소년과 (18명)/(-1명)</li> <li>○ 수사과 (43명)/(-2명)</li> <li>○ 경비안보과 (4명)/(-1명)</li> <li>○ 교통과 (24명)/(-1명)</li> <li>⇨ -8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무과 (14명)</li> <li>○ 범죄예방대응과 (12명)</li> <li>○ 생활안전교통과 (25명)</li> <li>○ 수사과 (23명)</li> <li>○ 경비안보과 (5명)</li> </ul>
지역 경찰 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지구대 (46명)</li> <li>○ 연무지구대 (19명)</li> <li>○ 강경지구대 (19명)</li> <li>○ 계룡지구대 (21명)</li> <li>○ 연산파출소 (12명)</li> <li>○ 상월파출소 (9명)</li> <li>○ 양촌파출소 (8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지구대 (37명)/(-9명)</li> <li>○ 연무지구대 (15명)/(-4명)</li> <li>○ 강경지구대 (15명)/(-4명)</li> <li>○ 연산파출소 (8명)/(-4명)</li> <li>○ 상월파출소 (8명)/(-1명)</li> <li>○ 양촌파출소 (7명)/(-1명)</li> <li>○ 계룡지구대 (-명)/(-21명)</li> <li>⇨ -44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룡지구대 (21명)</li> <li>○ 금암파출소(신설)- (9명)</li> </ul>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2) 정원 외 인원

현재 충청남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 총 7개 팀의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15개 경찰서 중 7개의 경찰서 및 관할구역 내에 광역과학수사팀이 배치되어 있으며, 점유면적은 66.0~423.3㎡로 확인된다. 현재 경찰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광역과학수사팀은 총 3개 팀이 있으며, 다른 3개 팀은 치안센터와 기동대, 의경 건물을 각각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광역과학수사 1팀의 경우는 2020년에 충남경찰청 합동법과학감정실(대전연구소)<sup>24)</sup>로 이전 배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13호)」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조(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 및 감정분야)의 [별표1]에 따라 합동법과학감정실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음

〈표 III-16〉 충청남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운영 현황

(단위: 명, m<sup>2</sup>)

경찰서 (가나다순)	현 청사 개서연도	경찰서 및 관할 내 광역과학수사팀 배치 여부 (○, ×)	배치 일자	배치인원	점유면적	위치
공주	2002	○ 광역과학수사 4팀	2014. 10. 1.	8	136.0	舊 옥룡치안센터
논산	1981	× -	-	-	-	신축시, 과수7팀 배치 예정
보령	2021	○ 광역과학수사 6팀	2021. 6. 14.	9	84.0	보령서 신축 이전
부여	1990	○ 광역과학수사 7팀	2014. 10. 1.	8	-	부여경찰서 (논산서로 이동 예정)
서산	1998	○ 광역과학수사 3팀	2021. 8. 3.	12	137.2	서산서 → 제4기동대
아산	2007	○ 광역과학수사 2팀	2021. 6. 27.	9	174.3	아산서 → 舊 의경 1중대 건물
천안동남	1997	○ 광역과학수사 1팀	2020. 12. 17.	15	423.3	천안 동남 → 법과학감정실
홍성	1994	○ 광역과학수사 5팀	2014. 10. 1.	9	66.0	홍성경찰서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7차 제출자료」, 2024. 11.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현재 논산경찰서에는 광역과학수사팀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2014년도부터 부여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광역과학수사 7팀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계획은 충남경찰청 공문 ‘과학수사과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설계 반영 요청’<sup>25)</sup>과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설계 반영 여부 재확인 요청’<sup>26)</sup>으로 확인할 수 있다.

25) 충청남도경찰청, 「3차 제출자료」, 2024. 8.

26) 충청남도경찰청, 「3차 제출자료」, 2024. 8.

[그림 III-9] 광역과학수사 7팀 이전 설계 반영 요청 공문

과학수사과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설계 반영 요청 (2021. 3. 8.) <sup>1)</sup>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설계 반영 여부 재확인 요청 (2024. 8. 5.) <sup>2)</su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충청남도경찰청</b></p> <p>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과학수사과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설계 반영 요청</p> </div>  </div> <p>1. 관련근거 과학수사과-1099(21. 2. 26) 과학수사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보고</p> <p>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광역과학수사팀 이전을 통한 업무환경 추진 계획 일환으로 현재 사업 추진중인 논산경찰서, 계룡경찰서 신축 공사 관련 기본 설계 시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공간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대상</p> <table border="1" data-bbox="212 731 713 922"> <thead> <tr> <th>연번</th> <th>대상 (관할서)</th> <th>거점지</th> <th>이전 희망지</th> <th>사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광역과수 7팀 (부여, 논산-계룡시계외)</td> <td>부여서 별관 2층</td> <td>신축 논산경찰서 (논산시 강령읍 남교리 78-2)</td> <td>최근 3년('18년-'20년) 현장임장 분석 결과 수요가 많은 논산서 이전 추진</td> </tr> <tr> <td>2</td> <td>광역과수 4팀 (공주, 금산-계룡시)</td> <td>공주서 옥룡치안센터</td> <td>신축 계룡경찰서 (계룡시 금일동 9번지)</td> <td>이동거리 단축 현장 대기시간 갈축 (옥룡치안센터-금산서, 76.6km, 39분, 계룡서-금산서 49.7km, 66분, 26.9km, 17분 단축)</td> </tr> </tbody> </table> <p>나. 요청사항 증거물 감식감정실 표준모델('18년 충남대 산학협력단)을 근거로 증거물 감정실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전처리실 등 140㎡ 공간 확보. 끝.</p>	연번	대상 (관할서)	거점지	이전 희망지	사유	1	광역과수 7팀 (부여, 논산-계룡시계외)	부여서 별관 2층	신축 논산경찰서 (논산시 강령읍 남교리 78-2)	최근 3년('18년-'20년) 현장임장 분석 결과 수요가 많은 논산서 이전 추진	2	광역과수 4팀 (공주, 금산-계룡시)	공주서 옥룡치안센터	신축 계룡경찰서 (계룡시 금일동 9번지)	이동거리 단축 현장 대기시간 갈축 (옥룡치안센터-금산서, 76.6km, 39분, 계룡서-금산서 49.7km, 66분, 26.9km, 17분 단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실용이고 단순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경찰</p> <p><b>충청남도경찰청</b></p> <p>수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경유) 제목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설계 반영 여부 재확인 요청 회신</p> </div> </div> <p>1. 관련 근거 가. 과학수사과-1248('21. 3. 8.) 과학수사과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설계 반영 요청 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17647('24. 8. 1.)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설계 반영 여부 재확인 요청</p> <p>2. 위와 관련, 8월 진행했던 <b>광역과학수사팀(부여, 논산) 신축 논산경찰서로 이전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추진 계획</b>은 유효하며 논산경찰서 신축 공사 기본 설계시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공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p> <p>3. 요청사항 과학수사 감식감정실 표준모델 연구 용역(과학수사담당관-2465('18. 4. 18.)) 결과를 근거로 증거물 감정실과 사무공간 분리, 전 처리실 운영에 필요한 140㎡ 공간 설계에 반영 요청. 끝.</p>
연번	대상 (관할서)	거점지	이전 희망지	사유												
1	광역과수 7팀 (부여, 논산-계룡시계외)	부여서 별관 2층	신축 논산경찰서 (논산시 강령읍 남교리 78-2)	최근 3년('18년-'20년) 현장임장 분석 결과 수요가 많은 논산서 이전 추진												
2	광역과수 4팀 (공주, 금산-계룡시)	공주서 옥룡치안센터	신축 계룡경찰서 (계룡시 금일동 9번지)	이동거리 단축 현장 대기시간 갈축 (옥룡치안센터-금산서, 76.6km, 39분, 계룡서-금산서 49.7km, 66분, 26.9km, 17분 단축)												

자료: 1)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23. 7.  
2) 충청남도경찰청, 「3차 제출자료」, 2024. 8.

〈표 III-17〉 광역과학수사 7팀 인원

(단위: 명)

구분	인원	비고
경위	2	팀장 1명 포함
경사	1	-
경장	3	-
검시	2	행정근무자
합계	8	-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3차 제출자료」, 2024. 8.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광역과학수사 7팀 인원은 〈표 III-17〉과 같이 총 8명이며 충남경찰청 정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논산경찰서 시설규모에 광역과학수사팀 면적을 반영함에 따른 본청과 논산경찰서의 시설 중복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 광역과학수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전까지 각 경찰서 소속 인원이었던 과학수사팀은 본청 소속으로 전환되고 실제 업무공간은 거점 경찰서에 배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충남경찰청 현 청사 준공 시기는 2013년으로 청사 계획 당시 시설 규모에 광역과학수사팀 인원은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광역과학수사 7팀이 배치되어 있는 부여경찰서 청사도 1990년에 준공되어 광역과학수사팀은 시설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광역과학수사 7팀 인원에 대한 시설규모 중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검토에서는 광역과학수사 7팀의 논산경찰서 배치가 확정되어 실 사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논산경찰서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반영하고자 한다.

### 3) 기준 인원 검토 종합

논산경찰서 시설 규모 검토는 2024년 4월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는 2023년 2월 정원 기준이나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감소한 최신 정원(2024. 4.)을 기준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룡경찰서 신설에 따라 논산경찰서 정원의 추가 축소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변경되는 정원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검토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2021년 부여경찰서의 광역과학수사 7팀(부여·논산)을 논산경찰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신축 설계에 반영을 요청하였다.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광역과학수사 7팀의 논산경찰서 이전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논산경찰서 신축공사 기본설계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논산경찰서 내 광역과학수사 7팀의 업무공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과 논산경찰서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감안,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을 준용한다.

〈표 Ⅲ-18〉 시설 규모 검토 기준정원 종합

(단위: 명)

구분	정원										
	본서									지역 관서	합계
	계	청문감사 인권관실	112치안 종합 상황실	경무과	정보 안보 외사과	수사과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과	경비 교통과		
2023년 2월 기준인원	137	5	9	14	10	44	9	18	28	134	271
2024년 4월 기준인원	128	4	6	13	5	45	11	19	25	134	262
계룡서 신설 후 기준인원 (미확정)	120	3	6	12	4	43	10	18	24	90	210

주: 광역과학수사 7팀 인원은 정원 외 인원이므로 시설 규모 검토 기준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2차 제출자료」, 2024. 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라. 세부시설 규모 적절성 검토

요구안의 건축연면적은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8,346.08㎡를 제시하였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본 재검토에서는 2024년 4월 최신 정원을 기준으로 시설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정원 외 인원인 광역과학수사 7팀의 업무공간 규모도 검토하였다.

시설 규모 검토 기준으로 「경찰관서 설계기준」 중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을 우선 적용하였으며, 규모 적정성 검증 및 보완을 위해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른 청사 시설 면적기준을 활용하였다.

세부시설 규모 적절성 검토는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에 따라 업무시설, 부대시설, 저장보관시설, 관리시설, 편의시설, 정보통신시설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전체 시설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단 규모 산정 근거가 없는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요구안의 면적을 준용하였다.

### 1)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순사무실과 순사무실 외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II-19>와 같다.

업무시설의 총면적은 요구안 3,966.89㎡ 대비 353.23㎡ 감소한 3,613.66㎡로 산정되었다. 그중 순사무실 면적은 요구안 대비 164.24㎡ 감소한 1,323.00㎡이며, 순사무실 외 업무시설 면적은 188.99㎡ 감소한 2,290.66㎡이다. 대안 면적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정원을 최신기준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이고, 그 외에 요구안의 광역 유치장을 일반 유치장으로 변경한 것에 기인한다.

<표 III-19> 업무시설 규모 검토

(단위: ㎡)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업무시설	순사무실	서장실	88.44	1	총경(경찰서장실): 80㎡	80.00	-8.44
		과장실	194.23	7	경정 7명×30㎡	210.00	15.77
		행정부서	516.16	69	근무자 수×7㎡	483.00	-33.16
		수사부서	612.34	51	근무자 수×10㎡	510.00	-102.34
		광역과수7팀	76.07	8	근무자 수×5㎡	40.00	-36.07
		소계	1,487.24	128	-	1,323.00	-164.24
	순사무실 외	상황실	127.00	128	100~200명 미만 100㎡	100.00	-27.00
		대강당	310.85	262	200~400명 미만 400㎡	400.00	89.15
		소회의실	205.43	128	20명 미만 50㎡, 1명 증가마다 0.7㎡ 가산	125.60	-79.83
		대회의실	104.13	128	100~200명 미만 99㎡	99.00	-5.13
		유치장	538.10	-	일반유치장	384.00	-154.10
		진술녹화실	46.27	51	수사관 10명당 1실 11㎡	55.00	8.73
		모니터실	35.67	51	수사관 10명당 1실 10㎡	50.00	14.33
		민원실	205.37	128	100~200명 미만 160㎡	160.00	-45.37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87.75	30	과별 5명 기준, 피의자(피해자)×3㎡	90.00	2.25
		상담실	12.06	-	요구안 준용	12.06	-
		상무관	288.12	262	200~400명 미만 300㎡	300.00	11.88

〈표 III-19〉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업무시설	순사무실외	실내사격장	467.87	262	200~400명 미만 464m <sup>2</sup>	464.00	-3.87
		정보화 교육장	51.03	17	2급서 교육인원 17명×3m <sup>2</sup>	51.00	-0.03
		소계	2,479.65	-	-	2,290.66	-188.99
	계(업무시설)		3,966.89	-	-	3,613.66	-353.23

자료: 연구진 작성

순사무실 중 광역과학수사 7팀 업무공간은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서 정원 외 근무자에 대해 1인당 5m<sup>2</sup> 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8명의 인원에 대해 40m<sup>2</sup>를 반영하였다.

「경찰관서 설계기준」에서 소회의실은 과별로 20명 미만에 대해 50m<sup>2</sup>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회의실 설치대상 과별 최소인원에 대한 기준이 없고 경찰서 각 과별 인원 편차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청사시설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125.6m<sup>2</sup>를 반영하였다.

업무시설 중 상담실의 경우 설계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현 청사의 민원상담실 면적 11.89m<sup>2</sup>와 유사한 수준의 요구안 면적 12.06m<sup>2</sup>를 준용하였다.

유치장의 경우 요구안에서는 광역 유치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3개년 논산경찰서 유치장 수용인원 현황 검토 결과 일일 평균 2.1인 이하, 최다 수용인원 평균 12.7인 이하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6조의 유치장 유형 중 ‘일반 유치장’으로 판단, 대안에는 일반 유치장 면적을 반영하였다.

〈표 III-20〉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구분	일일 평균 수용인원	최다 수용인원
일반유치장	8명 이하	12명 이하
광역유치장	16명 이하	27명 이하
초광역유치장	28명 이하	43명 이하

자료: 경찰청,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경찰청예규 제564호)」 제6조, 2020. 7.

〈표 III-21〉 최근 3개년 논산경찰서 유치장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일일 평균 수용인원	최다 수용인원
2021년	2.1	14
2022년	2.3	12
2023년	1.9	12
3개년 평균	2.1	12.7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4차 제출자료」, 2024. 9.

광역과학수사 7팀의 경우 주무부처에서는 ‘과학수사 감식·감정실 표준모델 연구 용역(과학수사담당관-2452(2018. 4. 18.))’ 결과를 근거로 증거물감정실과 사무공간 분리, 전처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140㎡를 요구<sup>27)</sup>하였다. 하지만 광역과학수사 7팀은 정원 외 인원에 해당하므로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정원 외 근무자 배정면적 1인당 5㎡<sup>28)</sup>를 적용하여 업무시설의 면적을 산정하였다.

## 2) 부대시설

대안의 부대시설 면적은 정원 128명을 기준으로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요구안 224.87㎡ 대비 22.15㎡ 감소한 202.72㎡로 식당과 주방 등은 소폭 감소한 반면 창고 면적은 소폭 증가하여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조리원 휴게실 및 영양사실에 적용되는 인원은 요구안에서 제시한 조리원 2명, 영양사 1명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영양사실은 규모산정 근거가 없으나 요구안 7.12㎡를 포함한 전체 부대시설(식당)의 면적이 정원 200명 미만 경찰서 평균 면적인 250㎡ 미만 범위에 해당하여 요구안을 준용하였다.

27) 충청남도경찰청 「3차 제출자료」, 충청남도경찰청 과학수사과-1248(2021. 3. 8.) ‘과학수사과 광역과학수사팀 이전 설계 반영 요청’ 공문 참조

28) 정부청사관리본부, ‘202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2024. 1., p. 5. 참조

〈표 Ⅲ-22〉 부대시설 규모 검토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부대 시설	식당	110.50	128	근무자 수×1/2×0.15m <sup>2</sup>	96.00	-14.50
	주방	48.28	-	식당면적×1/3	32.00	-16.28
	창고	43.06	-	식당면적×60%	57.60	14.54
	조리원 휴게실	15.91	2	(샤워장 1.7m <sup>2</sup> /인+휴게실 3.3m <sup>2</sup> /인)×사용인원	10.00	-5.91
	영양사실	7.12	1	요구안 준용	7.12	-
	소계	224.87	-	-	202.72	-22.15

자료: 연구진 작성

### 3) 저장보관시설

대안의 저장보관시설의 면적은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요구안 926.61m<sup>2</sup> 대비 121.36m<sup>2</sup> 증가한 1,047.97m<sup>2</sup>로 검토되었다.

창고는 문서, 비품, 소모품 창고, 수사 관련 보관실 등을 면적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증가한 면적을 반영하였고, 증거물감정실과 전처리실의 경우 2021년에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을 개정하면서 수사통합증거물보관실(103m<sup>2</sup>)로 통합되었으므로 대안 면적에서 제외하였다.

〈표 Ⅲ-23〉 저장보관시설 규모 검토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저장보관 시설	창고	136.55	-	순사무실면적(광역과수7팀 제외)×7% ×3개소(문서, 비품, 소모품)	269.43	132.88
	피복창고	46.50	262	근무자 수(지역관서 포함)×0.17m <sup>2</sup>	44.54	-1.96
	수사	106.35	-	수사통합증거물보관실 103m <sup>2</sup> + 수사기록보관실(2급지) 35m <sup>2</sup>	138.00	31.65
	경무	128.94	-	문서보관 28m <sup>2</sup> +지출서류 32m <sup>2</sup> +물품보관 60m <sup>2</sup>	120.00	-8.94
	생활안전	85.31	-	유실물 15m <sup>2</sup> +압수물 52m <sup>2</sup> +자료장비 60m <sup>2</sup>	127.00	41.69

〈표 III-23〉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저장보관시설	정보	79.05	1	1실 74m <sup>2</sup>	74.00	-5.05
	경비, 장비창고	148.13	1	1실 145m <sup>2</sup>	145.00	-3.13
	무기고	94.50	262	200~400명 미만 50m <sup>2</sup> +민간소유총포 30m <sup>2</sup>	80.00	-14.50
	탄약고	49.77	-	탄약고 20m <sup>2</sup> +화학보관실 30m <sup>2</sup>	50.00	0.23
	증거물 감정실	25.62	-	수사통합증거물보관실로 대체	-	-25.62
	전처리실	25.89	-	수사통합증거물보관실로 대체	-	-25.89
	소계	926.61	-	-	1,047.97	121.36

자료: 연구진 작성

#### 4) 관리시설

관리시설 또한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대안 규모를 검토한 결과 요구안 139.92m<sup>2</sup> 대비 7.08m<sup>2</sup> 증가한 147.00m<sup>2</sup>로 산출되었다.

민원안내실의 경우 시설면적 산정 근거가 없으나, 경비실과 민원안내 공간이 정문안내소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해당 면적 15m<sup>2</sup>를 반영하였다. 공익근무원실의 경우 면적산정근거가 없고 현 청사에도 해당 시설이 부재하므로 대안 규모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호송차고의 경우 요구안에서 55.55m<sup>2</sup>를 계획하였으나 경찰청사 면적산출기준 확인 결과 호송차고 설계기준은 제시되어 있는 반면 면적기준은 지하주차장에 포함된다고 하여 면적산출근거가 모호하다. 본 재검토에서는 시설 배치 및 차량 동선 계획 등 건축계획을 통해 보안이 확보되는 호송차량 통로와 출입구 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안 규모에서 제외하였다.

〈표 Ⅲ-24〉 관리시설 규모 검토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관리 시설	경비실	6.00	-	정문안내소 15m <sup>2</sup>	15.00	-0.72
	민원안내	9.72	-			
	당직실	21.6	-	2급서 120m <sup>2</sup>	120.00	98.40
	호송차고	55.55	-	시설면적 기준 부재	-	-55.55
	공익근무원실	21.42	-	시설면적 기준 부재	-	-21.42
	청사관리용역사무실	25.63	-	2급서 12m <sup>2</sup>	12.00	-13.63
	합계	139.92	-	-	147.00	7.08

자료: 연구진 작성

### 5)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대안 규모를 검토한 결과 요구안 418.48m<sup>2</sup> 대비 33.82m<sup>2</sup> 감소한 384.66m<sup>2</sup>로 산출되었다. 주요 검토 결과로 휴게실, 샤워실, 체육실은 기준에 따른 면적을 반영하면서 97.58m<sup>2</sup> 증가하였으며 종교시설은 전체를 제외하여 127m<sup>2</sup> 감소하였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중 휴게실, 샤워실, 체육실은 기준인원을 토대로 다시 산정하였고 그중 체육실은 요구안에서 탈의실 포함한 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대안도 탈의실을 포함하여 규모를 검토하였다.

수유실의 경우 시설면적기준이 부재하고 법적인 의무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법령<sup>29)</sup>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임을 고려, 수유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15m<sup>2</sup><sup>30)</sup>를 반영하였다.

종교시설은 전의경 폐지 등으로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안 규모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직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청사 시설 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경찰시설 면적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30) 보건복지부·인구복지협회,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2021. 5., p. 6

〈표 Ⅲ-25〉 편의시설 규모 검토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편의 시설	휴게실	79.94	128	여성휴게실 17~24인 기준 54m <sup>2</sup> 포함	86.78	6.84
	샤워실	76.14	128	200명 미만 100m <sup>2</sup>	100.00	23.86
	체육실	83.00	128	체육실: 75m <sup>2</sup> +(근무자 수-100)×0.16m <sup>2</sup> + 탈의실: 근무자 수×0.55m <sup>2</sup>	149.88	66.88
	종교시설	127.00	-	전의경 폐지 이후 시설 필요성 근거 미비로 인한 검토 대상 제외	-	-127.00
	협의회실	40.54	1	1실 33m <sup>2</sup>	33.00	-7.54
	수유실	11.86	1	수유시설관리 표준가이드라인 15m <sup>2</sup>	15.00	3.14
	합계	418.48	-	-	384.66	-33.82

자료: 연구진 작성

### 6) 정보통신시설

정보통신시설에 대해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에 근거해 다시 산출한 대안 규모는 요구안 138.91m<sup>2</sup> 대비 15.91m<sup>2</sup> 감소한 123.00m<sup>2</sup>이다. 전산자료실은 시·도청에만 적용하는 시설이므로 대안 규모에서 제외하였다.

〈표 Ⅲ-26〉 정보통신시설 규모 검토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검토안 (B)	증감 (B-A)
정보 통신 시설	보안실	34.49	1	경찰서 공통 1실 33m <sup>2</sup>	33.00	-1.49
	통신·전산장비실	54.34	-	경찰서 통신40m <sup>2</sup> , 전산 50m <sup>2</sup>	90.00	35.66
	전산자료실	50.08	-	시도청 적용	-	-50.08
	합계	138.91	-	-	123.00	-15.91

자료: 연구진 작성

## 7) 공용면적

공용면적 또한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한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대안 규모는 요구안 2,530.40㎡ 대비 326.90㎡ 감소한 2,203.50㎡로 검토되었다.

설비 관련실은 요구안 청사규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합계 기준 271.59㎡ 증가하였으나 중앙감시실의 경우 시설면적기준 부재하여 제외하였다. 계단, 엘리베이터홀, 복도, 화장실, 로비 등 공용부 면적은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의 30%를 적용 하되, 유치장은 시설 내에 공용면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산출하였고, 그 결과 공용면적 569.59㎡가 감소하였다.

〈표 Ⅲ-27〉 공용면적 규모 검토

(단위: ㎡)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설비 관련실	기계실	249.53	-	10,000㎡ 이하 450㎡	450.00	200.47
	전기실	104.05	-	10,000㎡ 이하 175㎡	175.00	70.95
	발전기실	37.83	-	10,000㎡ 이하 38㎡	38.00	0.17
	중앙감시실	28.90	-	기준 없음, 기계·전기실에 포함	-	-28.90
계단, EV홀, 복도, 화장실 로비 등	2,110.09	-	전용면적의 30% (유치장제외)	1,540.50	-569.59	
합계	2,530.40	-	-	2,203.50	-326.90	

자료: 연구진 작성

## 8) 주차규모 검토

요구안의 주차계획은 지하주차장 없이 지상주차만으로 136대를 계획하고 있다. 본 재검토에서는 계획한 주차규모의 적정성과 본 사업부지 내에 계획 가능한 규모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논산시에서 규정한 법정 주차규모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주차계획 범위를 확인하고 본 사업의 주차규모 계획 범위를 파악하였다.

「논산시 주차장 조례」[별표2]에 따르면 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75㎡ 당 1대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3조에 따른 주차장 계획 범위는 법정 주차대수의 2배 이하이다. 따라서 신축 논산경찰서의 경우 요구안은 111대 이상 222대 이하, 대안은 99대

이상 198대 이하의 주차장 규모 계획이 가능하고 계획한 주차대수 136대는 요구안 및 대안 범위 내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사업 대상지에 위에서 도출한 주차장 규모 계획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건축면적 및 법정 시설 면적을 제외한 지상 가용면적을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시설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대안의 연면적이 요구안의 약 93%이므로 건축면적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하였다.

전체 대지면적 8,935.0㎡에서 기본설계안의 건축면적, 법정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를 제외한 결과 지상 가용면적은 4,146.7㎡로 산출되었다.

〈표 III-28〉 지상 가용면적 산출

(단위: ㎡)

구분	대지면적(A)	건축면적(B)	조경면적(C)	공개공지(D)	A-(B+C+D)
지상가용면적	8,935.0	2,207.4	2,023.0	557.9	4,146.7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산출한 지상 가용면적을 기준으로 가능한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표 III-29〉와 같이 지상주차장 조성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각 사례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상 주차 1대당 소요면적 평균은 28.5㎡이다. 따라서 본 사업 대상지의 지상 가용면적 4,146.7㎡에는 약 145대 내외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요구안의 계획주차대수 136대도 본 사업대상지 내에 가능한 규모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9〉 지상주차장 조성 사례의 주차 1대당 소요면적

(단위: ㎡, 대, ㎡)

구분	조성면적	주차대수	1대당 면적
갈마곡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1,702.2	70	24.3
남면 양덕원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공사	526.0	20	26.3
일광신도시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	680.0	23	29.6
사이동 125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1,469.0	53	27.7
노은면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2,670.0	87	30.7
하남3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2,896.5	90	32.2
평균	1,657.3	57	28.5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2024. 1. 및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자: 2024. 9. 5.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Ⅲ-30〉 지상 가능 주차대수 산정

(단위: ㎡, 대)

구분	지상 가능 면적	1대당 주차면적	주차대수
지상 가능 주차대수	4,146.7	28.5	145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마. 시설규모 검토 종합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기준으로 논산경찰서 정원은 2024년 4월 현재 정원을 산출근거로 활용하였으며, 관련 지침으로 「경찰관서 청사면적 산출기준」과 정부청사수급계획 수립기준 중 「청사시설기준표」 등을 참고하였다. 대안 규모 검토 결과, 요구안 8,346.08㎡ 대비 623.57㎡ 감소한 7,722.51㎡로 산정되었다. 규모 감소의 주요 사유는 기준 정원 변경에 있다. 정원이 축소되면서 업무시설 등 전용면적이 전체적으로 줄었으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계단,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 공용면적 또한 전용면적에 따라 함께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논산경찰서 운영 현황과 시설 활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시설 규모의 조정이 있었다. 즉 유치장의 경우 현황을 반영하여 요구안의 광역유치장을 일반유치장으로 변경하였고, 종교 시설은 활용도를 고려하여 대안 규모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시설면적 기준이 부재한 일부 시설의 경우 시설 활용도를 고려하여 요구안의 면적을 준용하거나 대안 규모에서 제외하였다.

〈표 Ⅲ-31〉 규모 검토 결과 종합

(단위: ㎡, %)

용도	시설명	요구안		사업계획 적절성 재검토		
		면적(A)	비율	대안(B)	증감(B-A)	비율
전용 면적	업무시설	3,966.89	47.5	3,613.66	-353.23	46.8
	부대시설	224.87	2.7	202.72	-22.15	2.6
	저장보관시설	926.61	11.1	1,047.97	121.36	13.6
	관리시설	139.92	1.7	147.00	7.08	1.9
	편의시설	418.48	5.0	384.66	-33.82	5.0
	정보통신시설	138.91	1.7	123.00	-15.91	1.6
	전용면적 소계	5,815.68	69.7	5,519.01	-296.67	71.5
공용 면적	설비관련실	420.31	5.0	663.00	242.69	8.6
	계단, EV홀, 복도, 화장실 로비 등	2,110.09	25.3	1,540.50	-569.59	19.9
	공용면적 소계	2,530.40	30.3	2,203.50	-326.90	28.5
<b>합계</b>		<b>8,346.08</b>	<b>100.0</b>	<b>7,722.51</b>	<b>-623.57</b>	<b>100.0</b>

자료: 연구진 작성

〈표 Ⅲ-32〉 규모 검토 세부 내역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전 용 면 적	순 사 무 실	서장실	88.44	1	총경(경찰서장실): 80m <sup>2</sup>	80.00	-8.44	
		과장실	194.23	7	경정 7명×30m <sup>2</sup>	210.00	15.77	
		행정부서	516.16	69	근무자 수×7m <sup>2</sup>	483.00	-33.16	
		수사부서	612.34	51	근무자 수×10m <sup>2</sup>	510.00	-102.34	
		광역7팀	76.07	8	근무자 수×5m <sup>2</sup>	40.00	-36.07	
		소계	1,487.24	128	-	1,323.00	-164.24	
	업 무 사 설	순 사 무 실 외	상황실	127.00	128	100~200명 미만 100m <sup>2</sup>	100.00	-27.00
			대강당	310.85	262	200~400명 미만 400m <sup>2</sup>	400.00	89.15
			소회의실	205.43	128	20명미만: 50m <sup>2</sup> , 1명 증가마다 0.7m <sup>2</sup> 가산	125.60	-79.83
			대회의실	104.13	128	100~200명 미만 99m <sup>2</sup>	99.00	-5.13
			유치장	538.10	-	일반유치장	384.00	-154.10
			진술녹화실	46.27	51	수사관 10명당 1실 11m <sup>2</sup>	55.00	8.73
			모니터실	35.67	51	수사관 10명당 1실 10m <sup>2</sup>	50.00	14.33
			민원실	205.37	128	100~200명 미만 160m <sup>2</sup>	160.00	-45.37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87.75	30	과별 5명 기준, 피의자(피해자)×3m <sup>2</sup>	90.00	2.25
			상담실	12.06	-	요구안 준용	12.06	-
			상무관	288.12	262	200~400명 미만 300m <sup>2</sup>	300.00	11.88
			실내사격장	467.87	262	200~400명 미만 464m <sup>2</sup>	464.00	-3.87
			정보화교육장	51.03	17	2급서 교육인원 17명×3m <sup>2</sup>	51.00	-0.03
			소계	2,479.65	-	-	2,290.66	-188.99
	합계	3,966.89	-	-	3,613.66	-353.23		
	부 대 사 설		식당	110.50	128	근무자 수×1/2×1.5m <sup>2</sup>	96.00	-14.50
			주방	48.28	-	식당면적×1/3	32.00	-16.28
			창고	43.06	-	식당면적×60%	57.60	14.54
			조리원휴게실	15.91	2	(사위장 1.7m <sup>2</sup> /인+휴게실 3.3m <sup>2</sup> /인)×사용인원	10.00	-5.91
			영양사실	7.12	1	요구안 준용	7.12	-
			합계	224.87	-	-	202.72	-22.15

〈표 III-32〉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전 용 면 적	창고	136.55	-	순사무실면적(광역과수7팀 제외)×7% ×3개소(문서, 비품, 소모품)	269.43	132.88	
	피복창고	46.50	262	근무자 수(지역관서 포함)×0.17m <sup>2</sup>	44.54	-1.96	
	수사	106.35	-	수사통합증거물보관실 103m <sup>2</sup> + 수사기록보관실(2급지) 35m <sup>2</sup>	138.00	31.65	
	경무	128.94	-	문서보관 28m <sup>2</sup> +지출서류보관 32m <sup>2</sup> + 물품보관 60m <sup>2</sup>	120.00	-8.94	
	생활안전	85.31	-	유실물 15m <sup>2</sup> +압수물 52m <sup>2</sup> + 자료장비 60m <sup>2</sup>	127.00	41.69	
	정보	79.05	1	정보기록보관실 74m <sup>2</sup>	74.00	-5.05	
	경비, 장비창고	148.13	1	장비,물품 보관실 145m <sup>2</sup>	145.00	-3.13	
	무기고	94.50	262	200~400명 미만 50m <sup>2</sup> + 민간소유총포실 30m <sup>2</sup>	80.00	-14.50	
	탄약고	49.77	-	탄약고 20m <sup>2</sup> +화학보관실 30m <sup>2</sup>	50.00	0.23	
	증거물감정실	25.62	-	광역과학수사 7팀 사무면적 반영	-	-25.62	
	전처리실	25.89	-	광역과학수사 7팀 사무면적 반영	-	-25.89	
	합계	926.61	-	-	1,047.97	121.36	
	관리 시설	경비실	6.00	-	정문안내소 15m <sup>2</sup>	15.00	-0.72
		민원안내	9.72	-			
		당직실	21.6	-	2급서 120m <sup>2</sup>	120.00	98.40
		호송차고	55.55	-	옥외 필로티 공간으로 연면적에서 제외	-	-55.55
		공익근무원실	21.42	-	시설면적 기준 부재	-	-21.42
		청사관리용역 사무실	25.63	-	2급서 12m <sup>2</sup>	12.00	-13.63
		합계	139.92	-	-	147.00	7.08
	편의 시설	휴게실	79.94	128	여성휴게실 17~24인 기준 54m <sup>2</sup> 포함	86.78	6.84
샤워실		76.14	128	200명 미만 100m <sup>2</sup>	100.00	23.86	
체육실		83.00	128	체육실: 75m <sup>2</sup> +(근무자 수-100)×0.16m <sup>2</sup> + 탈의실: 근무자 수×0.55m <sup>2</sup>	149.88	66.88	
종교시설		127.00	-	전의경 폐지 이후 시설 필요성 근거 미비로 인한 검토 대상 제외	-	-127.00	

〈표 III-32〉의 계속

(단위: m<sup>2</sup>)

용도	시설명	요구안 (A)	대안				
			수량 (인/부/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전 용 면 적	편의 시설	협의회실	40.54	1	협의회 1실 33m <sup>2</sup>	33.00	-7.54
		수유실	11.86	1	수유시설관리 표준가이드라인 15m <sup>2</sup>	15.00	3.14
		합계	418.48	-	-	384.66	-33.82
	정보 통신 시설	보안실	34.49	1	경찰서 공통 1실 33m <sup>2</sup>	33.00	-1.49
		통신·전산장비실	54.34	-	통신 40m <sup>2</sup> +전산 50m <sup>2</sup>	90.00	35.66
		전산자료실	50.08	-	시도청 적용	-	-50.08
		합계	138.91	-	-	123.00	-15.91
<b>전용면적 합계</b>		<b>5,815.68</b>	-	-	<b>5,519.01</b>	<b>-296.67</b>	
공 용 면 적	설비 관련실	기계실	249.53	-	10,000m <sup>2</sup> 이하 450m <sup>2</sup>	450.00	200.47
		전기실	104.05	-	10,000m <sup>2</sup> 이하 175m <sup>2</sup>	175.00	70.95
		발전기실	37.83	-	10,000m <sup>2</sup> 이하 38m <sup>2</sup>	38.00	0.17
		중앙감시실	28.90	-	기준 없음, 기계·전기실에 포함	-	-28.90
	계단, EV홀, 복도, 화장실 로비 등	2,110.09	-	전용면적의 30%(유치장 제외)	1,540.50	-569.59	
<b>공용면적 합계</b>		<b>2,530.40</b>	-	-	<b>2,203.50</b>	<b>-326.90</b>	
<b>총계</b>		<b>8,346.08</b>	-	-	<b>7,722.51</b>	<b>-623.57</b>	

자료: 연구진 작성

## IV. 비용 추정

### 1. 비용 추정의 개요

#### 가. 기본 전제

비용추정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 등에 따라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및 예비비로 구분하였으며 비용 추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행하였다.

〈표 IV-1〉 비용 추정 절차 및 방법

구분	연구 절차	연구 방법
I	비용추정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용 추정의 기본 전제 규정</li><li>• 총사업비 산정 방법 및 기준 제시</li></ul>
II	비용 추정의 방법 및 기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축공사비 단가 검토 기준</li><li>• 사업의 특수여건에 따른 추가 공사비 검토 방식</li><li>• 설계비, 감리비 등 시설부대경비 산정 기준</li><li>• 용지보상비 및 예비비 반영 여부 등</li></ul>
III	총사업비 추정 (검토안,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검토 단가를 적용하여 건축공사비 추정</li><li>• 사업의 특수여건에 따른 추가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li><li>• 공사비를 기초로 시설부대경비 산정 등</li></ul>
IV	비용추정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요구안과 본 검토에서 추정된 비용의 비교 및 종합</li></ul>

자료: 연구진 작성

본 검토의 분석 기준연도는 2023년도 말이며, 기준단가의 조사시점이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보정지수를 활용하여 단가를 보정하였다.

〈표 IV-2〉 비용 보정 지수

연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2011	100.0												
2012	102.1	100.0											
2013	102.2	100.1	100.0										
2014	103.7	101.6	101.4	100.0									
2015	103.9	101.8	101.6	100.2	100.0								
2016	104.4	102.2	102.1	100.7	100.5	100.0							
2017	107.9	105.7	105.6	104.1	103.9	103.4	100.0						
2018	111.2	109.0	108.8	107.3	107.1	106.6	103.1	100.0					
2019	114.3	112.0	111.8	110.2	110.0	109.5	105.9	102.7	100.0				
2020	115.6	113.3	113.1	111.5	111.3	110.8	107.2	104.0	101.2	100.0			
2021	125.6	123.1	122.9	121.1	120.9	120.4	116.4	112.9	109.9	108.6	100.0		
2022	135.4	132.7	132.5	130.6	130.4	129.8	125.5	121.8	118.5	117.1	107.8	100.0	
<b>2023</b>	<b>139.3</b>	<b>136.5</b>	<b>136.3</b>	<b>134.4</b>	<b>134.1</b>	<b>133.5</b>	<b>129.1</b>	<b>125.3</b>	<b>121.9</b>	<b>120.5</b>	<b>110.9</b>	<b>102.9</b>	<b>100.0</b>

주: 1.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중 건설투자 항목이며, 기준연도 2020년 자료를 이용함  
 2. 음영으로 표시된 2023년 자료는 해당 연도 종료 후 6개월 내로 연간 잠정치임. 연간 잠정 시에는 일부 기초자료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추후 공표될 연간확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계열 분석 시 유의바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4. 6. 5.

본 재검토에서는 충남 논산경찰서의 최신 정원(2024년 4월)을 기준으로 「경찰관서 설계 기준」의 ‘경찰청사 시설면적 산출기준’에 따라 시설 규모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에 따라 요구안 면적은 8,346㎡이며, 재검토를 통해 산정한 대안 면적은 요구안 대비 623㎡ 감소한 7,723㎡이다. 본 비용 추정에서는 요구안 면적을 준용한 ‘검토안’과 재검토 결과 도출한 ‘대안’에 대해 적정 비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IV-3〉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면적

(단위: ㎡)

구분	요구안 (A)	검토안 (B)	대안 (C)	증감	
				(B-A)	(C-A)
대지면적	8,935			-	-
연면적	8,346		7,723	-	-623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총사업비 산정 방법 및 기준

### 1) 공사비

본 사업은 사업부지가 현 논산경찰서 위치로 변경된 이후 기존 청사 철거 및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 개량 및 보강을 위한 추가 공사비(이하 '현장여건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사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증가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재검토는 공사비를 기본공사비, 현장여건 공사비,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기본공사비는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 중 유사사례 단위공사비 검토를 통해 산정하고자 한다.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에서는 건축 부문 공사비 기준단가 산정 시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 나라장터 고시공고 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재검토는 현장여건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공사의 7개 공종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공하는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사례가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기본공사비는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장여건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현장여건 공사비는 중간설계내역서<sup>31)</sup>의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원가<sup>32)</sup>를 산정하기 위해 직접공사비에 대한 공사원가의 비율, 즉 원가요율을 적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중간설계내역서 작성 시점을 기준 연도로 보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공사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검토하였다. 다만 기본공사비와의 중복 계상을 피하기 위하여 기본공사비에 해당 비용 포함 여부 검토를 선행하였다.

31)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중 '공종별 중간설계내역서' 자료 참조

32)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원가'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이며, 이 중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

## 2) 용지보상비

본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2년에 이미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므로 용지보상비는 실제 집행된 비용을 준용하였다.

## 3) 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된다. 논산경찰서 신축사업은 2018년 1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최초 등록되었으므로 시설부대경비 중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해당 시점의 예산편성지침인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요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감리비는 발주 예상 시점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였다. 단 설계비의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기 계약금액을 준용하였다.

## 4) 예비비

예비비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예방 성격의 비용이다.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에 의거 타당성재조사 수행단계에 따라 총사업비 추정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점을 반영하여 사업단계별 예비비를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 본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의 도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이므로 예비비는 산정하지 않는다.

〈표 IV-4〉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구분	예비비 반영비율
사업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이전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1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5%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5.

## 2. 총사업비 추정

### 가. 공사비

#### 1) 요구안 공사비

요구안의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총 26,351백만원으로 기본공사비 20,903백만원, 현장여건 공사비 5,044백만원, 기타비용 404백만원이다. 공사비 세부내역은 조달청에서 진행한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와 충청남도경찰청의 1차 제출자료를 통해 받은 공사비 내역서를 근거로 하였으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IV-5〉 요구 공사비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비고
	VAT 포함	VAT 분리	
<b>공사비</b>	<b>26,351</b>	<b>26,351</b>	<b>연면적 감소, 물가변동, 기본공사비 단가 조정 비용 포함</b>
1-1. 기본공사비	20,903	19,003	-
1-2. 현장여건	5,044	4,585	-
1-2-1.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693	630	-
1-2-2. 흙막이 공사 적용	1,911	1,737	-
1-2-3. 기존 건물철거공사	1,511	1,374	-
1-2-4. 파일기초공사	929	845	-
1-3. 기타 비용	404	371	-
1-3-1.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39	35	-
1-3-2.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증가	304	276	-
1-3-3. 시설분담금 등	61	59	BF 본인증 및 한전/상수도/도시가스 인입 사용 전 검사 비용
1-4. 부가가치세	-	2,392	-

주: 부가가치세는 시설분담금 등을 제외한 금액 합계의 10%와 시설분담금 등의 제시된 부가가치세 2백만원의 합계

자료: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23. 7. 및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2) 기본공사비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재검토에서는 공사비 정보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 중 본 사업과 유사한 규모의 경찰관서 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사업은 연면적 10,000㎡ 이하 규모의 일반청사에 해당하며, 최근 2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한 일반청사 중 경찰서는 총 7건으로 파악된다. 이 중 옥천경찰서는 특수 설계<sup>33)</sup>를 적용하였기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주경찰서, 양평경찰서, 곡성경찰서, 부산수영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진안경찰서 6개소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표 IV-6〉 조달청(일반청사 경찰관서) 건축공사 사례 검토(2022~20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역	발주연도	대지면적	연면적	총공사비 <sup>1)</sup>	규모
옥천경찰서	충북	2023	15,360.0	6,561.5	20,358	B1/4F
충주경찰서	충북	2023	13,857.3	8,098.0	21,665	B1/5F
양평경찰서	경기	2022	9,944.0	9,521.0	26,012	B1/5F
곡성경찰서	전남	2022	6,290.0	6,149.1	15,213	B1/4F
부산수영경찰서	부산	2022	8,242.6	9,883.8	24,592	B1/6F
인천해양경찰서	인천	2022	14,089.6	8,520.0	22,399	B1/4F
진안경찰서	전북	2022	13,276.0	6,049.7	14,746	B1/3F

주: 1)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7. 18.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현장여건 공사비를 제외한 기본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각 사례의 공종별 공사비를 확인하여 현장여건 공사비가 포함된 경우는 해당 비용을 제외하였다.

먼저 현장여건 공사비는 해당 공종의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원가의 비율(이하 '원가요율')을 활용한 공사원가로 보정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한 현장여건 공사비와 관련 관급자재비를 총공사비에서 제외하여 각 사례의 기본공사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V-7〉과 같다.

33) 공사비정보광장의 설계특이사항에서 대강당지붕은 경량지붕+철골조를 적용하였으며, 포스트텐션 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됨

〈표 IV-7〉 현장여건 공사비를 제외한 기본공사비 산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구분	총공사비 [A]	현장 여건 관련 추가 비용 [B+C]							기본공사비 [A-(B+C)]
		직접공사비(㉔)				원가 요율 (㉖)	현장여건 공사비 B (㉔×㉖)	흙막이 관급자재비 [C]	
		해체 철거	흙막이 가시설	파일 공사	소계				
충주경찰서	19,695	419	-	-	419	144	603	-	19,093
양평경찰서	23,647	503	1,044	337	1,885	145	2,732	170	20,744
곡성경찰서	13,830	161	445	-	606	148	898	-	12,932
부산수영 경찰서	22,356	174	302	-	475	147	700	-	21,656
인천해양 경찰서	20,363	-	6	494	500	147	734	404	19,226
진안경찰서	13,406	-	204	-	204	151	308	-	13,098
평균	18,883	-	-	-	681	-	996	-	17,791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2. 현장여건 제외 총공사비는 총공사비에서 현장여건공사비와 흙막이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값임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7. 18.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단위면적(㎡)당 공사비 단가는 기본공사비를 건축연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격을 보정하였으며 6개 사례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평균은 2,260,852원이다. 조사한 사례 6개소 모두 2022년 이후 발주한 사업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공사비는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다.

〈표 IV-8〉 단위공사비 산정

(단위: 백만원, ㎡, 천원, %, 천원)

구분	발주연도	기본공사비	건축연면적	㎡당 공사비	기준시점 보정지수	㎡당 공사비 보정 결과	ZEB 적용
충주경찰서	2023	19,093	8,098.0	2,358	-	2,358	ZEB4
양평경찰서	2022	20,744	9,521.0	2,179	102.9	2,241	ZEB5
곡성경찰서	2022	12,932	6,149.1	2,103	102.9	2,163	ZEB5
부산 수영경찰서	2022	21,656	9,883.8	2,191	102.9	2,254	ZEB4
인천해양경찰서	2022	19,226	8,520.0	2,257	102.9	2,321	ZEB4
진안경찰서	2022	13,098	6,049.7	2,165	102.9	2,227	ZEB4
평균	-	17,791	8,036.9	2,209	-	<b>2,261</b>	-

주: 1. ㎡당 공사비는 현장여건을 제외한 총공사비의 ㎡당 금액임

2. 부가가치세 제외

3. 제로에너지 인증 여부는 <https://zeb.energy.or.kr>, '제로에너지 건축물'에서 확인함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7. 18.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요구안의 공사비는 2023년 1월 작성된 중간설계내역서를 반영하였으므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시점을 보정한 결과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2,342,896원/㎡이다. 조달청 유사 사례의 기본공사비 단가 평균은 2,260,852원/㎡로 요구안보다 82,044원/㎡ 적은 금액이나,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비 편차를 제거함으로써 준거 공사비로서 정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재검토에서 기본공사비 추정은 조달청 유사사례를 통해 도출한 단가 2,260,852원/㎡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요구안 190.03억원 대비 검토안은 188.69억원으로 1.34억원 감소하였으며, 대안은 174.59억원으로 15.44억원 감소하였다.

〈표 IV-9〉 기본공사비 단가 종합

(단위: 원/㎡)

구분	기본공사비 단가	비고
요구안(중간설계내역서)	2,342,896	기준연도로 보정
조달청 유사사례 평균	2,260,852	신재생에너지, ZEB 비용 포함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표 IV-10〉 기본공사비 추정 결과

(단위: ㎡, 원/㎡,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면적	8,346	8,346	7,723
단위공사비	2,342,896	2,260,852	2,260,852
1-1. 기본공사비	19,003	18,869	17,459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3) 현장여건 공사비

현장여건 공사비로 요구한 항목은 연약지반 개량공사, 흙막이 공사, 기존 건물 철거공사, 파일기초공사 비용으로 지반조사결과에 따른 지반 개량 및 보강 등을 위한 공사비이다.

본 재검토는 중간설계내역서의 현장여건 공사비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현장여건 공사비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직접공사비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간설계내역서의 원가요율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작업부산물 등이 포함된 공사원가로 보정하였다. 원가요율은 직접공사비에 대한 공사원가의 비율로, 요구안의 원가요율은 토목

143%, 건축 142%로 산정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간설계내역서는 2023년 1월 기준이므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적용으로 기준연도를 보정하였다.

〈표 IV-11〉 중간설계내역서 원가요율 산정

(단위: 원, %)

구분	총 공사원가(A)	직접공사비(B)	원가요율(A/B)
토목	1,206,320,000	841,887,923	143
건축	16,514,299,091	11,589,251,836	142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가)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본 사업은 지반조사 결과 연약지반 'S<sub>6</sub>' 등급에 해당하므로 부지 침하를 고려한 지반 개량 공사가 필요하다. 중간설계에서 연약지반개량 토공사는 압밀공법(PRE-LOADING)을 선정하여 계획하였다. 압밀공법은 구조물 시공에 앞서 계획 하중보다 큰 선행하중을 임시로 미리 성토하여 압밀을 촉진시키고 잔류침하를 없애 지반 강도를 증가시키는 개량공법을 말한다. 이 공법은 시공이 간단하며, 공사기간이 충분할 경우 공사비가 저렴하므로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였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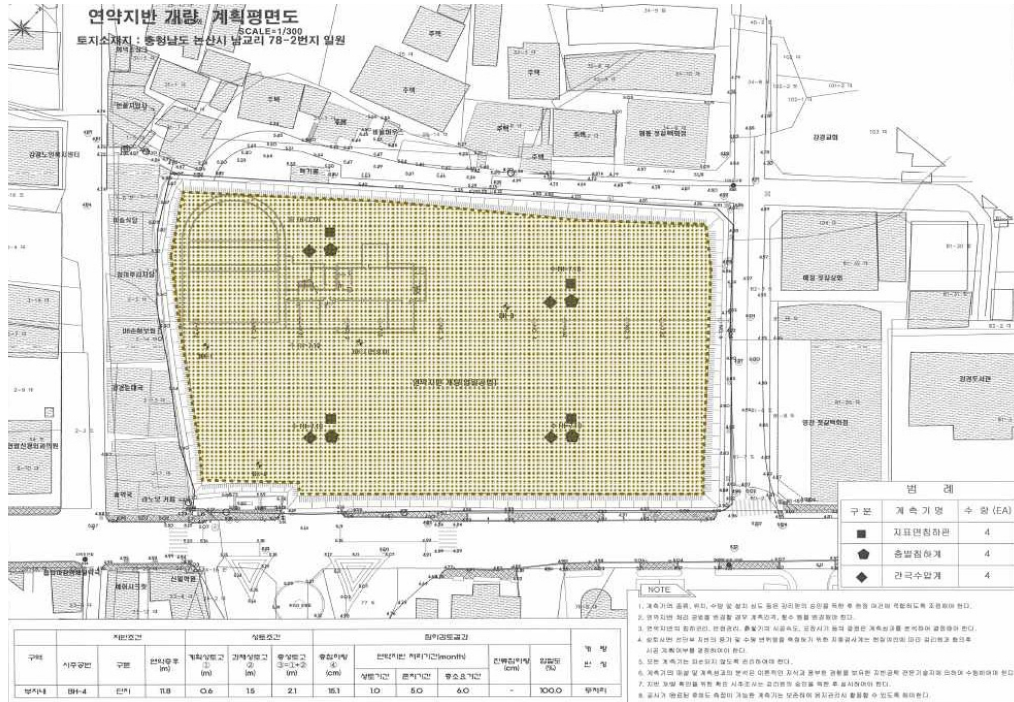
중간설계의 연약지반개량 계획에 따르면 토공사는 총 2.1m의 흙을 1개월 동안 성토한 후 5개월 동안 존치하여 총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된다.

〈표 IV-12〉 연약지반 개량 토공사 내용

지반조건	성토조건			총 침하량	침하검토결과		
	계획 성토고	과재 성토고	총 성토고		연약지반처리기간		
연약층후					성토기간	존치기간	총소요기간
11.8m	0.6m	1.5m	2.1m	15.1cm	1개월	5개월	6개월

자료: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23. 7.

〈표 IV-13〉 연약지반 개량 토공사 계획평면도



부지 개량 공사	- 흙쌓기/토사(다짐도 95%이상): 12,108 m <sup>3</sup>
	- 순성토 운반(토사 L: 14.8km): 14,948 m <sup>3</sup>

자료: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23. 7.

연약지반 보강공사는 매립한 토목 시설물 침하를 고려하여 C.G.S 그라우팅 천공 공법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주입재를 지중에 압입, 주입하여 지중에 덩어리를 확산시켜 주변의 밀도를 증가시키면서 지중에 원추형 고결체를 형성하여 지반을 보강하는 공법으로 개량 강도가 일정하며, 주변 지반의 압축강화 효과로 지반 개량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작업공정이 간단하며, 협소한 공간에 적합한 공법이므로 적절한 공법을 계획하였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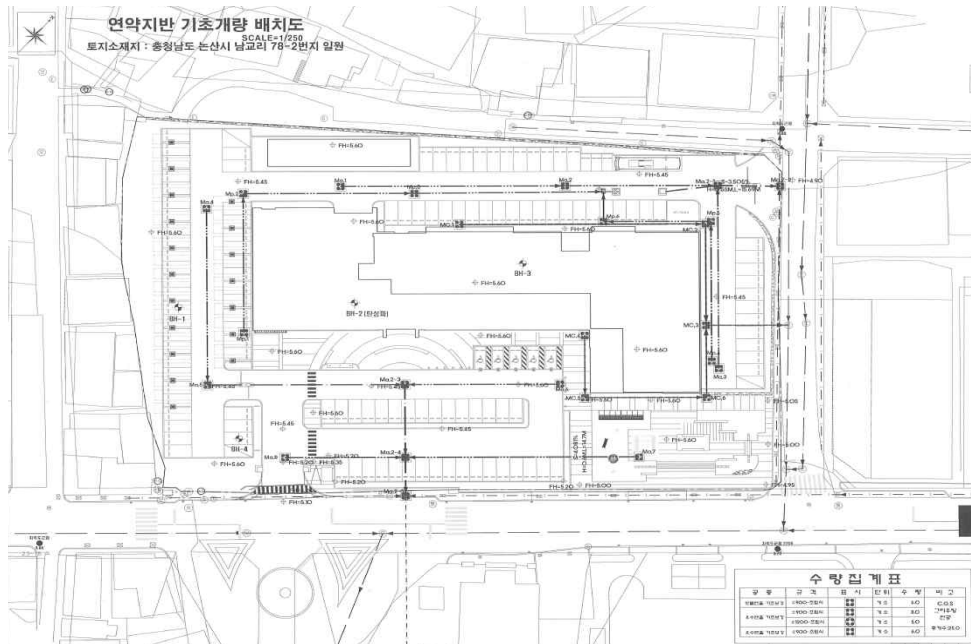
본 사업에서는 맨홀 기초보강 25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도면은 〈표 IV-15〉와 같다.

〈표 IV-14〉 연약지반 보강공사 내용

공종	규격	개소
빗물맨홀 기초보강	Ø900 - 조립식	6개소
우수맨홀 기초보강	Ø900 - 조립식	8개소
	Ø1,200 - 조립식	5개소
오수맨홀기초보강	Ø900 - 조립식	6개소
합계		25개소

자료: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23. 7.

〈표 IV-15〉 연약지반 보강공사 계획평면도



시설물 개량공사	- 측구터파기: 532m³	- 뒤메우기 및 다짐(콤팩터): 445m³
	-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30m³	- 레미콘(25-210-120): 30.6m³
	- 유로폼(간단.7m이하): 60m²	
	- 모래, 사질토, 풍화암 천공(73mm): 120m	
	- 점토, 토사층 천공(73mm): 980m	
	- C.G.S 주입(600mm): 931m	- Plant 설치: 1회
	- 시멘트(40kg入 포장품): 1,880포	

자료: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사업명: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23. 7.

중간설계내역서의 연약지반개량 공사비 항목에는 연약지반개량 토공사, 연약지반 보강공사 외에 계측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본 재검토에서는 요구안의 연약지반개량 토공사와 연약지반 보강공사와 함께 연약지반개량 계측공사 비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연약지반개량 공사비로 준용하고자 한다.

〈표 IV-16〉 중간설계내역서의 연약지반개량 시설공사 내역

(단위: 원)

공종	품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2.	연약지반개량시설공사					121,183,796		210,012,230		145,679,844		476,875,870	
1-1	연약지반개량 토공사					80,670,386		62,949,354		46,684,587		190,304,327	
1-2	연약지반 보강공사					40,513,410		147,062,876		50,106,785		237,683,071	
1-3	계측공사									48,888,472		48,888,472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중 '중간설계내역서\_토목내역서'의 해당 부분 발췌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는 중간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 477백만원에 토목 원가요율 143%를 적용하고 관급자재비 포함, 기준연도 보정하여 717백만원으로 검토되었다.

〈표 IV-17〉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구분	직접공사비 (A)	토목 원가요율 (B)	관급자재비 (C)	보정지수 (D)	금액 ((A×B)+(C))×(D)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477	143	13	102.9	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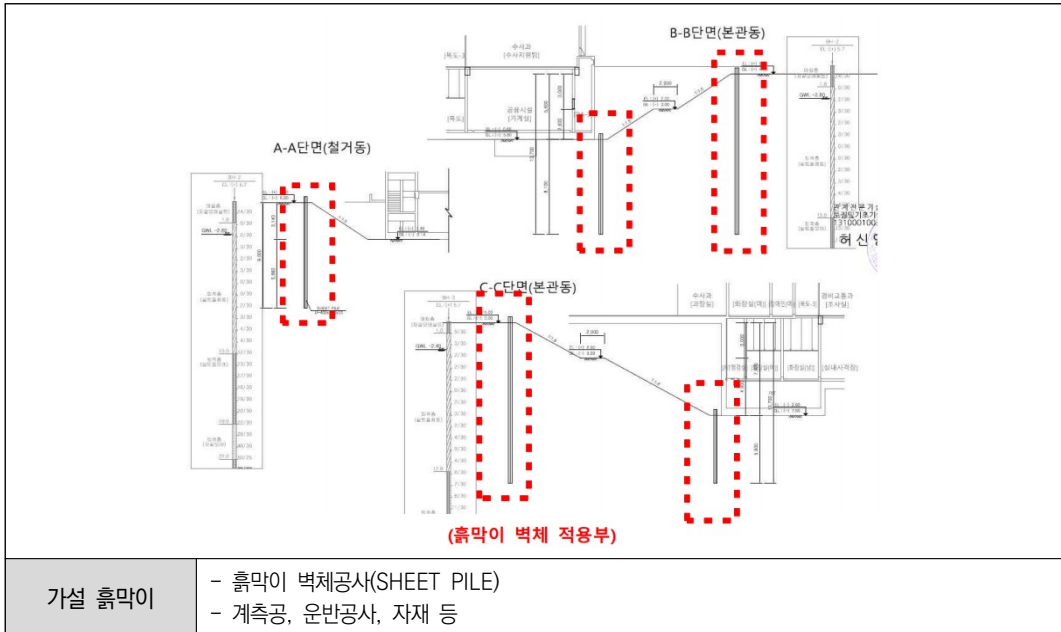
주: 1. 원가요율은 직접공사비를 순공사원가로 보정하기 위한 비율로 '원가요율=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의 산식으로 산정함  
2.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흙막이 공사비

요구안은 기존 청사의 지하층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중 지하층 공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 시트파일(SHEET-PILE)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 시트파일 공법은 시트파일을 지상에서 연속적으로 타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시공이 간단하며 차수 효과가 크므로 적절한 공법으로 판단된다.

[그림 IV-1] 흠막이 공사 설계 단면도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흠막이 공사비 또한 중간설계내역서를 검토하였으며, 직접공사비 1,312백만원에 건축 원가요율 142%를 적용하고 기준연도를 보정하여 1,924백만원으로 검토되었다.

〈표 IV-18〉 흠막이 공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 백만원)

구분	직접공사비	건축 원가요율	보정지수	금액
흠막이 공사비	1,312	142	102.9	1,924

주: 1. 원가요율은 직접공사비를 순공사원가로 보정하기 위한 비율로 '원가요율=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의 산식으로 산정함

2.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다)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

본 사업은 사업부지를 기존 부지면에서 변경하여 현 논산경찰서 청사 및 인접한 부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필요하므로 관련 비용 산정이 필요하다.

중간설계내역서 검토 결과 조경의 경우, 폐기 수량을 수목 종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공

사비 내역이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는 유사사례를 통해서는 철거공사비 검토가 어려우며, 토목 또한 본 사업부지의 고유의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비교 대상 선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토목, 조경 철거공사비는 중간설계내역서의 해당 비용을 준용하고자 한다. 건축 및 석면 철거공사비 또한 공사비 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중간설계내역서의 비용을 준용하였다. 단 건설폐기물처리비는 분석 기준연도로 보정한 금액과 기준연도 기준 단가를 사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비교 검토하였다.

중간설계내역서를 검토하여 확인한 직접공사비에 원가요율을 적용하고 기준연도 보정을 통해 산정한 철거공사비는 건축 444백만원, 토목 42백만원, 조경 12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IV-19〉 철거공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 백만원)

구분	직접공사비	원가요율 <sup>1)</sup>	보정지수	금액
건축 철거공사비	303	142	102.9	444
토목 철거공사비	28	143	102.9	42
조경 철거공사비	8	142	102.9	12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1) 원가요율은 직접공사비를 순공사원가로 보정하기 위한 비율로 '원가요율=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의 산식으로 산정함

자료: 연구진 작성

석면철거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석면 철거공사비 236백만원에 대해 기준시점을 보정하여 243백만원으로 검토되었다.

〈표 IV-20〉 석면 철거공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구분	공사비	보정지수	금액
석면 철거공사비 <sup>1)</sup>	236	102.9	243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1) 석면 철거공사비는 철거공사비 222백만원, 석면 철거 감리비 14백만원의 합임

자료: 연구진 작성

폐기물처리 비용은 중간설계내역서의 폐기물 용량에 한국건설자원협회의 「2024년도 건설 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한국건설자원협회, 2024. 1. 시행)의 중간처리단가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가연성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의 경우 중간설계내역서의 단가를 준용하였으며, 폐석면 처리

단가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2021. 12. 3.)의 단가 645,000원/톤을 준용하였다.

〈표 IV-21〉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2024)

(단위: 원/톤)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철거공사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28,516
	페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페아스팔트콘크리트	30,488
재건축· 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폐콘크리트, 페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7,205
	혼합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68,359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혼합 건설폐기물	분연성폐기물(폐유리, 페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66,426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70,497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상차비	15톤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폐기물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18,600/ 3,520

자료: 한국건설자원협회, 「2024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2024

폐기물처리비는 500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IV-22〉 폐기물처리비 추정

(단위: 톤, 원/톤, 백만원)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폐콘크리트	10,983.589	28,516	313	-
페아스팔트콘크리트	721.200	30,488	22	-
건설폐재류	2,059.242	47,205	97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135.235	68,359	9	-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77.348	170,497	13	-
가연성 폐기물	68.250	367,760	25	중간설계내역서 준용
임목폐기물	22.691	135,000	3	중간설계내역서 준용
폐석면	25.900	645,000	17	-
합계	14,093.455	1,492,825	500	-

주: 가연성폐기물, 임목폐기물 단가는 중간설계내역서 준용

자료: 연구진 작성

폐기물 운반비는 15톤 덤프트럭 30km 기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와 상차비 단가를 적용하여 310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때 가연성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비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량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표 IV-23〉 폐기물 운반비 추정

(단위: 톤, 원/톤, 백만원)

구분	수량	운반비 단가	금액
폐기물 운반비	14,002.514	22,120	310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중간설계내역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를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기준연도로 보정한 금액은 757백만원으로 검토되었다. 중간설계내역서의 폐기물 용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건설폐기물처리비는 810백만원으로 본 재검토에서 '2024년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한국건설자원협회, 2024. 1. 시행)를 사용해 재산정한 금액과 유사하므로 중간설계내역서를 준용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표 IV-24〉 건설폐기물처리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중간설계내역서	757	기준연도로 보정
재산정	810	중간설계내역서의 폐기물 용량을 기준으로 재산정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검토 결과,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건축·토목·조경 철거공사비, 석면철거공사비, 건설폐기물처리비를 합산하여 1,498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검토안과 대안의 비용은 같다.

〈표 IV-25〉 기존 건물 철거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A)	검토안·대안 (B)	증감 (B-A)	비고
건축 철거공사비	406	444	37	중간설계내역서 비용을 기준연도로 보정

〈표 IV-25〉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A)	검토안·대안 (B)	증감 (B-A)	비고
토목 철거공사비	41	42	1	중간설계내역서 비용을 기준연도로 보정
조경 철거공사비	13	12	-1	중간설계내역서 비용을 기준연도로 보정
석면 철거공사비	236	243	7	중간설계내역서 비용을 기준연도로 보정
건설폐기물처리비	678	757	79	중간설계내역서 비용을 기준연도로 보정
<b>합계</b>	<b>1,374</b>	<b>1,498</b>	<b>124</b>	-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라) 파일기초공사비

본 사업부지는 건축 공사 시 연약지반에 따른 건축물 침하 방지를 위해 파일기초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재검토에서는 중간설계의 파일길이 및 공사비를 검토하여 중간설계내역서의 비용을 준용하였다.

〈그림 IV-2〉 기초검토 산정 근거

말뚝기초 검토서										파일위치 및 길이 검토									
<b>■ 말뚝기초 검토서</b> · 말뚝기초 지지력 계산 통하여 PHC 500 파일길이 검토함. 1) 시주공번 : BH-1(검토조건 : 매입말뚝, 산규칙 최종 경타공법)										<b>■ 적절한 파일길이 검토 및 산정</b> 									
기초 현황	말뚝종류	기초계획고 (EL. m)	말뚝하단고 (EL. m)	원 지반고 (EL. m)	적용주상도 (P. 번)	착용하중 (t)	지하수위 (EL. m)	GL. m)											
	PHC 500	0.60	-34.90	0.00	BH-1	122.4	0.0	0.00											
말뚝 제원	직경 (D, mm)	파일무게 (t, mm)	탄성계수 (Ep, kg/cm <sup>2</sup> )	2차 모멘트 (Ip, cm <sup>4</sup> )	부식도막 (D, mm)	외경 (D, mm)	내경 (d, mm)	길이 (L, m)											
	500	80.0	4.00E+05	247.900	0.0	500.0	340.0	35.5											
토질 수	중내재하시율(지지율) Pol(H/m <sup>2</sup> )	PL(H/m <sup>2</sup> )	선단 N치		재료 σ sa (H/m <sup>2</sup> )														
	0	0.0	50		2,000														
2) 시주공번 : BH-2(검토조건 : 매입말뚝, 산규칙 최종 경타공법)																			
기초 현황	말뚝종류	기초계획고 (EL. m)	말뚝하단고 (EL. m)	원 지반고 (EL. m)	적용주상도 (P. 번)	착용하중 (t)	지하수위 (EL. m)	GL. m)											
	PHC 500	-1.30	-25.30	0.00	BH-2	122.4	0.0	0.00											
말뚝 제원	직경 (D, mm)	파일무게 (t, mm)	탄성계수 (Ep, kg/cm <sup>2</sup> )	2차 모멘트 (Ip, cm <sup>4</sup> )	부식도막 (D, mm)	외경 (D, mm)	내경 (d, mm)	길이 (L, m)											
	500	80.0	4.00E+05	247.900	0.0	500.0	340.0	24.0											
토질 수	중내재하시율(지지율) Pol(H/m <sup>2</sup> )	PL(H/m <sup>2</sup> )	선단 N치		재료 σ sa (H/m <sup>2</sup> )														
	0	0.0	50		2,000														
3) 시주공번 : BH-3(검토조건 : 매입말뚝, 산규칙 최종 경타공법)																			
기초 현황	말뚝종류	기초계획고 (EL. m)	말뚝하단고 (EL. m)	원 지반고 (EL. m)	적용주상도 (P. 번)	착용하중 (t)	지하수위 (EL. m)	GL. m)											
	PHC 500	-0.47	-24.87	0.00	BH-3	122.4	0.0	0.00											
말뚝 제원	직경 (D, mm)	파일무게 (t, mm)	탄성계수 (Ep, kg/cm <sup>2</sup> )	2차 모멘트 (Ip, cm <sup>4</sup> )	부식도막 (D, mm)	외경 (D, mm)	내경 (d, mm)	길이 (L, m)											
	500	80.0	4.00E+05	247.900	0.0	500.0	340.0	24.4											
토질 수	중내재하시율(지지율) Pol(H/m <sup>2</sup> )	PL(H/m <sup>2</sup> )	선단 N치		재료 σ sa (H/m <sup>2</sup> )														
	0	0.0	50		2,000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파일기초공사비는 중간설계내역서 직접공사비 404백만원에 건축 원가요율을 적용하고 관급자재비 포함, 기준연도 보정을 통해 902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IV-26〉 파일기초공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구분	직접공사비 (A)	건축 원가요율 <sup>1)</sup> (B)	관급자재비 (C)	보정지수 (D)	금액 ((A×B)+(C))×(D)
파일기초공사비	404	142	301	102.9	902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1) 원가요율은 직접공사비를 순공사원가로 보정하기 위한 비율로 '원가요율=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의 산식으로 산정함

자료: 연구진 작성

#### 4) 기타 비용

기본공사비, 현장여건 공사비 외에 추가되는 기타 비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비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비용 및 시설분담금 등이 있다.

#####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건물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는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본 시설에 의무 설치하여야 하는 전기자동차 주차대수가 기존 사업계획보다 증가하면서 주무부처에서는 설치 비용 증액을 요구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 IV-27〉과 같다.

〈표 IV-27〉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비율 개정

개정 전	2022. 1. 25. 개정 후
<p>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5]</p> <p><b>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b></p> <p>② 제18조의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p>	<p>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p> <p><b>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b>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b>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b>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lt;본조신설&gt;</p> <p><b>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b> ②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b>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b>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lt;후략&gt;</p>
<p>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20.]</p> <p><b>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b>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0.]</p> <p><b>제6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b></p> <p>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시설의 <b>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b>으로 한다.</p> <p><b>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b></p> <p>③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은 <b>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b>하여야 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요구안의 계획주차대수는 136대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은 총 7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중 급속 충전시설은 1대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요구안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기준에 부합하며, 당초 계획한 1대에서 7대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IV-28〉 전기차 및 급속 충전시설 설치 수량 산정

(단위: 대, %)

구분	법정 주차대수	요율	충전시설 수량
전기차 충전시설	136	5	7
급속 충전시설	7	10	1

자료: 연구진 작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비용 재산정에 앞서 공사비 중복 산정을 방지하고자 기본공사비 단가 산정에 사용한 유사사례 발주 시기 및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을 검토하였다. 유사사

례는 모두 상기 법령 개정 이후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평균 7대이다. 공사비 내역서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비용은 기본 공사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 공사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표 IV-29〉 유사사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충전기 설치 수량

(단위: 대)

구분	발주연도	주차대수	산정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
충주경찰서	2023	201	주차면수×5%	11
양평경찰서	2022	129		7
곡성경찰서	2022	64		4
부산 수영경찰서	2022	114		6
인천해양경찰서	2022	137		7
평균				7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비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관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상기 법령에 따라 본 사업은 사업 인허가 예상시점인 2024~202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4%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의 중복 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2023년에 발주한 유사사례에 이미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인 32%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분 2%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비를 추정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표 IV-30〉 유사사례 경찰서 단가 기준

구분	발주연도	의무공급비율	본 사업 공급 의무비율	추가 산정 비율
충주경찰서	2023	32%	34%	2%
양평경찰서	2022			
곡성경찰서	2022			
부산수영경찰서	2022			
인천해양경찰서	2022			

자료: 연구진 작성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추정 산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의 [별표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표 IV-31〉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식

$$\text{예상 에너지 사용량} = \text{건축 연면적} \times \text{단위 에너지사용량} \times \text{지역계수}$$

주: 건축 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별표2], 2024. 2. 21.

〈표 IV-32〉 단위에너지 사용량

(단위: kWh/m<sup>2</sup>·yr)

구분	단위에너지사용량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방송통신시설	490.18
	업무시설	371.6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별표2], 2024. 2. 21.

〈표 IV-33〉 지역계수

구분	지역계수
충남	0.9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별표2], 2024. 2. 21.

본 사업의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지역은 충남에 해당하므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에너지사용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34〉 에너지사용량 산정

(단위: m<sup>2</sup>, kWh/m<sup>2</sup>yr, kWh/yr)

구분	연면적	단위에너지사용량	지역계수	예상에너지사용량	비고
검토안	8,346.0	371.66	0.99	3,070,856	업무시설 /충남
대안	7,722.5	371.66	0.99	2,841,448	

주: 상기 연면적은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지 않는 시설의 면적이며, 단위에너지 사용량 및 보정계수는 업무시설을 적용하고, 지역계수는 충남 지역을 기준으로 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별표2], 2024. 2. 2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업 인허가 시점인 2025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34%를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표 IV-35〉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의 산식

$$\text{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frac{\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text{예상에너지 사용량}} \times 100$$

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별표2], 2024. 2. 21.

〈표 IV-36〉 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량 산정

(단위: kWh/yr, %)

구분	예상에너지사용량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량
검토안	3,070,856	34	1,044,091
대안	2,841,448	34	966,09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별표2], 2024. 2. 21.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논산경찰서 총사업비조정 심의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증가 비용은 태양광 설비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시 태양광(고정식)을 100%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앞서 산정

한 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량에 태양광(고정식)의 단위에너지생산량 1,358(kWh/kW·yr), 보정계수는 0.95를 적용한 태양광 설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IV-37〉 대안별 태양광 설치 규모 산정

(단위: kWh/yr, kWh/kW·yr, kW)

구분		신·재생에너지량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원별 설치규모
검토안	태양광	1,044,091	1,358	0.95	809
대안	태양광	966,092	1,358	0.95	749

주: 태양광의 설치 비율 100%로 산정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10], 2024. 1. 9.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34%를 기준으로 산출한 공사비에서 3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분 2%를 산정한 결과 검토안은 80백만원, 대안은 74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IV-38〉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비 종합

(단위: kW, 천원/kW, 백만원)

구분		원별 설치규모	원별 공사 단가	공사비 (34% 기준)	적용공사비 (2% 기준)
검토안	태양광	809	1,685	1,363	80
대안	태양광	749	1,685	1,261	74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설비가격 및 지원단가」, 게시일자: 2024. 4. 5.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비용 및 시설분담금

요구안에서는 기타비용으로 BF 본인증 비용, 한전 인입 비용, 상수도 인입 비용, 도시가스 인입 비용, 전기 사용 전 검사 비용으로 61백만원을 제시하였다.

〈표 IV-39〉 BF 본인증 비용 및 시설분담금

(단위: 백만원)

구분	비용	비고
BF 본인증	5	-
한전 인입	17	-
상수도 인입	35	부가가치세 별도 비용
도시가스 인입	1	부가가치세 별도 비용
전기 사용 전 검사	1	-
부가가치세	2	BF본인증, 한전 인입, 전기 사용 전 검사
총계	61	-

자료: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자료」, 2024. 4.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요구안에서는 BF 본인증 비용을 공사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BF 본인증 시기를 관련 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이후<sup>34)</sup>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요구안을 준용하여 BF 본인증 비용을 공사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본 사업은 3,000㎡ 이상~10,000㎡ 미만인 제4구간에 해당하므로 BF본인증 심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319,600원으로 확인된다.

〈표 IV-40〉 개별시설 BF 본인증 수수료

(단위: 원)

구분	300㎡ 미만 (제1구간)	300㎡ 이상 ~1,000㎡ 미만 (제2구간)	1,000㎡ 이상 ~3,000㎡ 미만 (제3구간)	3,000㎡ 이상 ~10,000㎡ 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기준 수수료	4,030,000				
본인증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3호)」, [별표8], 2018. 8.

34) BF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예비인증은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에, 본인증은 관련 공사완료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를 신청 시기로 제시하고 있음

〈표 IV-41〉 BF 본인증 심사수수료 산정

(단위: 원)

구분	인증수수료	부가가치세	금액
심사수수료	4,836,000	483,600	5,319,600

자료: 연구진 작성

시설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건축물 신·증축으로 유틸리티(상·하수도, 전기, 가스)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본 사업의 시설부담금은 한전 인입 비용, 상수도 인입 비용, 도시가스 인입 비용, 전기 사용 전 검사 비용으로 구성된다.

한전 인입 비용은 17,600,000원, 사용 전 검사비는 1,228,941원으로 한전불입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20,711,000원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수도 인입 부담금은 비가정용 75mm 증규모 원인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35,000,000원으로 검토되었다. 도시가스 인입 부담금은 25등급 계량기 기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7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3] 한전불입금 및 사용 전 검사비 산정 근거

한전불입금					사용 전 검사비																																																																																																																					
[ 한 전 불 입 금 ]																																																																																																																										
- 수전전압 22,900[V]					- 수전용량 800[kW]																																																																																																																					
					- 발전기용량 175[kW]																																																																																																																					
1. 한전불입금					2. 사용전검사비																																																																																																																					
1) 기본공/변					1) 수용설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본 금액</th> <th>단위</th> <th>수량</th> <th>합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가공공급</td> <td>매 1제역에 대하여 제역전력 5kW까지</td> <td>제압</td> <td>277,000</td> <td>건당</td> <td>-</td> </tr> <tr> <td>제역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td> <td>제압</td> <td>110,000</td> <td>kW</td> <td>-</td> </tr> <tr> <td rowspan="2">저공공급</td> <td>신공설 제역전력 매 1kW에 대하여</td> <td>교압 또는 특별교압</td> <td>220,000</td> <td>kW</td> <td>800</td> </tr> <tr> <td>매 1제역에 대하여 제역전력 5kW까지</td> <td>제압</td> <td>531,000</td> <td>건당</td> <td>-</td> </tr> <tr> <td rowspan="2">가공공급</td> <td>제역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td> <td>제압</td> <td>108,000</td> <td>kW</td> <td>-</td> </tr> <tr> <td>신공설 제역전력 매 1kW에 대하여</td> <td>교압 또는 특별교압</td> <td>460,000</td> <td>kW</td> <td>-</td> </tr> <tr> <td colspan="4"></td> <td>소계</td> <td>17,600,0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 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가공공급	매 1제역에 대하여 제역전력 5kW까지	제압	277,000	건당	-	제역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제압	110,000	kW	-	저공공급	신공설 제역전력 매 1kW에 대하여	교압 또는 특별교압	220,000	kW	800	매 1제역에 대하여 제역전력 5kW까지	제압	531,000	건당	-	가공공급	제역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제압	108,000	kW	-	신공설 제역전력 매 1kW에 대하여	교압 또는 특별교압	460,000	kW	-					소계	17,60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본금액</th> <th>단위</th> <th>수량</th> <th>합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료</td> <td>전압 300kW까지</td> <td>기본료</td> <td>84,000</td> <td>건당</td> <td>-</td> </tr> <tr> <td>전압 500kW까지</td> <td>기본료</td> <td>288,000</td> <td>건당</td> <td>-</td> </tr> <tr> <td rowspan="2">kW당 요금</td> <td>전압 1,000kW이상</td> <td>기본료</td> <td>988,000</td> <td>건당</td> <td>1</td> </tr> <tr> <td>전압 300kW까지</td> <td>kW당</td> <td>478,000</td> <td>kW</td> <td>-</td> </tr> <tr> <td rowspan="2">kW당 요금</td> <td>전압 500kW까지</td> <td>kW당</td> <td>391,000</td> <td>kW</td> <td>-</td> </tr> <tr> <td>전압 300kW까지</td> <td>kW당</td> <td>690,000</td> <td>kW</td> <td>-</td> </tr> <tr> <td rowspan="2">kW당 요금</td> <td>전압 300kW까지</td> <td>kW당</td> <td>915,000</td> <td>kW</td> <td>800</td> </tr> <tr> <td>전압 1,000kW까지</td> <td>kW당</td> <td>288,000</td> <td>kW</td> <td>-</td> </tr> <tr> <td rowspan="2">kW당 요금</td> <td>전압 1,001~100,000kW까지</td> <td>kW당</td> <td>152,000</td> <td>kW</td> <td>-</td> </tr> <tr> <td>전압 100,000kW초과</td> <td>kW당</td> <td>82,000</td> <td>kW</td> <td>-</td> </tr> <tr> <td colspan="4"></td> <td>소계</td> <td>811,000</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기본료	전압 300kW까지	기본료	84,000	건당	-	전압 500kW까지	기본료	288,000	건당	-	kW당 요금	전압 1,000kW이상	기본료	988,000	건당	1	전압 300kW까지	kW당	478,000	kW	-	kW당 요금	전압 500kW까지	kW당	391,000	kW	-	전압 300kW까지	kW당	690,000	kW	-	kW당 요금	전압 300kW까지	kW당	915,000	kW	800	전압 1,000kW까지	kW당	288,000	kW	-	kW당 요금	전압 1,001~100,000kW까지	kW당	152,000	kW	-	전압 100,000kW초과	kW당	82,000	kW	-					소계	811,000
구분	기본 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가공공급	매 1제역에 대하여 제역전력 5kW까지	제압	277,000	건당	-																																																																																																																					
	제역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제압	110,000	kW	-																																																																																																																					
저공공급	신공설 제역전력 매 1kW에 대하여	교압 또는 특별교압	220,000	kW	800																																																																																																																					
	매 1제역에 대하여 제역전력 5kW까지	제압	531,000	건당	-																																																																																																																					
가공공급	제역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제압	108,000	kW	-																																																																																																																					
	신공설 제역전력 매 1kW에 대하여	교압 또는 특별교압	460,000	kW	-																																																																																																																					
				소계	17,600,000																																																																																																																					
구분	기본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기본료	전압 300kW까지	기본료	84,000	건당	-																																																																																																																					
	전압 500kW까지	기본료	288,000	건당	-																																																																																																																					
kW당 요금	전압 1,000kW이상	기본료	988,000	건당	1																																																																																																																					
	전압 300kW까지	kW당	478,000	kW	-																																																																																																																					
kW당 요금	전압 500kW까지	kW당	391,000	kW	-																																																																																																																					
	전압 300kW까지	kW당	690,000	kW	-																																																																																																																					
kW당 요금	전압 300kW까지	kW당	915,000	kW	800																																																																																																																					
	전압 1,000kW까지	kW당	288,000	kW	-																																																																																																																					
kW당 요금	전압 1,001~100,000kW까지	kW당	152,000	kW	-																																																																																																																					
	전압 100,000kW초과	kW당	82,000	kW	-																																																																																																																					
				소계	811,000																																																																																																																					
2) 가변공/변					2) 발전기공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본 금액</th> <th>단위</th> <th>수량</th> <th>합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가공공급</td> <td>기본기기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td> <td>제압</td> <td>420,000</td> <td>M</td> <td>-</td> </tr> <tr> <td>교압 또는 특별교압</td> <td>460,000</td> <td>M</td> <td>-</td> </tr> <tr> <td rowspan="2">저공공급</td> <td>기본기기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td> <td>제압</td> <td>640,000</td> <td>M</td> <td>-</td> </tr> <tr> <td>교압 또는 특별교압</td> <td>117,000</td> <td>M</td> <td>-</td> </tr> <tr> <td colspan="4"></td> <td>소계</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 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가공공급	기본기기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제압	420,000	M	-	교압 또는 특별교압	460,000	M	-	저공공급	기본기기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제압	640,000	M	-	교압 또는 특별교압	117,000	M	-					소계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본금액</th> <th>단위</th> <th>수량</th> <th>합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료</td> <td>용량 300kW까지</td> <td>기본료</td> <td>88,000</td> <td>건당</td> <td>1</td> </tr> <tr> <td>용량 300kW초과</td> <td>기본료</td> <td>293,000</td> <td>건당</td> <td>-</td> </tr> <tr> <td rowspan="2">kW당 요금</td> <td>용량 50,000W이하</td> <td>기본료</td> <td>3,804,000</td> <td>건당</td> <td>-</td> </tr> <tr> <td>용량 300kW까지</td> <td>기본료</td> <td>203,000</td> <td>kW</td> <td>175</td> </tr> <tr> <td rowspan="2">kW당 요금</td> <td>용량 300kW초과</td> <td>500kW까지</td> <td>177,000</td> <td>kW</td> <td>-</td> </tr> <tr> <td></td> <td>501~1,000kW까지</td> <td>109,000</td> <td>kW</td> <td>-</td> </tr> <tr> <td rowspan="2">kW당 요금</td> <td>용량 300kW초과</td> <td>1,001~5,000kW까지</td> <td>86,000</td> <td>kW</td> <td>-</td> </tr> <tr> <td></td> <td>5,001~10,000kW까지</td> <td>47,000</td> <td>kW</td> <td>-</td> </tr> <tr> <td rowspan="2">kW당 요금</td> <td>용량 300kW초과</td> <td>10,000kW초과</td> <td>7,000</td> <td>kW</td> <td>-</td> </tr> <tr> <td></td> <td>10,000kW까지</td> <td>34,000</td> <td>kW</td> <td>-</td> </tr> <tr> <td rowspan="2">kW당 요금</td> <td>용량 50,000W이하</td> <td>10,000kW초과</td> <td>18,000</td> <td>kW</td> <td>-</td> </tr> <tr> <td colspan="4"></td> <td>소계</td> <td>123,525</td> </tr> <tr> <td colspan="4"></td> <td>합계</td> <td>934,525</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기본료	용량 300kW까지	기본료	88,000	건당	1	용량 300kW초과	기본료	293,000	건당	-	kW당 요금	용량 50,000W이하	기본료	3,804,000	건당	-	용량 300kW까지	기본료	203,000	kW	175	kW당 요금	용량 300kW초과	500kW까지	177,000	kW	-		501~1,000kW까지	109,000	kW	-	kW당 요금	용량 300kW초과	1,001~5,000kW까지	86,000	kW	-		5,001~10,000kW까지	47,000	kW	-	kW당 요금	용량 300kW초과	10,000kW초과	7,000	kW	-		10,000kW까지	34,000	kW	-	kW당 요금	용량 50,000W이하	10,000kW초과	18,000	kW	-					소계	123,525					합계	934,525		
구분	기본 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가공공급	기본기기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제압	420,000	M	-																																																																																																																					
	교압 또는 특별교압	460,000	M	-																																																																																																																						
저공공급	기본기기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제압	640,000	M	-																																																																																																																					
	교압 또는 특별교압	117,000	M	-																																																																																																																						
				소계	-																																																																																																																					
구분	기본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기본료	용량 300kW까지	기본료	88,000	건당	1																																																																																																																					
	용량 300kW초과	기본료	293,000	건당	-																																																																																																																					
kW당 요금	용량 50,000W이하	기본료	3,804,000	건당	-																																																																																																																					
	용량 300kW까지	기본료	203,000	kW	175																																																																																																																					
kW당 요금	용량 300kW초과	500kW까지	177,000	kW	-																																																																																																																					
		501~1,000kW까지	109,000	kW	-																																																																																																																					
kW당 요금	용량 300kW초과	1,001~5,000kW까지	86,000	kW	-																																																																																																																					
		5,001~10,000kW까지	47,000	kW	-																																																																																																																					
kW당 요금	용량 300kW초과	10,000kW초과	7,000	kW	-																																																																																																																					
		10,000kW까지	34,000	kW	-																																																																																																																					
kW당 요금	용량 50,000W이하	10,000kW초과	18,000	kW	-																																																																																																																					
					소계	123,525																																																																																																																				
				합계	934,525																																																																																																																					
3) 참가인공/사					3) 태양광발전설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본 금액</th> <th>단위</th> <th>수량</th> <th>합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가공공급</td> <td>기본기기를 초과하는 참가 거리 매 1m에 대하여</td> <td>제압</td> <td>500,000</td> <td>M</td> <td>-</td> </tr> <tr> <td>교압 또는 특별교압</td> <td>100,000</td> <td>M</td> <td>-</td> </tr> <tr> <td colspan="4"></td> <td>소계</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 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가공공급	기본기기를 초과하는 참가 거리 매 1m에 대하여	제압	500,000	M	-	교압 또는 특별교압	100,000	M	-					소계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본금액</th> <th>단위</th> <th>수량</th> <th>합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료</td> <td>용량 20kW까지</td> <td>기본료</td> <td>81,300</td> <td>건당</td> <td>-</td> </tr> <tr> <td>용량 20kW초과</td> <td>기본료</td> <td>138,000</td> <td>건당</td> <td>1</td> </tr> <tr> <td rowspan="2">kW당 요금</td> <td>용량 20kW까지</td> <td></td> <td>292,000</td> <td>kW</td> <td>-</td> </tr> <tr> <td>용량 20kW초과</td> <td></td> <td>611,000</td> <td>kW</td> <td>256</td> </tr> <tr> <td colspan="4"></td> <td>합계</td> <td>294,416</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기본료	용량 20kW까지	기본료	81,300	건당	-	용량 20kW초과	기본료	138,000	건당	1	kW당 요금	용량 20kW까지		292,000	kW	-	용량 20kW초과		611,000	kW	256					합계	294,416																																																									
구분	기본 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가공공급	기본기기를 초과하는 참가 거리 매 1m에 대하여	제압	500,000	M	-																																																																																																																					
	교압 또는 특별교압	100,000	M	-																																																																																																																						
				소계	-																																																																																																																					
구분	기본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기본료	용량 20kW까지	기본료	81,300	건당	-																																																																																																																					
	용량 20kW초과	기본료	138,000	건당	1																																																																																																																					
kW당 요금	용량 20kW까지		292,000	kW	-																																																																																																																					
	용량 20kW초과		611,000	kW	256																																																																																																																					
				합계	294,416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본금액</th> <th>단위</th> <th>수량</th> <th>합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td> <td>합계(1+2)</td> <td>18,828,941</td> </tr> <tr> <td colspan="4"></td> <td>부가가치세</td> <td>1,882,894</td> </tr> <tr> <td colspan="4"></td> <td>총계</td> <td>20,711,835</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합계(1+2)	18,828,941					부가가치세	1,882,894					총계	20,711,835																																																																																									
구분	기본금액	단위	수량	합계	비고																																																																																																																					
				합계(1+2)	18,828,941																																																																																																																					
				부가가치세	1,882,894																																																																																																																					
				총계	20,711,835																																																																																																																					

자료: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자료」, 2024. 4.

[그림 IV-4] 상수도 및 도시가스 인입 분담금 산정 근거

상수도 인입 분담금	도시가스 인입 분담금
<p>국수공사 계약공사비                      ○ 분담사명 : "이글루" &lt;anad899@nongae.kr&gt; 주소록추가: 수신확인</p> <p>일반 컴퓨터 1개 (1.82MB) 종료됨                      ● 파일: hepa (2MB) PC 파일 기록보기: 삭제하기</p> <p>국수공사비 산정시(시설공사비+환전자부담금+자재비(계량기, 보조용))으로                      논산시 상수도 급수조계 및 논산시 상수도 환전자부담금산정장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 장수 후 환전자부담금을 포함한 국수공사비 산정후 공사잔액이 됩니다.</p> <p>무연상 및 불연해부산 연면적 기준으로는 환전자 부담금 산정시 용규로써 해당되는 부분으로                      배기정를 75mm 용규로 환전자 부담금을 포함한 국수공사비는 35,000,000원~40,000,000원으로 책상됩니다.</p> <p>위에 달음드린 금액은 현장실측 및 관련자료를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된 계량 공사비임을 안내드립니다.</p> 	<p>논산경찰서 신축공사 분담금 안내                      ● 분담사명 : "이글루" &lt;nylee@corporation.com&gt; 주소록추가: 수신확인</p> <p>시설분담금: 25등급 계량기 1EA 기준 약 70만원(부가세 별도)</p> <p>해당 시설분담금은 공사 현장 여건 및 실제 연소기 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자료: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자료」, 2024. 4.

본 재검토에서는 시설분담금의 산출 근거를 검토하여 요구안의 비용을 준용하였다. 다만 검토된 시설부담금은 개략 산정된 비용이므로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IV-42> BF본인증 비용 및 시설분담금 검토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A)	검토안·대안(B)	비고
BF본인증	5	5	-
한전 인입	17	17	-
상수도 인입	35	35	부가가치세 별도 비용
도시가스 인입	1	1	부가가치세 별도 비용
전기 사용 전 검사	1	1	-
부가가치세	2	2	BF본인증, 한전 인입, 전기 사용 전 검사
총계	61	61	-

자료: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조정 심의자료」, 2024. 4.

라) 기타 비용 종합

검토안의 기타 비용은 요구안 대비 232백만원 감소한 139백만원, 대안은 238백만원 감소한 133백만원으로 검토되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비는 기본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어 반영하지 않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은 인허가 시점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증가분 2%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BF 본인증 비용 및 시설분담금은 요구안의 비용을 준용하였다.

〈표 IV-43〉 기타비용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비고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35	-	-35	-	-35	기본공사비에 포함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증가	276	80	-196	74	-202	공급의무비율 증가분 반영
시설분담금 등	59	59	-	59	-	요구안 준용
합계	371	139	-232	133	-238	-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5) 공사비 종합

본 사업의 공사비를 기본공사비, 현장여건 공사비,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검토안의 공사비는 요구안 대비 99백만원 증가한 26,450백만원, 대안은 1,459백만원 감소한 24,892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공사비의 주요 변동 원인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본공사비 단가의 재산정에 기인하고 있다. 기본공사비는 시설규모 감소로 대안의 공사비가 감소하였고, 중간설계내역서 검토를 통해 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재산정한 현장여건 공사비는 증가하였으며, 기타 비용에서는 공사비 중복계상 검토를 통해 일부 항목이 제외되었다.

〈표 IV-44〉 공사비 추정 결과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비고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b>1. 공사비</b>	<b>26,351</b>	<b>26,450</b>	<b>99</b>	<b>24,892</b>	<b>-1,459</b>	-
1-1. 기본공사비	19,003	18,869	-134	17,459	-1,543	-
1-2. 현장여건	4,585	5,040	455	5,040	455	중간설계비용 준용
1-2-1. 연약지반 개량공사비	630	717	87	717	87	-
1-2-2. 흙막이 공사 적용	1,737	1,924	187	1,924	187	-
1-2-3. 기존 건물철거 공사	1,374	1,498	124	1,498	124	-
1-2-4. 파일기초공사	845	902	57	902	57	-
1-3. 기타 비용	371	139	-232	133	-238	-
1-3-1.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35	-	-35	-	-35	공사비에 포함
1-3-2.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증가	276	80	-196	74	-202	-
1-3-3. 시설분담금 등	59	59	-	59	-	요구안 준용
<b>소계</b> (1-1)+(1-2)+(1-3-1)+(1-3-2)	23,900	23,990	90	22,574	-1,326	시설분담금 등 제외
1-4. 부가가치세	2,392	2,401	9	2,259	-133	-

주: 부가가치세는 시설분담금 등을 제외한 공사비 합계의 10%와 시설분담금 등의 제시된 부가가치세 2백만원의 합계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보상비

본 사업은 당초 부적면의 국유지에 이전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현 논산경찰서가 위치한 강경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2019년 6월 논산경찰서 현재 현 청사 인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확장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매입이 필요한 인접 부지의 토지보상비 산정이 필요하다.

충남경찰청에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1년에서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 용지매입이 완료되었으므로 본 재검토에서는 부지확보에 실제 소요된 용지 매입비용 및 관련부대비 총 4,157백만원을 용지보상비로 준용하였다.

〈표 IV-45〉 토지보상비 집행 내역

(단위: 원)

구분	집행금액	비고
용지비	4,149,366,000	-
관련부대비	7,604,100	감정평가수수료,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
총계	4,156,970,100	-

자료: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다. 시설부대경비

본 재검토에서 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여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비용을 검토하였다. 본 사업은 이미 기본설계가 진행되어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단계로 이미 설계계약이 완료되었고 설계비 일부가 집행되었다. 또한 사업초기에 필요한 조사·측량 등이 완료되었으므로 조사·측량비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설부대경비는 앞서 추정된 검토안 및 대안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요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다음의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다.

$$Y = y_1 - \frac{(X - x_2) \times (y_1 - y_2)}{(x_1 - x_2)}$$

X: 당해 금액

$x_1$ : 큰 금액

$x_2$ : 작은 금액

Y: 당해 공사비 요율

$y_1$ : 작은 금액 요율

$y_2$ : 큰 금액 요율

##### 1) 설계비

본 사업은 이미 기본설계가 진행되어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단계로 이미 설계 계약 및 일부 설계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요구안에서도 설계비에 대한 증액 요구가 없었으므로 설계비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의 기계약 비용을 준용하였다.

이에 따라 검토안 및 대안의 설계비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기계약금액 814백만원을 준용하므로 요구안 대비 77백만원 감소한다.

〈표 IV-46〉 설계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비고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설계비	891	814	-77	814	-77	-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2) 감리비

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대상<sup>35)</sup>에 해당하므로 전면 책임감리를 기준으로 감리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책임감리비는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도면 검토,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구조물 규격에 대한 검토 확인, 사용 자재의 적합성 확인,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 확인,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본 사업의 감리는 2025년 이후 발주하게 될 예정이므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4. 5.)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업무시설 중 공공청사 용도에 해당하는 ‘보통’의 공종 요율을 적용하였다.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직선보간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 검토안은 7.65%, 대안은 7.82%이며, 각각의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감리비는 검토안 1,839백만원, 대안 1,769백만원이다.

35)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표 IV-47〉 건축설계 대가요율(감리비)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li> <li>• 창고시설</li> <li>•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li> <li>• 축사등 동물 관련 시설</li> <li>•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 관련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li> <li>• 기숙사</li> <li>• 근린생활시설</li> <li>•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 공공시설</li> <li>• 종교시설</li> <li>•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li> <li>• 학교, 교육원 등 교육 연구시설</li> <li>• 묘지 관련 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숙박시설</li> <li>• 교도소등 교정시설</li> <li>• 판매시설</li> <li>•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li> <li>•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li> <li>•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li> <li>• 박물관 등 전시시설</li> <li>• 의료시설</li> <li>•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등 운수시설</li> <li>•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li> <li>• 분뇨·쓰레기처리 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li> </ul>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표 IV-48〉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단위: %)

공사비 (억원)	개선요율			비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9.66	10.73	11.80	-
200	7.34	<b>8.14</b>	8.97	
300	6.24	<b>6.92</b>	7.62	
400	5.48	6.09	6.70	
500	4.96	5.52	6.07	
700	4.38	4.87	5.35	
1,000	3.93	4.36	4.79	

주: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함

2. 5,000억원 초과인 경우 개선요율은 단순=12,933.1967×(공사비)-0.3230, 보통=14,498.7284×(공사비)-0.3234, 복잡=16,006.0775×(공사비)-0.3236 적용함

3. 위 기준요율은 20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2020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름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표 IV-49〉 감리비 추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구분	기준공사비 <sup>1)</sup>	적용 요율	금액
검토안	24,043	7.65	1,839
대안	22,628	7.82	1,769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1) 기준공사비에서 BF인증비용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공고료 및 수용비, 공사감독 및 연락 등에 따르는 여비, 각종 수수료 등에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경비이다.

시설부대비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최초 등록한 시기를 감안하여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7. 4.)에 제시되어 있는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였다.

〈표 IV-50〉 시설부대비 요율

(단위: 억원, %)

공사비	시설부대비 요율
100	0.25
200	<b>0.23</b>
300	<b>0.23</b>
500	0.23
1,000	0.23
2,000	0.21
3,000	0.19
5,000	0.17

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은 시설부대비 기준요율의 50%를 가산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4.

시설부대비 요율은 검토안 및 대안 모두 기준공사비의 0.23%이며, 이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설부대비는 검토안 55백만원, 대안 52백만원이다.

〈표 IV-51〉 시설부대비 추정

(단위: 백만원, %, 백만원)

구분	기준공사비 <sup>1)</sup>	적용 효율	금액
검토안	24,043	0.23	55
대안	22,628	0.23	52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1) 기준공사비에서 BF인증비용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4) 시설부대경비 종합

사업 추진 경과와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부대경비를 검토한 결과 검토안은 요구안 대비 182백만원 감소한 2,978백만원이며, 대안은 요구안 대비 261백만원 감소한 2,899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IV-52〉 시설부대경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비고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설계비	891	814	-77	814	-77	기계약금액 준용
감리비	1,926	1,839	-88	1,769	-157	-
시설부대비	55	55	-	52	-3	-
부가가치세	287	271	-17	264	-24	-
합계	3,160	2,978	-182	2,899	-261	-

자료: 연구진 작성

#### 라. 예비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단계에서는 발생 가능한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산출된 사업비에 대하여 0~10%의 예비비를 책정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7조 제6항에 따라 예비비는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설계의 시행 등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비용 항목이 확정되는 단계에는 예비비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타당성재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

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에 따르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단계에서는 예비비의 반영비율을 '0%'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로 요구안에서도 예비비를 제시하지 않았고 본 재검토에서도 예비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았다.

〈표 IV-53〉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구분	요구안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이전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1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5%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5.

#### 마. 총사업비 종합

총사업비 추정 경과, 요구안 33,670백만원 대비 검토안은 85백만원 감소한 33,585백만원, 대안은 1,722백만원 감소한 31,948백만원으로 검토되었다.

검토안의 경우 요구안의 면적과 동일하고 공사비 검토 시 일부 항목을 제외하였으나, 중간설계 내역서를 준용하여 기준시점을 보정한 현장여건 공사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설부대경비 중 설계비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기계약금액을 준용하고, 기준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감소하여 총사업비는 소폭 감소하였다.

대안의 경우 2024년 4월 최신 정원을 기준으로 시설 규모를 재검토하였고 유치장을 광역유치장에서 일반유치장으로 적용함에 따라 전체 연면적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그에 따른 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가 감소하여 총사업비 또한 감소하였다.

본 재검토에서 추정한 총사업비의 종합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4〉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안	검토안		대안		비고
	금액(A)	금액(B)	증감 (B-A)	금액(C)	증감 (C-A)	
<b>총사업비</b>	<b>33,670</b>	<b>33,585</b>	<b>-85</b>	<b>31,948</b>	<b>-1,722</b>	-
<b>1. 공사비</b>	<b>26,351</b>	<b>26,450</b>	<b>99</b>	<b>24,892</b>	<b>-1,459</b>	-
1-1. 기본공사비	19,003	18,869	-134	17,459	-1,543	-
1-2. 현장여건	4,585	5,040	455	5,040	455	중간설계비용 준용
1-2-1.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	630	717	87	717	87	-
1-2-2. 흙막이 공사 적용	1,737	1,924	187	1,924	187	-
1-2-3. 기존 건물철거 공사	1,374	1,498	124	1,498	124	-
1-2-4. 파일기초공사	845	902	57	902	57	-
1-3. 기타 비용	371	139	-232	133	-238	-
1-3-1.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35	-	-35	-	-35	공사비에 포함
1-3-2.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증가	276	80	-196	74	-202	-
1-3-3. 시설분담금 등	59	59	-	59	-	요구안 준용
1-4. 부가가치세	2,392	2,401	9	2,259	-133	-
<b>2. 보상비</b>	<b>4,159</b>	<b>4,157</b>	<b>-2</b>	<b>4,157</b>	<b>-2</b>	-
<b>3. 시설부대경비</b>	<b>3,160</b>	<b>2,978</b>	<b>-182</b>	<b>2,899</b>	<b>-261</b>	-
3-1. 설계비	891	814	-77	814	-77	기계약금액 준용
3-2. 감리비	1,926	1,839	-88	1,769	-157	-
3-3. 시설부대비	55	55	-	52	-3	-
3-4. 부가가치세	287	271	-17	264	-24	-

주: 공사비의 부가가치세는 시설분담금 등을 제외한 공사비 합계의 10%와 시설분담금 등의 제시된 부가가치세 2백만원의 합계  
 자료: 연구진 작성

### 3.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계획

총사업비 중 2023년까지 기투자된 비용과, 요구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 계획은 다음 <표 IV-55>와 같다.

<표 IV-55> 사업계획 요구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불용 및 잔여금	합계	비고
A. 공사비	금액	-	-	2,635	10,540	13,176	-	26,351	-
	비율	-	-	10%	40%	50%	-	100%	
B. 용지보상비	금액	4,157	-	-	-	-	(2) <sup>1)</sup>	4,159	토지매입 완료
	비율	99.95%	-	-	-	-	0.05%	100%	
C. 시설부대경비	금액	572	-	545	871	1,087	(85) <sup>2)</sup>	3,160	-
	비율	18%	-	17%	28%	34%	3%	100%	
C-1. 설계비	금액	568	-	327	-	-	(85) <sup>2)</sup>	980	2025년에 잔여금 집행
	비율	58%	-	33%	-	-	9%	100%	
C-2. 감리비	금액	-	-	212	848	1,059	-	2,119	-
	비율	-	-	10%	40%	50%	-	100%	
C-3. 시설부대비	금액	4	-	6	23	28	-	61	-
	비율	7%	-	10%	38%	46%	-	100%	
D. 예비비	금액	-	-	-	-	-	-	-	-
	비율	-	-	-	-	-	-	-	
E. 총사업비 (A+B+C+D)	금액	4,729	-	3,180	11,411	14,263	(87)	33,670	잔여금 제외 33,583
	비율	14.0%	-	9.4%	33.9%	42.4%	0.3%	100%	

주: 1. 부가가치세 포함

1) 충남경찰청 질의 결과, 2백만원은 불용금액

2) 충남경찰청 질의 결과, 85백만원은 설계공모비, 심의수당, 교통영향평가용역, 설계용역 계약금의 잔여금액

자료: 연구진 작성

다만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충남청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추진현황보고」<sup>36)</sup>의 실시설계완료 및 착공시기가 상이하므로 2025년 실시설계완료, 2026년 착공으로 가정하여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배분하면 다음 <표 IV-56>과 같다.

36) 충청남도경찰청, 「1차 제출자료」, 2024. 6.

〈표 IV-56〉 착공 시점을 고려한 사업비 항목별 연차별 배분 비율

(단위: %)

구분	2023년 (기투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공사비	-	-	-	50	50	100
보상비	100	-	-	-	-	100
설계비	59	-	41	-	-	100
감리비	-	-	-	50	50	100
시설부대비	7	-	-	47	47	100

자료: 연구진 작성

2026년 착공을 고려한 사업비 항목별 연차별 배분 비율에 따라 검토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계획을 다음 〈표 IV-57〉과 같이 작성하였다.

〈표 IV-57〉 검토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기투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비고
A. 공사비	검토안	-	-	-	15,997	10,453	26,450	-
	비율	-	-	-	60%	40%	100%	-
	대안	-	-	5,544	9,674	9,674	24,892	-
	비율	-	-	22%	39%	39%	100%	-
B. 용지보상비	검토안	4,157	-	-	-	-	4,157	토지 매입 완료 (2021~2022년)
	대안	4,157	-	-	-	-	4,157	
	비율	100%	-	-	-	-	100%	
C. 시설부대경비	검토안	573	-	326	1,040	1,039	2,978	-
	비율	19%	-	11%	35%	35%	100%	-
	대안	573	-	326	1,000	1,000	2,899	-
	비율	20%	-	11%	34%	34%	100%	-
C-1. 설계비	검토안	569	-	326	-	-	895	공모심사비 및 수당(7) 설계용역(746) 교통영향평가용역(143)
	비율	64%	-	36%	-	-	100%	
	대안	569	-	326	-	-	895	
	비율	64%	-	36%	-	-	100%	
C-2. 감리비	검토안	-	-	-	1,011	1,011	2,022	-
	대안	-	-	-	973	973	1,946	-
	비율	-	-	-	50%	50%	100%	-

〈표 IV-57〉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기투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비고
C-3. 시설부대비	검토안	4	-	-	28	28	61	계약수수료(4)
	비율	7%	-	-	47%	47%	100%	
	대안	4	-	-	27	27	57	
	비율	7%	-	-	47%	46%	100%	
D. 예비비	검토안	-	-	-	-	-	-	-
	대안	-	-	-	-	-	-	-
	비율	-	-	-	-	-	-	-
E. 총사업비 (A+B+C+D)	검토안	4,730	-	326	17,037	11,492	33,585	-
	비율	14%	-	1%	51%	34%	100%	-
	대안	4,730	-	5,870	10,674	10,674	31,948	-
	비율	15%	-	18%	33%	33%	100%	-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연구진 작성

---

## V. 정책성 분석

---

###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중 계량화가 곤란하지만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정책성 분석의 평가항목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① 사업추진 여건 ② 정책효과 ③ 사업별도평가항목(선택적)으로 분류한다.

사업추진 여건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과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으로 구성되며,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은 상위계획 반영 여부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은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평가한다.

정책효과는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선택), 사업특화항목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주무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검토해야 한다.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조달 위험성 또는 문화재가치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별도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정책성 분석의 중분류 및 세부평가항목은 <표 V-1>과 같다.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안(요구안)의 규모와 비용이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정책성 분석 중 정책효과와 관련된 항목은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사업추진 여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책효과'와 '사업별도 평가항목'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 V-1〉 정책성 분석의 세부평가항목

중분류	세부평가항목	수행 여부
사업추진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li> <li>•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li> </ul>	검토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효과</li> <li>• 생활여건 영향</li> <li>• 환경성 평가</li> <li>• 안전성 평가(선택)</li> <li>• 사업특화항목</li> </ul>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 생략 가능
사업별도평가항목 (선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조달 위험성</li> <li>• 문화재 가치</li> </ul>	미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에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78호)」[별표 3], 2023. 12. 27.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2. 사업추진 여건

### 가. 내부여건

#### 1) 개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나 국민들의 요구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아간다.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내부여건에서는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여부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검토, 사업의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한다.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는 해당 사업이 추진 주체에 의하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해당 사업이 정책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존에 수립된 장기계획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책방향이 선회함으로써 유효성이 낮아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와 더불어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정책목표(방향)가 개별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반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점에는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 변화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존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의 준비 정도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성은 없다. 상시적인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의 준비 정도가 내부여건 평가의 큰 요인이 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준비 정도를 별도로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라는 상시적인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사업의 준비 정도가 내부여건 진단의 큰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 건축 등 사업의 내용이 특수할 경우, 건립 후의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준비 정도를 내부여건에 포함할 수 있다.

## 2) 검토 결과

### 가) 상위·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본 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및 일치성 검토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총괄청의 행정재산 통합관리체계의 전환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노후 경찰관서의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2013년에 수립한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2015년 시설환경개선 대상으로 논산경찰서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충청남도경찰청에서 수립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2018~2022년)’에도 본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 상위계획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중기사업계획에는 총 사업기간 4년(2018~2021년), 총사업비 163.36억원, 연면적 8,363㎡ 규모로 최초 수립된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국정과제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정과제 목표로 ‘교통 및 건설·건축현장의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서 시설환경 개선은 관할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기초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경찰청의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시설 계획지표에 적합하게 경찰서 1개소, 지구대·파출소 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기반시설계획에도 이미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업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및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결과 상위계획 및 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나, 정원 외 인원에 대한 시설면적기준은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세부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로 계획되어 적법하며, 시설용도는 공공업무시설로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 여건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규모 전반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기본설계 완료 후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검토를 거쳐 「경찰관서 청사 시설 면적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나, 광역과학수사 7팀과 같은 정원 외 인원에 대한 업무공간 배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경찰 조직 운영체계 개편 현황을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2021년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개정으로 광역과학수사팀 인원에 대해 1인당 7㎡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인원은 본청 소속으로 시설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기준 개정 시 반드시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본 재검토에서는 논산경찰서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본청 소속의 광역과학수사 7팀 인원에 대해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 정원 외 근무자 배정면적을 적용하였으며 전의경 제도 폐지에 따라 활용도가 저하된 종교시설은 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 나) 사업의 준비 정도

본 사업은 2017년 12월 최초로 예산이 확정되고 세 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황이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증액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부지 위치가 확정되었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인접 부지의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기본설계가 이미 진행된 사업이므로 사업의 준비 정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인허가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및 공사 진행 시 현장 여건 관련 주변 지역 민원에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 중단된 상태로 평가결과에 따라 주차계획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향후 계룡경찰서 신축사업

완료 후 정원이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시설계 진행 시 조직개편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착공 이후에는 연약지반 굴착 시 인접 건축물 침하 등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공사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재원조달계획의 경우, 총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므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외부여건

### 1) 개요

사업추진 주체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할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고, 결국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여건에는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영향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태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이익집단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사업에 대한 태도 및 갈등 여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사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해당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면 지역주민 모두가 사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다. 나아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민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민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의 추진에 대한 선호도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의 검토 시에는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검토 결과

### 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

경찰청은 증장기적 관점에서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경찰관서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현장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5년 단위 증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최초 5개년(2018~2022년) 계획 수립 이후, 5개년 계획이 추가로 수립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경찰청은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에서도 ‘경찰시설 환경개선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충남지방경찰청의 해당 계획은 확인할 수 없었다.

논산시의 경우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관련 입지 선정 및 부지 확보 과정을 적극 지원해 왔다. 사업 초기 논산경찰서 이전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충남경찰청, 논산경찰서, 논산시 등 관계기관 실무 협의가 추진되었으며, 논산시와 논산경찰서 간 부지매입 관련 협약체결로 논산시에서 사업대상지를 선매입한 후 충남경찰청에 매각이 완료된 상태이다.

사업주체인 충남경찰청과 수요자인 논산경찰서는 현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협소한 실내외 공간으로 인한 직원과 민원인 불편으로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나)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사업 수용성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이전·신축에서 현 청사의 확장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주변 지역주민의 사업 수용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계획 초기에는 논산경찰서를 관할구역 중심에 위치한 부적면으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현 논산경찰서 주변 지역주민이 적극 반대하면서 입지를 다시 결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 청사의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재건축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사업 수용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착공 이후 발생 가능한 주변 민원에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사기간 중 임차청사 운영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공사 중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 중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임시청사에 대한 정보 전달 등 임시청사의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

## VI. 지역균형발전 분석

---

### 1.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개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에는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 분석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 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가회는 점점 줄어들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세부 항목은 지역낙후도 평가와 균형발전효과 분석이다. 지역낙후도 평가에서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서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한다. 균형발전효과 분석에서는 부처의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간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이용하여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등의 증가를 계량화한 수치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근본 취지는 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공투자사업,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계획안(요구안)의 규모와 비용이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한 조사로,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지역균형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세부 평가항목 중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는 필요에 따라 생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재검토에서는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2. 지역낙후도 평가

### 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및 지표

본 검토에서는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에서 제시하는 지역낙후도지수를 사용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고 객관적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방법론을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한다.

$$UI^r = \sum_j W_j \sum_i W_{ij} \cdot Z_i^r$$

단,  $UI^r$  =  $r$  지역의 지역낙후도지수

$Z_i^r$  =  $r$  지역의 표준화된 지표  $i$ 의 값(단,  $i = 1, 2, 3, \dots, \dots, 36$ )

$W_{ij}$  = 요인  $j$ 에 대한 지표  $i$ 의 가중치(단,  $i = 1, 2, 3, \dots, \dots, 36$ )

$W_j$  = 요인  $j$ 의 가중치(단,  $j = 1, 2, 3$ )

지역낙후도지수는 낙후 정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가중평균값으로서, 지역낙후도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다. 균형발전지표는 ‘핵심·객관지표’와 ‘주관지표’로 구성되는데, 본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문에 의해 구성되는 주관지표는 배제하고 ‘핵심·객관지표’를 기본적으로 차용하였다. 지수 산정에는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0)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토대로 2020년에 발표된 균형발전지표 중 핵심·객관지표 중 36개 지표를 다음과 같이 준용 및 변형하였다.<sup>37)</sup>

37)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0)에서는 2019년에 발표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표 VI-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 출처
인구	연평균 인구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2010~2020)</li> <li>• 변화율은 연평균 증감률<math>((\text{해당년}/\text{기준년})^{1/(\text{기간}-1)}-1) \times 100</math></li> </ul>	통계청 인구총조사
경제	재정자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2018~2020)</li> <li>•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일반회계 세입)<math>\times 100</math></li> </ul>	행안부 (지방재정365)
주거	노후주택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된 주택의 비율</li> </ul>	통계청 (주택총조사)
	빈집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주택 중 빈집의 비율</li> <li>* 빈집: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신축되어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li> </ul>	통계청 (주택총조사)
	상수도보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인구 중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해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li> </ul>	환경부 (상수도통계)
	하수도보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li> </ul>	환경부 (하수도통계)
교통	도로포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통도 연장에 대한 포장도로 연장비율</li> </ul>	국토부(도로현황조사) 및 통계청 (e지방지표)
	고속도로 IC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까지 도로 이동거리</li> </ul>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까운 고속·고속화철도까지 도로 이동거리</li> </ul>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주차장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으로부터 서비스 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총 주민등록 인구수<math>\times 100</math></li> </ul>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산업 일자리	사업체 수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개년</li> <li>• 변화율은 연평균 증감률<math>((\text{해당년}/\text{기준년})^{1/(\text{기간}-1)}-1) \times 100</math></li> </ul>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수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개년</li> <li>• 변화율은 연평균 증감률<math>((\text{해당년}/\text{기준년})^{1/(\text{기간}-1)}-1) \times 100</math></li> </ul>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지식기반산업 집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년 평균</li> <li>• 지식기반산업=지식기반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li> <li>* 지식기반산업 집적도(LQ)=(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지역의 전산업 종사자 수)/(전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전국의 전산업 종사자 수)</li> </ul>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상용근로자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li> <li>*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 등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li> </ul>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교육	유아(0~5세) 천명당 보육시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수/(총 주민등록인구 중 유아인구(0~5세) 수<math>\div 1,000</math>)</li> </ul>	통계청 (e-지방지표)
	학령인구(6~17세) 당 학교 수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학교 수<math>\div</math>총 주민등록인구 중 학령인구(6~17세) 수</li> </ul>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표 VI-1〉의 계속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 출처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영유아(7세 이하)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 중 영유아 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초등학교령(8~13세)인구 수×100÷총 주민등록인구 중 초등학교령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문화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여가시설 수	• (문화여가시설 수÷총 주민등록인구수)×100,000 * 문화여가시설=문화기반시설+생활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①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② 생활문화시설: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③ 공공체육시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체육시설(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량, 문체부 행정자료 (생활문화센터, 공공체육시설현황)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공연문화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도서관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공공체육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안전	119 안전센터 개당 담당주민 수	• 주민등록인구수÷119안전센터 수	소방청, 소방정책과
	소방서 접근성	• 가장 가까운 소방서까지 도로 이동거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경찰서 접근성	• 가장 가까운 경찰서까지 도로 이동거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환경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 (도시공원 조성면적÷주민등록인구수)×1,000(m <sup>2</sup> /인) * 도시공원: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간(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포함)	도시계획정보서비스(U PIS) 도시계획현황통계
	녹지율	• (녹지면적÷도시지역면적)×100 * 녹지: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간	도시계획정보서비스(U PIS) 도시계획현황통계
	1km <sup>2</sup> 당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배출량(kg)÷시군구 면적(1km <sup>2</sup> )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8개(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임	환경부 시군구별 배출량 자료, UPIS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생활권공원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표 VI-1〉의 계속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 출처
보건 복지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 전체 일반가구 수) × 100	통계청 (인구총조사)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 비중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 보건분야 예산액) × 100 ÷ 전체 일반회계 예산	통계청(e지방지표)/ 행안부(지방재정연감)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 (총 사회복지시설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00 * 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을 포함	통계청(e지방지표)/ 시도통계연보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통계청(e지방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인구 비율	•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노인 (60세 이상) 인구수 × 100 ÷ 행정구역 내 총 거주 노인 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응급의료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수 × 100 ÷ 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병원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 수 × 100 ÷ 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주: 2020년 발표된 균형발전지표의 핵심·객관지표(총43개)는 핵심지표(2), 주거(5), 교통(4), 산업·일자리(6), 교육(4), 문화·여가(6), 안전(4), 환경(4) 및 보건복지(8)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시·군·구 단위로 발표된 자료가 존재하는 36개 지표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나비스(NABIS)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https://www.nabis.go.kr/>), 균형발전지표 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표별로 척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지표 간 척도를 통일시켜야 한다. 지표 간 척도의 통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지표를 표준화하였다.

$$Z_i = \frac{X_i - \bar{X}}{S}$$

단, S는 표준편차,  $\bar{X}$ 는 표본평균

한편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연구에서는 36개 지표를 이용하여 수행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3개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각각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으로 명명하였으며, 지표별

가중치는 가급적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된 수치를 이용한다. 요인별 지표의 가중치( $W_{ij}$ )는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이용하고 요인별 가중치( $W_j$ )는 3개 요인의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을 이용하였으며 지표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sup>38)</sup>

〈표 VI-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 결과)

부문	지표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인구	연평균 인구증감률	-0.0459	-0.1438	0.2793
경제	재정자립도	0.1649	-0.1429	0.1424
주거	노후주택비율	0.2451	-0.3217	-0.0796
	빈집비율	0.0502	-0.0151	-0.0294
	상수도보급률	-0.0144	0.0123	-0.0328
	하수도보급률	0.0528	-0.0939	0.0185
교통	도로포장률	0.0256	-0.0254	-0.0049
	고속도로 IC 접근성	0.1171	-0.2062	-0.0135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	0.1212	-0.2871	0.0840
	주차장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0.0183	0.0070	-0.0466
산업 일자리	사업체수 증감률	-0.2000	0.0783	0.3455
	종사자수 증감률	-0.0374	-0.0120	0.0989
	지식기반산업집적도 3년 평균	-0.0381	0.0434	0.0342
	상용근로자 비중	-0.0637	0.0680	0.0281
교육	유아(0-5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0.0294	0.0280	-0.0098
	학령인구 천명당 학교수	0.0758	-0.3275	-0.0516
	어린이집 서비스권역내 영유아비율	0.0058	0.1992	-0.0273
	초등학교 서비스권역내 학령인구 비율	0.0724	-0.0713	-0.0564
문화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0.0274	-0.0490	0.0463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0.0778	0.0691	-0.0380
	도서관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0.2109	-0.0690	-0.0422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0.0274	0.0199	0.0035

38)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0)를 참조

〈표 VI-2〉의 계속

부문	지표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안전	119 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 수	0.1030	-0.0184	0.0284
	소방서 접근성	-0.1800	0.0529	0.0306
	경찰서 접근성	-0.0216	-0.0610	0.0019
환경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0.0094	0.0186	-0.0122
	녹지율	0.0048	0.0016	0.0105
	1㎢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	0.2232	-0.2075	-0.1280
	생활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0.2702	-0.0111	-0.0367
보건 복지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0.3704	0.4229	-0.2522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중	-0.0017	0.1840	-0.0006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0.0137	0.0398	-0.0073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0.0968	0.2291	-0.0989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 비율	-0.0181	0.0381	0.0328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0.0213	0.0814	-0.0675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0.0983	-0.0315	-0.077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표 VI-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 비율)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0.5017	0.2792	0.219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 나.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표 VI-4〉의 17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에 따르면 본 조사의 사업대상지인 충청남도의 순위는 13위로 평가되었다. 〈표 VI-5〉의 167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에 따르면 충청남도 논산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167개 시·군 중 82위로 평가되었다.

〈표 VI-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구분	지역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 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종합지수	순위
특별· 광역시	서울특별시	2.598	-0.037	-0.647	1.151	1
	부산광역시	0.564	0.957	-1.004	0.330	8
	대구광역시	0.524	0.938	-0.563	0.402	7
	인천광역시	1.521	-0.366	0.023	0.666	2
	광주광역시	0.681	1.445	-0.610	0.611	3
	대전광역시	0.705	1.058	-0.418	0.558	4
	울산광역시	1.103	-0.078	-0.228	0.482	5
	세종특별자치시	-1.318	-0.456	4.147	0.120	9
도	경기도	0.233	0.457	0.901	0.442	6
	강원도	-1.249	-1.069	0.044	-0.915	16
	충청북도	-0.646	-0.083	0.117	-0.321	11
	충청남도	-0.942	-0.264	0.197	-0.503	13
	전라북도	-0.804	0.287	-1.097	-0.564	14
	전라남도	-1.067	-0.751	-1.009	-0.966	17
	경상북도	-1.158	-0.686	-0.296	-0.837	15
	경상남도	-0.552	0.209	-0.408	-0.308	10
	제주특별자치도	-0.193	-1.561	0.850	-0.346	1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표 VI-5〉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지역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 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종합지수	순위
충청남도	논산시	-0.391	1.017	-0.854	-0.099	8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가. 지역산업연관분석의 개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 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 간 거래(최종 수요와 산업 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 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 균형 통계체계를 말한다. 산업연관모형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 내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산업 간 거래가 국내 산업 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 내 산업 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 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검토에서는 한국은행의 지역간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보완한 모형 및 자료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한국은행의 지역간산업연관모형의 구조, 산업분류, 대상 지역, 투입계수 및 교역계수작성 방법 등 본 모형의 특성을 결정 짓는 주요 항목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나.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 1) 작성 현황

한국은행은 지역통계의 확충과 통계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2007년 3월에 2003년 기준의 6개 권역<sup>39)</sup> '지역간산업연관표(IRIO)'를 작성·발표하였다. 동 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지조사를 통해 작성한 공식적인 지역산업연관표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권역 세분화 및 최신 경제구조 반영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9년 8월에 2005년 기준의 16개 시·도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실측 지역 간 산업연관표 작성 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작업기간의 장

39)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을 의미함

기화를 고려하여, 2005년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실측이 아닌 2003년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연장한 간접추정방식으로 작성하였다. 그 이후 매 5년마다 개편하는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작성 기준에 맞추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5년 10월에 그동안 축적된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기법과 산업연관표 연장기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발표하였으며, 2020년 7월에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를 공표하였다.

## 2) 작성 기준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로 구분한 지역 간 투입산출표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와 달라진 점은 전업환산<sup>40)</sup> 지역 고용표를 함께 작성하여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은 지역별 산출 및 소득통계, 수출입 및 카드사용 실적 등 지역생산과 지역 간 이출입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였고, 부문 분류는 165부문으로 2015년 기준년 상품분류를 적용하였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가격 기준은 2005년 생산자가격 기준에서 2010년 기초가격 기준으로 전환하였으나, 2015년 다시 생산자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각종 계수를 산출하였다. 기초가격이란 생산자가격에서 순생산물세를 차감하여 생산자가 실제 수취하는 금액으로, 수요처 간 생산물 세율의 차이를 배제하고 동질적인 기준으로 거래액과 투입 구조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즉 생산자가격에는 생산물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요처가 기업, 가게 또는 정부인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거나, 한 부문에 세율이 다른 여러 품목을 포함하고 있을 때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이용하면 파급효과 측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기초가격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순생산물세가 중간투입이나 부가가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투입계수 및 각종 유발계수 도출 시에 순생산물세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러한 혼돈과 분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5년에는 생산자가격으로 계수를 도출하였다.

---

40) 전업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노동투입량 측면의 취업자 수 측정을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

###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 경제구조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세로(열, column)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 투입구조이다. 투입구조는 생산 활동에 사용한 원·부재료의 구성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 내역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로 구성된다. 가로(행, row)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가 어떤 부문에 사용되기 위해 판매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나타낸다. 배분구조는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중간수요와 소비·투자·수출 등으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최종수요로 구성된다. 중간투입과 중간수요는 산업 간 거래내역을 나타내는데, 이를 내생부문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와 최종수요를 외생부문이라고 한다.

지역산업연관표도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이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전국산업연관표와 동일하다. 다만 지역산업연관표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내 산업연관표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진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구분되므로, 지역 내인지 지역 간인지에 따라 표의 구성 형식이 다르다.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의 구성과 동일하나 각 산업부문의 배분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에서 해외 부문과의 거래를 나타내는 수출 및 수입처럼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이출과 이입이 추가되는 점이 전국산업연관표와 다르다.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 국내의 타 지역으로 이출되는 생산품은 수출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에 포함되며,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를 총수요라고 하는데, 총수요에서 수입과 이입을 공제한 것이 지역 내 총산출액이 된다.

- 총 산출액=총 투입액
- 총 투입액=중간투입+부가가치[투입구조]
- 총 산출액=중간수요+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이출)-수입-이입[배분구조]
- 총수요(=총공급)

타 지역 생산품(이입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지 않은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일반적인 형식은 [그림 VI-1]과 같다.

[그림 VI-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구분		내생부문				외생부문					수입 (공제)	이입 (공제)	지역 내산 출액
		산업1	...	산업n	중간 수요계	소 비	투 자	수 출	이 출	최 종 수 요 계			
내생 부문	산업1	$X_{11}$	투 입 구 조	$X_{1n}$	$W_1$	$C_1$	$I_1$	$E_1$	$O_1$	$Y_1$	$M_1$	$N_1$	$X_1$
	⋮			배 분 구 조 →									
	산업n	$X_{n1}$		$X_{nn}$	$W_n$	$C_n$	$I_n$	$E_n$	$O_n$	$Y_n$	$M_n$	$N_n$	$X_n$
	중간투입계	$U_1$		$U_n$									
외생 부문	피용자보수	$R_1$	↓	$R_n$									
	영업잉여	$S_1$		$S_n$									
	고정자본소모	$D_1$		$D_n$									
	순생산세	$T_1$		$T_n$									
	부가가치계	$V_1$		$V_n$									
지역내산출액		$X_1$		$X_n$									

자료: 한국은행,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2020.

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의 산업 1부분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기 부문 및 타 부문에서 생산된 중간재와 본원적 생산요소인 부가가치  $V_1 (= R_1 + S_1 + D_1 + T_1)$ 을 구입하였음을 나타낸다. 가로 방향은 산업 1부분이 자기 지역에서 산출한  $X_1$ 과 해외에서 수입한  $M_1$  및 타 지역에서 이입한  $N_1$ 을 합한 총공급액( $= X_1 + M_1 + N_1$ )이 자기 지역의 산업 1부분 및 타 부문에 중간수요로 판매되고, 소비, 투자, 수출 및 타 지역 이출로  $Y_1 (= C_1 + I_1 + E_1 + O_1)$ 만큼 최종수요로 판매되었음을 나타낸다. 지역 내 산업연관표에서 타 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은 해외로 수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중간재 또는 최종재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타 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이 타 지역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사용된 것과 소비 및 투자의 최종재로 사용된 것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 항목에는 이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일반적인 형식은 [그림 VI-2]와 같다.

[그림 VI-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구분			중간수요						최종수요						지역 내산 출액
			지역 1		...		지역 n		지역 1		...		지역 n		
			산 업 1	산 업 n	산 업 1	산 업 n	산 업 1	산 업 n	소 비 자	투 자 수 출	소 비 자	투 자 수 출	소 비 자	투 자 수 출	
국산 투입	지 역 1	산업1 ∴ 산업n	$Z_{11}$	투 입 구 조  ↓				$Z_{1n}$	$Y_{11}^d$	...	$Y_{1n}^d$	$X_1$			
	∴	산업1 ∴ 산업n	배 분 구 조 →												
	지 역 n	산업1 ∴ 산업n	$Z_{n1}$					$Z_{nn}$	$Y_{n1}^d$	...	$Y_{nn}^d$	$X_n$			
수입 투입		$M_1$	$M_n$	$Y_1^m$	...	$Y_n^m$									
부가가치			$V_1$	$V_n$											
지역 내 산출액			$X_1$	$X_n$											

자료: 한국은행,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2020.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기 지역 및 타 지역과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투입내역과 임금, 이윤, 생산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낸다. [그림 VI-2]에서 지역 1의 세로 방향은 지역 1이 생산 활동을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 $Z_{11}$ ), 타 지역에서 생산되어 이입된 중간재( $Z_{21} + \dots + Z_{n1}$ ),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중간재( $M_1$ ) 그리고 노동 및 자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 $V_1$ )를 투입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가로 방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자기 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 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내역과 자기 지역 또는 타 지역의 소비와 투자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내역을 나타낸다.

[그림 VI-2]에서 지역 1의 가로 방향은 지역 1에서 생산된 제품은 자기 지역의 생산 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 $Z_{11}$ ) 및 타 지역의 생산 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 $Z_{12} + \dots + Z_{1n}$ )와 자기 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해외)로 사용된 최종수요( $Y_{11}^d$ ) 및 타 지역의 소비, 투자로 사용된 최종수요( $Y_{12}^d + \dots + Y_{1n}^d$ )로 배분되었음을 나타낸다.

#### 다.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 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는 165부문 기준으로, 건설업 중 토목건설은 교통시설건설, 일반토목시설건설, 산업시설건설, 기타건설 4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세부 산업<sup>41)</sup>의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건설업부문뿐만 아니라 정보화부문 사업 등의 경우에도 세부 산업의 구분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5 기준년 상품분류와 2015 기준년 상품분류를 비교하였을 때 기본부문에서 공항시설은 도로시설에, 지하철시설은 철도시설에, 농림수산토목 중 일부는 하천사방에 포함되었다. 또한 비주택 건축은 비주거용 건물과 산업플랜트로 구분되었다. 특히 산업플랜트는 2005년 기준 상하수도시설, 기계조립설치의 일부 항목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본부문으로 제시되었다. 통신도 우편, 유선, 무선, 기타로 단순화되었으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속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로 변경되었다.

〈표 VI-6〉 상품 분류 구분

2005 기준년 상품분류				2015 기준년 상품분류										
통합 대분류 (28)	통합 중분류 (78)	통합소분류 (168)	기본부문 (403)	기본부문 (381)		소분류 (165)		중분류 (83)		대분류 (33)				
18	55	건축 건설	123	주택건축	305	주택건축	5010	주거용 건물	501	주거용 건물	50	건물 건설 및 건축 보수	F	건설
			124	비주택 건축	306	비주택 건축	5020	비주거용 건물	502	비주거용 건물				
			125	건축보수	307	건축보수	5030	건축보수	503	건축보수				
	56	토목 및 특수 건설	126	교통시설 건설	308	도로시설	5111	도로시설	511	교통시설 건설	51	토목 건설		
					312	공항시설								
					309	철도시설	5112	철도시설						
					310	지하철 시설								
					311	항만시설								

41) 원칙적으로는 상품이나 투입산출표가 상품 구분으로 작성되고 있고 한 산업에 한 상품이 생산된다는 가정하에 산업으로 표현함

〈표 VI-6〉의 계속

2005 기준년 상품분류				2015 기준년 상품분류							
통합 대분류 (28)	통합 중분류 (78)	통합소분류 (168)	기본부문 (403)	기본부문 (381)	소분류 (165)	중분류 (83)	대분류 (33)				
18	건설	56 토목 및 특수 건설	127  일반토목	313	하천사방	5121	하천사방	512 일반토목 시설 건설			
				315	농림수산 토목						
				314	상하수도 시설	5122	상하수도 시설				
				315	농림수산 토목	5123	농림수산 토목				
				316	도시토목	5124	도시토목				
			128  기타특수 건설	320	기타건설	5131	환경정화 시설		513 산업시설 건설		
		318		통신시설	5132	통신시설					
		317		전력시설	5133	전력시설					
		55	건축 건설	124	비주택 건축	306	비주택 건축			519 기타 건설	519 기타 건설
		56 토목 및 특수 건설	127 일반토목	314	상하수도 시설	5134	산업 플랜트				
				128 기타특수 건설	319						
			320 기타건설	5190	기타 건설						
62 통신	141 우편 및 전화			341 우편	5710	공영우편 서비스	571	공영우편 서비스			
		5720	소화물전문 운송서비스		572	소화물전문 운송서비스					
		342 전화	5911	유선통신 서비스	591 유, 무선 및 위성 통신서비스	59 통신 서비스					
		142 부가통신 및 정보 서비스					343	초고속망 서비스			
	141 우편 및 전화	342	전화	5912			무선 및 위성 통신서비스				
	142 부가통신 및 정보 서비스	343	초고속망 서비스								

〈표 VI-6〉의 계속

2005 기준년 상품분류				2015 기준년 상품분류											
통합 대분류 (28)	통합 중분류 (78)		통합소분류 (168)	기본부문 (403)		기본부문 (381)	소분류 (165)	중분류 (83)	대분류 (33)						
22	통신 및 방송	62	통신	141	우편 및 전화	342	전화	5991	통신 재판매 및 중개 서비스	599	기타 전기통신 서비스	59	통신 서비스	J	정보 통신 및 방송 서비스
				142	부가통신 및 정보 서비스	344	부가통신	5999	기타 전기통신 서비스						
	63	방송	143	방송	346	지상파 방송	6001	지상파 방송서비스	600	방송 서비스	60	방송 서비스			
					347	유선 및 위성방송	6002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 서비스							
62	통신	142	부가통신 및 정보 서비스	345	정보 서비스	6100	정보제공 서비스	610	정보서비스	61	정보 서비스				
24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65	부 동 산	153	컴퓨터 관련 서비스	366	소프트 웨어 개발공급	6211	게임소프트 웨어 출판	62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62	소프트 웨어 개발 공급 및 기타 IT 서비스		
						621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367	컴퓨터 관련 서비스	6290	기타 IT서비스	629	기타 IT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2020.

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그러나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소분류(165부문)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 등의 부문을 기본부문(381분류) 기준으로 세분화된 산업연관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여기서는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방법을 달리하여 간접적으로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165부문 또는 83부문)를 최대한 활용한 뒤 전국산업연관표상 기본부문별 유발계수와 소분류의 유발계수의 비중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도로, 철도와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의 경우 생산기술이 표준화되어 산업적 특성보다는 지역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현재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분류(165부문)까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파급효과를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기본부문 배분 시에는 전국산업연관표에서 제시된 기본부문 및 소분류 유발계수의 비중을 고려함으로써 평균적인 기본부문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A지역의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유발효과를 분석한다고 하자. 도로시설은 기본부문으로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을 포괄하는 교통시설 건설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시설 건설을 기준으로 A지역에 해당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i$  지역,  $j$  산업(교통시설)의 파급효과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_{ij}$$

$i$ 는 지역(16개 광역시도),  $j$ 는 산업(소분류 기준)

이후 전국산업연관표상에서 교통시설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의 비율( $\theta_{jk} = E_k/E_j$ )을 기본부문 산업별( $k$ , 도로시설)로 계산한다. 위 비율( $\theta_{jk}$ )은 광역시도마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첨자  $i$ 가 없다. 이 비율( $\theta_{jk}$ )을 앞서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교통시설( $j$ ) 건설에 따른  $i$  지역의 파급효과( $E_{ij}$ )에 곱해줌으로써 최종적인 효과를 계산한다. 따라서  $i$  지역,  $k$ (도로시설)산업의 최종적인 파급효과는 ( $E_{ik} = E_{ij} \times \theta_{jk}$ )가 되며,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취합하면 A지역의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도로시설뿐만 아니라 철도, 항만, 환경정화시설 등 기본부문이 없는 IRIO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기본부문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또한 생산유발효과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전국산업연관표상 소분류 대 기본부문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는 한국은행 제공 자료가 지역산업연관표의 경우 중분류(82부문), 전국산업연관표는 소분류(161부문)까지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선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의 중분류와 소분류의 비중을 적용하고, 소분류와 기본부문의 차이는 취업과 관련이 높은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지역산업연관표상 제공하지 않는 고용유발계수는 전국산업연관표상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의 비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이상을 통해 추정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본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정 계수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라.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취업)유발효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의 유발계수를 설명하기로 한다. 나아가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 1)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는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당 지역 및 타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효과를 의미한다. 지역간산업연관표에서 각 지역의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중간수요(Z)와 최종수요(Y)로 배분되는데, 두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Z_{11} + Z_{12} + Y_{11}^d + Y_{12}^d = X_1$$

$$Z_{21} + Z_{22} + Y_{21}^d + Y_{22}^d = X_2$$

이 수급방정식은 투입계수( $A_{ij} = Z_{ij}/X_j$ )를 이용하면 다음의 식으로 변형되고, 투입계수로 된 수급방정식을 행렬 형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A_{11}^d X_1 + A_{12}^d X_2 + Y_{11}^d + Y_{12}^d = X_1$$

$$A_{21}^d X_1 + A_{22}^d X_2 + Y_{21}^d + Y_{22}^d = X_2$$

$$\begin{bmatrix} A_{11}^d & A_{12}^d \\ A_{21}^d & A_{22}^d \end{bmatrix} \begin{bmatrix} X_1 \\ X_2 \end{bmatrix} + \begin{bmatrix} Y_1^d \\ Y_2^d \end{bmatrix} = \begin{bmatrix} X_1 \\ X_2 \end{bmatrix}$$

$$A^d X + Y^d = X$$

$$\text{단, } Y_1^d = Y_{11}^d + Y_{12}^d, Y_2^d = Y_{21}^d + Y_{22}^d \text{ 임}$$

이 수급방정식  $A^d X + Y^d = X$  를 산출액  $X$ 에 대해 정리하면,

$$\begin{aligned} A^d X + Y^d &= X \\ (I - A^d) X &= Y^d \\ X &= (I - A^d)^{-1} Y^d \end{aligned}$$

단,  $A^d$ 는 국산투입계수행렬,  $X$ 는 총산출액 벡터,  
 $Y^d$ 는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  $I$ 는 단위행렬임

위 식에서  $(I - A^d)^{-1}$ 을 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하는데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규모를 나타낸다. 생산유발계수는 역행렬계수 또는 레온티에프(Leontief) 역행렬계수라고도 한다.

## 2) 부가가치유발효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는 국내 생산을 유발하며, 이는 생산과정을 통해 다시 부가가치 및 고용(취업)을 유발한다.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최종수요에 의해 생산이 유발되고 생산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관계는 부가가치계수  $A^v (= V_t / X_t)$ 를 생산유발계수에 곱하여 계산된다.

$$\begin{bmatrix} V_1 \\ V_2 \end{bmatrix} = \begin{bmatrix} \widehat{A}_1^v & 0 \\ 0 & \widehat{A}_2^v \end{bmatrix} \begin{bmatrix} B_{11} & B_{12} \\ B_{21} & B_{22} \end{bmatrix} Y^d$$

$$V = \widehat{A}^v (I - A^d)^{-1} Y^d$$

단,  $\widehat{A}^v (I - A^d)^{-1}$ 는 부가가치유발계수

### 3) 고용(취업)유발효과

생산 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 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므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부가가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산업별 노동( $L$ )을 산출액( $X$ )으로 나눈 고용(취업)계수( $= L_i/X_i$ )의 대각행렬을 이용하면 최종수요가 각 지역의 고용을 어느 정도 유발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begin{bmatrix} L_1 \\ L_2 \end{bmatrix} = \begin{bmatrix} \hat{l}_1 & 0 \\ 0 & \hat{l}_2 \end{bmatrix} \begin{bmatrix} B_{11} & B_{12} \\ B_{21} & B_{22} \end{bmatrix} Y^d$$

$$L = \hat{l} (I - A^d)^{-1} Y^d$$

단,  $\hat{l} (I - A^d)^{-1}$ 는 고용(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효과는 고용유발효과에 무급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것으로, 분석방법은 고용유발효과의 경우와 동일하다.

#### 마.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특정 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 활동은 해당 지역의 산업은 물론 이·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 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 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 내 파급효과와 해당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 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간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취업) 등 모든 부분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 $L, M$ ), 3개 산업의 생산 유발계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I - C)^{-1} = \begin{bmatrix} \alpha^{LL} & \alpha^{LM} \\ \alpha^{ML} & \alpha^{MM} \end{bmatrix}$$

$$= \begin{bmatrix} 1.126 & 0.447 & 0.300 & \vdots & 0.479 & 0.418 & 0.153 \\ 0.628 & 1.317 & 0.606 & \vdots & 0.552 & 1.115 & 0.323 \\ 0.512 & 0.526 & 1.100 & \vdots & 0.335 & 0.470 & 0.247 \\ \dots & \dots & \dots & \vdots & \dots & \dots & \dots \\ 0.625 & 0.369 & 0.250 & \vdots & 1.223 & 0.455 & 0.217 \\ 0.237 & 0.384 & 0.205 & \vdots & 0.278 & 0.649 & 0.167 \\ 0.472 & 0.444 & 0.589 & \vdots & 0.594 & 0.529 & 1.232 \end{bmatrix}$$

여기서  $\alpha^{LL}$ 은  $L$ 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 지역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열로 합하면  $L$ 지역 각 산업의 지역 내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alpha^{LL}$ 행렬 ( $3 \times 3$ ) 각 열로 합한 벡터 ( $1 \times 3$ )를  $O^{LL}$ 라고 하면  $L$ 지역 내 각 산업의 지역 내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고,  $M$ 지역의 경우( $\alpha^{MM}$ )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LL} = [ 2.226 \quad 2.290 \quad 2.005 ], \quad O^{MM} = [ 2.094 \quad 1.633 \quad 1.615 ]$$

그리고  $\alpha^{ML}$ 은  $L$ 지역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로 인한  $M$ 지역의 생산유발효과, 즉 지역 외 파급효과(혹은 지역 간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alpha^{LM}$ 은 반대의 경우를 나타낸다.

$$O^{ML} = [ 1.334 \quad 1.197 \quad 1.043 ], \quad O^{LM} = [ 1.365 \quad 2.003 \quad 0.724 ]$$

그리고  $L$ 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유발효과를  $O^L$ ,  $M$ 지역의 경우를  $O^M$ 이라고 하면 지역 내외의 총생산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O^L = O^{LL} + O^{ML} = [ 3.599 \quad 3.487 \quad 3.048 ]$$

$$O^M = O^{MM} + O^{LM} = [ 3.459 \quad 3.636 \quad 2.339 ]$$

## 바.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지역산업연관모형이 지역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비롯하여 모형의 정립 과정 및 추정 결과의 해석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내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의 한계 및 해석상의 유의점에 대해서 보고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IO 모형은 산업연관표의 기본가정, 즉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위한 가정인 생산물이 동질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의 제약에 직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산업연관분석과 관련하여 원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며 특별히 한국은행 IRIO 모형만의 제약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생산물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등은 경제성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제약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IO 분석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없는 모형이라는 비판이다. 즉 지출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다른 곳에 투자할 재원이 현재의 사업으로 투입됨에 따라 여타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즉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연관분석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모형이라는 비판이다. 구축효과는 분명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축효과까지 완벽하게 고려해 주는 모형은 대단히 드물며, 모든 파급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지역·다부문 모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지역의 시계열자료의 축적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다지역·다부문 모형의 정립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추정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IRIO 모형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즉 사업 완료 후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이용되는 사업 완료 후의 경제적 편익과는 다른 것이다. 둘째, 투입계수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출의 분석 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속적으로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 등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태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동태적 파급효과 분석은 모형의 동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 간에 사업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나 서로 다른 사업 간 절대적 비교나 특정 사업에 대한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를 판단하는 데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상대적 파급효과 비교 시에도 비교의 목적이 지역 간 파급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있다면 사업 간 특성의 차이에 따른 투입구조 및 투자배분구조의 차이 등에 따른 파급효과의 차이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본 사업의 IRIO 분석을 위한 총투입비는 순수 공사비와 부대비를 합산한 것으로, 본 모형의 지역 구분과 산업부문 분류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의 건설(비주거용건물) 부문에 투입하여 집계하였다. 통상의 IRIO 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중 용지보상비 역시 이전거래이므로 제외하였다. 예비비는 실투자액이 아니므로 역시 투입비에 포함하지 않았고, 사업비 추계 시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제외하였다. 이상의 전제사항을 토대로 본 분석에 적용되는 투자비 내역은 <표 VI-7>과 같이 검토안 기준으로 267.56억원, 대안 기준으로 252.68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VI-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단위: 억원)

투입부문	비용항목	충청남도	
		검토안	대안
건설(비주거용건물)	공사비	240.49	226.33
	시설부대경비	27.07	26.35
합계		267.56	252.68

- 주: 1. 총투자비는 2023년 기준임  
 2. IRIO 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순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지역귀속이 불분명한 시운전비 제외)를 합산한 것임  
 3. 총투자액은 본 모형의 지역 구분과 산업부문 분류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의 건설(비주거용건물) 부문에 투입됨  
 4. IRIO 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하므로 완공 후 운영비는 제외함  
 5. 사업비 중 보상비는 이전소득이므로 제외함  
 6. 사업비 추계 시 포함된 예비비와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분석함

자료: 연구진 작성

##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표 VI-8〉에 따르면, 본 사업의 지리적 입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충청남도 지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수도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검토안)

(단위: 억원, %, 명)

지역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지역별 비중	유발액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	지역별 비중
서울	36	6.8	19	8.5	31	10.1	23	10.0
인천	14	2.6	5	2.3	7	2.3	5	2.2
경기	51	9.6	19	8.6	28	9.0	20	8.8
대전	9	1.6	5	2.2	11	3.6	9	3.9
세종	2	0.4	1	0.4	2	0.5	1	0.6
충북	15	2.8	5	2.3	6	2.1	4	1.9
<b>충남</b>	<b>330</b>	<b>61.7</b>	<b>141</b>	<b>64.1</b>	<b>195</b>	<b>62.4</b>	<b>142</b>	<b>63.1</b>
광주	3	0.5	1	0.5	2	0.6	1	0.6
전북	6	1.2	2	1.0	3	1.0	2	0.9
전남	12	2.2	4	1.6	3	1.1	2	1.0
대구	4	0.7	1	0.7	3	0.8	2	0.8
경북	18	3.3	6	2.6	6	1.9	4	1.8

〈표 VI-8〉의 계속

(단위: 억원, %, 명)

지역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지역별 비중	유발액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	지역별 비중
부산	6	1.1	2	1.1	4	1.3	3	1.2
울산	11	2.0	3	1.4	2	0.7	2	0.7
경남	12	2.2	4	1.8	5	1.7	4	1.6
강원	5	0.9	2	0.9	3	0.9	2	0.8
제주	1	0.1	0	0.1	1	0.2	0	0.2
계	535	100.0	220	100.0	312	100.0	225	100.0

자료: 연구진 작성

검토안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535억원이며, 사업 대상지인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1.7%인 33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220억원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4.1%인 141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각각 312명, 225명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취업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62.4%인 195명, 고용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63.1%인 142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VI-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단위: 억원, %, 명)

지역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지역별 비중	유발액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	지역별 비중
서울	34	6.8	18	8.5	30	10.1	21	10.0
인천	13	2.6	5	2.3	7	2.3	5	2.2
경기	49	9.6	18	8.6	26	9.0	19	8.8
대전	8	1.6	5	2.2	11	3.6	8	3.9
세종	2	0.4	1	0.4	2	0.5	1	0.6
충북	14	2.8	5	2.3	6	2.1	4	1.9
<b>충남</b>	<b>312</b>	<b>61.7</b>	<b>133</b>	<b>64.1</b>	<b>184</b>	<b>62.4</b>	<b>134</b>	<b>63.1</b>
광주	3	0.5	1	0.5	2	0.6	1	0.6
전북	6	1.2	2	1.0	3	1.0	2	0.9
전남	11	2.2	3	1.6	3	1.1	2	1.0
대구	3	0.7	1	0.7	2	0.8	2	0.8

〈표 VI-9〉의 계속

(단위: 억원, %, 명)

지역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지역별 비중	유발액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	지역별 비중	고용자 수	지역별 비중
경북	17	3.3	5	2.6	6	1.9	4	1.8
부산	6	1.1	2	1.1	4	1.3	3	1.2
울산	10	2.0	3	1.4	2	0.7	1	0.7
경남	11	2.2	4	1.8	5	1.7	3	1.6
강원	4	0.9	2	0.9	3	0.9	2	0.8
제주	1	0.1	0	0.1	1	0.2	0	0.2
계	505	100.0	208	100.0	295	100.0	212	100.0

자료: 연구진 작성

대안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505억원이며, 사업 대상지인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1.7%인 31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208억원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4.1%인 133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각각 295명, 212명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취업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62.4%인 184명, 고용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63.1%인 134명으로 추정되었다.

### 3)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 지역인 충청남도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해당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이다. 해당 지수는 사업 투입액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이 클수록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제 규모가 적을수록 높게 측정된다.

검토안을 기준으로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141억원이며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409,283억원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100%로 추정되었고, 대안을 기준으로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133억원이며, 지역 GRDP로 표준화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094%로 추정되었다.

〈표 VI-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단위: 억원)

구분	검토안	대안
투입액	268	253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	141	133
지역 내 총생산(GRDP)	1,409,283	1,409,283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0.0100%	0.0094%

주: 1. 투입액은 2023년 기준가격이며, 지역 내 총생산은 2022년 기준 잠정치임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인 충청남도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 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자료: 연구진 작성

기준 연도 범위(2016~2022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비수도권 사업 89건을 활용한 해당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값은 0.4748%이다. 본 사업과 유사한 규모(1천억원 미만) 사업의 평균값은 0.0682%이고, 건축 외 부문 사업의 평균값은 0.1345%이다. 또한 본 사업과 유사한 규모이면서 건축 외 부문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은 0.0644%이다.

〈표 VI-1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단위: 억원, %, 건)

구분	본 사업				비교치 (2016~2022년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검토안		대안		전체 사업 <sup>2)</sup>		유사 규모 <sup>3)</sup>		유사 부문 <sup>4)</sup>		유사 규모·부문 <sup>5)</sup>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생산 유발효과	535	330	505	312	10,697	6,905	1,250	757	2,580	1,536	1,340	781
부가가치 유발효과	220	141	208	133	4,336	2,967	507	341	1,042	680	530	346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	0.0100 <sup>1)</sup>	-	0.0094 <sup>1)</sup>	-	0.4748	-	0.0682	-	0.1345	-	0.0644
사업 수	-				89		34		18		12	

주: 1) 본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투입액(검토안 268억원, 대안 253억원)에 대한 사업 해당 지역인 충청남도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 해당 지역의 GRDP 추계액(1,409,283억원, 2022년 기준 잠정치)으로 나눈 지수를 의미함  
 2) 제시된 기준치는 2016~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89건을 기준으로 작성됨  
 3) 유사 규모 비교치는 1천억원 미만의 사업의 평균값임  
 4) 유사 부문 비교치는 건축 외 부문 사업의 평균값임  
 5) 유사 규모·부문 비교치는 1천억원 미만인 건축 외 부문 사업의 평균값임

자료: 연구진 작성

---

## VI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 1. 종합결론

논산경찰서 신축사업은 준공 후 43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다시 건립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치안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최초로 예산이 확정되었고 세 차례의 총사업비 조정과정을 거쳐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황이나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결과 현장 특수여건(연약지반)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으로 총사업비가 336.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초 등록 총사업비 대비 물가 및 지가 상승분 제외 약 57.1% 증가한 수준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에 따라 2024년 5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의뢰되었다.<sup>42)</sup>

당초 사업계획은 논산경찰서 관할구역 중심부에 위치한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이었으나 지역주민 간 의견대립으로 부지 재선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현 청사의 인접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요구안의 부지면적은 8,935㎡, 신축하고자 하는 청사 규모는 연면적 8,346㎡이다.

본 재검토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비용 추정,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으로 구성되며 검토 결과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계획 적절성은 사업목적, 사업부지, 시설규모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신규 사업 요건 검토 결과, 논산경찰서 현 청사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나 협소도 및 안전도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sup>43)</sup> 그러나 주무부처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취약, 청사 내외부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 등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청사 신축을 통

---

42) 타당성심사과-399(2024. 5. 24.)

43) 충청남도경찰청에서는 협소도를 48%(현 청사 연면적/신축 연면적)로 제시하였고, 2012년 자체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임. 그러나 본 재검토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협소도를 재산정한 결과 88%이며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진단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해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부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입지로 계획한 규모의 청사 건립에 문제가 없으며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적절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규모 산출근거가 되는 정원은 2024년 4월 현재 논산경찰서 본서 정원 128명, 지역관서 134명을 기준으로 하여 요구안 대비 본서 정원 9명이 감소하였다. 규모 검토 결과, 요구안 8,348.08㎡ 대비 623.57㎡ 감소한 7,722.51㎡를 대안으로 산출하였다. 면적 감소의 주요 사유는 줄어든 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 광역유치장에서 일반유치장으로 변경, 활용도 낮은 시설의 배제 등에 따른 것이다.

비용 추정은 2023년 말을 기준시점으로 검토하였으며, 총사업비를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공사비 중 기본공사비는 조달청 유사사례 평균 단가를 적용하고 철거공사비, 연약지반 보강공사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증가에 따른 공사비는 별도로 검토하였다. 공사비 검토 결과, 요구안 263.51억원 대비 검토안은 0.99억원 증가한 264.50억원, 대안은 14.59억원 감소한 248.92억원이다. 용지보상비는 용지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기집행된 용지비와 관련부대비를 합산한 41.57억원을 준용하였다. 시설부대경비 중 설계비는 기계약금액인 814백만원<sup>44)</sup>을 준용하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시설부대경비 총액은 요구안 31.60억원 대비 검토안은 1.82억원 감소한 29.78억원, 대안은 2.61억원 감소한 28.99억원이다. 예비비의 경우 현재 본 사업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이므로 총사업비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비용 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요구안 총사업비 336.70억원 대비 검토안은 0.85억원 감소한 335.85억원, 대안은 17.22억원 감소한 319.48억원이다.

정책성 분석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과 이해관계자의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본 사업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향후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합리화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정책제언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는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

44) 부가가치세 제외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충청남도 논산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17개 시·도 기준 13위, 167개 시·군별 기준 82위에 해당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서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검토안과 대안이 각각 0.0100%, 0.0094%로 나타났다. 기준 연도범위 (2016~2022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비수도권 사업 89건을 활용한 해당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값은 0.4748%이다. 본 사업과 유사한 규모(1천억원 미만) 사업의 평균값은 0.0682%이고, 건축 외 부문 사업의 평균값은 0.1345%이다. 또한 본 사업과 유사한 규모이면서 건축 외 부문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은 0.0644%이다.

〈표 Ⅶ-1〉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괄 요약표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변경요구안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8-2외 1필지		
사업 규모	부지면적	8,935㎡		
	연면적	8,346㎡	8,346㎡	7,723㎡
총사업비	A. 공사비	26,351	26,450	24,892
	B. 보상비	4,159	4,157	4,157
	C. 시설부대경비	3,160	2,978	2,899
E. 총사업비 (A+B+C)		33,670	33,585 (99.7%)	31,948 (94.9%)
사업기간		2018~2027년(1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충청남도경찰청/국고 100%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산출가격 기준 시점은 2023년 말 기준임

2.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자료: 연구진 작성

## 2. 정책제언

본 사업은 지역 주민 간 의견 대립에 따른 입지 변경과 그에 따른 현장여건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주무부처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재검토에서는 향후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더 나아가 경찰관서의 합리적인 시설계획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다. 첫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요인에 대비가 필요하다. 인허가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특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 중단된 상태로 평가결과에 따라 주차계획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향후 계룡경찰서 신축사업 완료 후 정원의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시설계 진행 시 조직개편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권장한다. 둘째, 착공 이후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 당초 이전·신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므로 지역주민의 사업 수용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약지반 굴착 시 인접 건축물 침하 등 각종 위험요소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공사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공사 진행 중 경찰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청사 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공사 중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 중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임시청사에 대한 정보 전달 등 임시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향후 보다 합리적인 경찰관서 시설환경 개선과 시설계획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청은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2013년 최초 계획 수립 이후 후속계획은 확인할 수 없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찰청은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에서도 「경찰시설 환경개선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충남지방경찰청의 해당 계획은 확인할 수 없어 상위계획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실시계획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경찰관서 시설계획 합리화를 위해 경찰청 자체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찰관서 설계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정원 외 인원에 대한 시설면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광역과학수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전까지 각 경찰서 소속이었던 과학수사팀은 본청 소속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제 근무는 거점 경찰서에 배치되어 수행함에 따라 정원에 따라 산정하는 업무공간이 본청과 각 경찰서에 중복 계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 검토에서는 2013년 준공된 충청남도경찰청과 1990년에 준공된 부여경찰서에는 광역과학수사팀 인원이 미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 중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논산경찰서에 배치가 확정된 광역과학수사팀 인원 8명의 업무공간에 대해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정원 외 근무자 배정

면적'을 대안으로 반영하였다. 향후 시설규모 계획 시 정원과 정원 외 인원을 구분하여 소요면적 산출근거를 설계기준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대 변화 및 정책·제도 변경 등 시설계획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재검토에서는 전의경 제도 폐지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종교시설을 대안 규모에서 제외하였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경찰청, 「경찰관서 설계기준」, 2021. 12.
- \_\_\_\_\_,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경찰관기동대) 시설면적 기준 개선」, 2020. 2.
- \_\_\_\_\_,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계획(2014~2018년)」, 2013. 1.
- \_\_\_\_\_,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경찰청예규 제564호)」, 2020. 07.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2024. 7.
- \_\_\_\_\_,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 9.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2024. 6. 13.
- \_\_\_\_\_, 「부담금관리 기본법」, 2024. 10.
- \_\_\_\_\_,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4.
- \_\_\_\_\_,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2023. 1.
- \_\_\_\_\_,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 \_\_\_\_\_,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23. 12.
- \_\_\_\_\_,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78호)」, 2023. 12.
- \_\_\_\_\_, 「총사업비 관리지침」, 2023. 9.
- 논산시, 「2035년 논산도시기본계획」, 2021.10.
-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2021. 5.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22. 11.
- \_\_\_\_\_,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4호)」[별표2], 2024.2.21.
- 조달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서」, 2023. 7.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5.
- \_\_\_\_\_,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정보화부문 연구(제3판)』, 2022. 12.
- \_\_\_\_\_,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연구』, 2021. 5.
- 한국건설자원협회, 「2024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2024.
-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설비가격 및 지원단가」, 2024. 4. 5.
- \_\_\_\_\_,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10], 2024.1.9.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63호)」[별표8], 2018. 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2024.01.

\_\_\_\_\_, 「2024년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착수회의 자료」, 2024. 6.

행정안전부, 「202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2024. 01.

#### <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신축이 필요한 노후 청사에 대한 사전 안전성평가 실시」, 보도자료, 2019. 2. 13.

#### < 웹사이트 >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 검색일자: 2024. 7. 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4. 7. 23.~2024. 12. 18.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검색일자: 2024. 8. 6.~2024. 8. 7.

논산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cnpolice.go.kr>, 검색일자: 2024. 8. 29.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 검색일자: 2024. 7. 18.~2024. 8. 28.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자: 2024. 7. 18.~2024. 9. 5.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검색일자: 2024. 7. 4.

충청남도 경찰통계, <https://www.cnpolice.go.kr>, 검색일자: 2024. 7. 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4. 6. 5.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https://zeb.energy.or.kr>, 검색일자: 2024. 7. 18.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4. 7. 4.~2024. 7. 8.

# 부록 1 조사의뢰 공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나라



기획재정부

## 기 획 재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 요청(충남청 논산경찰서 신축)

- 경찰청 재정담당관-2304(2024.5.14.)호 관련입니다.
- '충남청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하오니
  - 설계 결과에 대한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3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이후 총사업비 조정을 다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충남청 논산경찰서 신축),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타당성심사과장, 법사에산과장, 경찰청장(재정담당관)



행정사무관	김미선	총사업비관리 전결 2024. 5. 20.		
		과장	이철규	
협조자				
시행	총사업비관리과-678	(2024. 5. 20.)	접수	타당성심사과-385 (2024. 5. 20.)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여진동)		/	<a href="http://www.moeef.go.kr">http://www.moeef.go.kr</a>
전화번호	044-215-7214	팩스번호	044-215-8053	/ <a href="mailto:kms0527@korea.kr">kms0527@korea.kr</a> / 비공개(5)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나라

## 부록2 부처 자료 제출 공문

<1차>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자료 제출

#### 1. 관련 근거

- 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678(2024.5.20.)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 요청(충남청 논산경찰서 신축)'  
나. 재정담당관-2437(2024.5.22.)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사항 하달(서울 서초서-충남 논산서)  
다. 정부투자분석센터-1344(2024.6.24.)호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자료 협조 요청(1차)'
2. 귀 연구원에서 요청한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자료를 불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논산경찰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차 자료 목록.  
2. 검토자료 1부(별도 송부). 끝.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시설서기보

이수영

시설주사

이준희

총경

전결 07/01  
경찰청

협조자

시행 경주기획정보화장비과-14868 (2024-07-01) 접수 정부투자분석센터-1463 (2024.7.2.)  
우 12333 충남청 공공안전부 경주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http://www.cnpolice.go.kr  
전화 041-336-3937 전송 041-336-3928 / seablue256@police.go.kr /비공개 ( 5 )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 2차 >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논산경찰서 신속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2차 자료 제출

### 1. 관련 근거

- 가. 정부투자분석센터-1625(2024.7.19.)호 '충남 논산경찰서 신속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자료 협조 요청(2차)'
  - 2. 귀 연구원에서 요청한 논산경찰서 신속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2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논산경찰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차자료 목록.  
2. 검토자료 1부(별도 송부). 끝.

##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시설서기보	이수영	시설계장	이훈기	총경	08/06 정경호
-------	-----	------	-----	----	--------------

참조자

시행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17962 (2024-08-06) 접수 경부투자분석센터-1767 (2024.8.6.)  
 우 12333 충청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 http://www.onpolice.go.kr  
 전화 041-336-3837 전송 041-336-3928 / eeablue256@police.go.kr / 비공개 ( 5 )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 3차 >



실적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3차 자료 제출

1. 관련 근거
  - 가. 정부투자분석센터-1758(2024.8.5.)호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자료 협조 요청(3차)'
  2. 귀 연구원에서 요청한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3차 자료를 불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논산경찰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3차자료 목록.
2. 검토자료 1부(별도 송부). 끝.

##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시설서기보	이수영	시설계장	이훈기	총경	08/09 정경호
-------	-----	------	-----	----	--------------

협조자

시행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18494 (2024-08-09) 접수 정부투자분석센터-1796 (2024.8.9.)  
 우 12333 충청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 <http://www.onpolice.go.kr>  
 전화 041-336-3937 전송 041-336-3928 / [seablue256@police.go.kr](mailto:seablue256@police.go.kr) / 비공개 ( 5 )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 4차 >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4차 자료 제출

### 1. 관련 근거

가. 정부투자분석센터-1925(2024.8.28.)호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자료 협조 요청(4차)'

2. 귀 연구원에서 요청한 논산경찰서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4차 자료를 불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논산경찰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4차자료 목록.

2. 검토자료 1부(별도 송부). 끝.

##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시설서기보	이수영	시설계장	이은기	총경	09/10 정경호
-------	-----	------	-----	----	--------------

협조자

시행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21108 (2024-09-10) 접수 정부투자분석센터-2032 (2024.9.11.)  
우 12333 충청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http://www.cnpolice.go.kr  
전화 041-336-3937 전송 041-336-3928 / seablue256@police.go.kr / 비공개 ( 5 )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 5차 >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논산경찰서 신속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5차 자료 제출

### 1. 관련 근거

- 가. 정부투자분석센터-2012(2024.9.9.)호 '충남 논산경찰서 신속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자료 협조 요청(5차)'
  - 2. 귀 연구원에서 요청한 논산경찰서 신속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5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논산경찰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5차자료 목록.  
2. 검토자료 1부(별도 송부). 끝.

##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시물서기부	이수영	시물계장	이훈기	총경	09/11 정경호
-------	-----	------	-----	----	--------------

협조자

시행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21264 (2024-09-11)    접수 정부투자분석센터-2045 (2024.9.12.)  
 우 12333    충남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http://www.onpolice.go.kr  
 전화 041-336-3937    전송 041-336-3928    / seablue256@police.go.kr    /비공개 ( 5 )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 6차 >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논산경찰서 신속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6차 자료 제출

1. 관련 근거

가. 정부투자분석센터-2451(2024.11.4.)호 '충남 논산경찰서 신속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자료 협조 요청(6차)'

2. 귀 연구원에서 요청한 논산경찰서 신속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6차 자료를 불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자료 1부(별도 송부). 끝.

충청남도경찰청



수신자

시설서기보

이수영

시설계장

이훈기

총경

전달 11/27

정영호

협조자

시행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28180 (2024-11-27) 접수 정부투자분석센터-2646 (2024.11.27.)

우 12333 충청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 <http://www.onpolice.go.kr>

전화 041-336-3937 전승 041-336-3928 / [seablue256@police.go.kr](mailto:seablue256@police.go.kr) / 비공개 ( 5 )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 7차 >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 충청남도경찰청

수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논산경찰서 신속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7차 자료 제출

### 1. 관련 근거

가. 정부투자분석센터-2641(2024.11.26.)호 '충남 논산경찰서 신속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자료 협조 요청(7차)'

2. 귀 연구원에서 요청한 논산경찰서 신속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7차 자료를 불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자료 1부(별도 송부). 끝.

충청남도경찰청장



시설서기	이영민	시설계장	이춘기	총경	전달 2025. 1. 16. 정경호
협조자					
시행	경주기획정보화장비과 (2025. 1. 16.)			접수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삼곡읍 청사로 201, 충청경찰청 경주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http://www.cnpolice.go.kr
전화번호	041-336-3934	팩스번호	041-336-3928	/ blackbunny@police.go.kr / 비공개(5)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